| 발 간 등 록 번 호 |
| --- |
| 79-6500000-000431-10 |

2019. 1

-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생태계 구축 -

# 2019년 중소기업 육성시책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목 차

Ⅰ. 제주 중소기업 일반현황 ····· 11

Ⅱ. 2019년 달라지는 주요사항 및 신규 추진 시책 ····· 25

Ⅲ.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 29

1 자금분야 ····· 31

1-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33

1-2.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지원 ····· 34

1-3.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출연 ····· 35

1-4.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36

1-5.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37

1-6.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38

1-7.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 39

2 창업분야 ····· 41

2-1.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 43

2-2.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44

2-3.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45

2-4.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 46

2-5.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 ····· 47
2-6.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 ····· 48
3 기술분야 ····· 49
3-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 과제) ····· 51
3-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역유망 중소기업지원과제) ····· 52
3-3.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 지원 ····· 53
3-4.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 54
3-5. 중소기업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 55
3-6.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 56
3-7.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 ····· 57
3-8.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 58
3-9. 지역연고(풀뿌리)산업 육성사업 ····· 60
3-10.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지원사업 ····· 61
3-11.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 62
3-12.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 63
3-13.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64
3-14.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65

3-15.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 66

4 인력분야 ····· 67

4-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69

4-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70

4-3.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71

4-4.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 73

4-5.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 74

4-6.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지원 ····· 75

4-7.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76

4-8.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 77

4-9. 채용 박람회 지원 ····· 78

4-10. 마을기업 육성 지원 ····· 79

4-11. 제주 더 큰 내일센터 ····· 80

4-12.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81

4-13.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지원 ····· 82

5 수출분야 ····· 83

5-1. 2019년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운영 ····· 85

5-2.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 86
5-3. 제주-중국 경제무역인 통상 네트워크 구축사업 ····· 87
5-4.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 추진 ····· 88
5-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89
5-6.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90
5-7.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 91
5-8.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 92
5-9.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93
5-10. 해외통상사무소(상해대표처, 동경사무소) 운영 ····· 94
5-11. 수출 보험료 지원 ····· 95
5-12.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 96
5-13. 해외 수출통관 컨설팅 지원 ····· 97
5-14. 제주 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 98
5-15.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99
5-16.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 100
5-17.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 ····· 101
5-18.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102
5-19.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 103

5-20.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 104
5-21. 해외지사화사업 및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 ····· 105
5-22.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 106
5-23.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 107
5-24.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EMS)비용 지원 ····· 108
5-25.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 109
5-26.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110
5-27.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EMS)비용 지원 ····· 111
5-28.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 112
5-29. 국제 자매교류도시 및 해외무역활동비 지원 ····· 113

6 판로분야 ····· 115

6-1.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 117
6-2.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 지원 ····· 118
6-3.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홈쇼핑, 박람회, 상담회 등) · 119
6-4.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 이제주몰 운영 및 홍보마케팅 ···· 120
6-5.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 ····· 121
6-6.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 122

6-7. 도내 · 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 123
6-8. 제주화장품 산업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사업 ····· 124
6-9.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사업 ···· 125
6-10. 중소기업 산업디자인(로고 및 브랜드 등) 무료개발 지원 ·· 126

7 동반성장분야 ····· 127

7-1.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지원 ····· 129
7-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 130
7-3.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 131
7-4. 제주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쇼핑몰 홍보사업 ····· 132
7-5. 제주여성 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 133
7-6.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 134

8 지식서비스분야 ····· 135

8-1. 벤처기업 육성사업 ····· 137
8-2. 지역SW기업 성장지원 ····· 138
8-3. 제주지역 ICT 신기술개발 지원 ····· 139
8-4. IT제품 Step-up 지원 ····· 140
8-5.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 141

8-6. 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도 운영 및 홍보마케팅 ····· 142

9 소상공인분야 ····· 143

9-1.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145

9-2.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 146

9-3.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지원 ····· 147

9-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148

9-5.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 149

9-6.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 150

9-7. 전통시장 SNS 홍보 · 마케팅 지원 ····· 151

9-8.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 ····· 152

9-9.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 153

9-10.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 154

9-11.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 155

9-12.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홍보 ····· 156

9-1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 157

9-14.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 158

9-15.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159

9-16.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 160
9-17.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 161
9-18.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 162
9-19.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163
9-20. 골목상권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 164

⑩ 기타분야 ····· 165

10-1.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 167
10-2. 도내 신·증설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 168
10-3. 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전략포럼) ····· 170
10-4.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 지원 ····· 171
10-5.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172
10-6.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지원사업 ···· 173
10-7.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174
10-8. 금능농공단지 확장사업 ····· 175
10-9.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 176
10-10.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 177
10-11.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178

10-12.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 179
10-13.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180
10-14.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 183
10-15.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 184
10-16.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 185
10-17.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186
Ⅳ.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187
Ⅴ. 2019 유관기관별 지원사업 ····· 203

# Ⅰ. 제주지역 중소기업 일반현황

# 1. 제주지역 중소기업체 현황

(2017. 12월말 기준)

## □ 사업체 현황

### ❍ 유형별

(단위:개,명)

| 구 분 | 계 | 제조업 | 건설업 | 도소매업 | 숙박및 음식업 | 운수· 창고업 | 기 타 |
|---|---|---|---|---|---|---|---|
| 업 체 수 | 60,063 | 2,418 (4.0%) | 2,534 (4.2%) | 14,383 (23.9%) | 17,006 (28.3%) | 5,810 (9.7%) | 17,912 (29.8%) |
| 종사자수 | 262,747 | 11,672 | 21,872 | 42,840 | 53,491 | 14,799 | 118,073 |

* 자료 :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통계청)

### ❍ 행정시별

(단위:개,명,%)

| 조직형태별 | 사업체수 | | | 종사자수 | | |
|---|---|---|---|---|---|---|
| | 2017년 (A) | 2016년 (B) | 증감률 (C=B/A) | 2017년 (A) | 2016년 (B) | 증감률 (C=B/A) |
| 합 계 | 60,063 (100.0) | 57,791 (100.0) | 3.8 (0.0) | 262,747 (100.0) | 258,188 (100.0) | 1.7 (0.0) |
| 제 주 시 | 44,601 (74.3) | 43,021 (74.4) | 3.5 (△0.1) | 198,440 (73.5) | 196,235 (76.0) | 1.1 (△2.5) |
| 서귀포시 | 15,462 (25.7) | 14,770 (25.6) | 4.5 (0.1) | 64,307 (24.5) | 61,953 (24.0) | 3.7 (0.5) |

* 자료 :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통계청)

## □ 산업별 분류현황

(단위:%)

| 사업체수 | | | | | | 종사자수 | | | | | |
|---|---|---|---|---|---|---|---|---|---|---|---|
| 계 | 농림 어업 | 광업 제조업 | 도소매 | 음식 숙박 | 기타 산업 | 계 | 농림 어업 | 광업 제조업 | 도소매 | 음식 숙박 | 기타 산업 |
| 100 | 0.6 | 4.0 | 23.9 | 28.3 | 43.2 | 100 | 1.0 | 4.5 | 16.3 | 20.4 | 57.8 |

* 자료 :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통계청)

## 2. 중소기업 육성 추진 방향

| 목 표 | 소상공인·중소기업 성장생태계 구축 |
|---|---|

2021 중소기업 미래비전을 조기에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1년 대비 2021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 지역총생산중 제조업 비중 3%대 → 6~7% (2배)
❍ 연매출액 30억원이상 기업 8.7% → 26% (3배)
❍ 제조업 부문 수출액 99백만달러 → 396백만달러 (4배)
※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2011.12)

**추 진 과 제**

- 혁신·성장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제주 생산제품의 안정적 판로 및 수출 확대
- 창업기반 구축 및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자금, 창업, 기술, 수출 등 10개 분야 129개 지원사업 추진**

# 3. 2019 중소기업 육성 시책 총괄

(단위:백만원)

| 번호 | 사 업 별 | 예산액 | 융자·보증 규 모 | 주관부서 |
|---|---|---|---|---|
| 총계 | 10개 분야 129개 사업 | 169,842.5 | | |
| 1 | **자금분야** | 88,829 | | |
| 1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 28,000 | 700,000 | 소상공인기업과 |
| 2 |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지원 | 1,500 | 22,500 | 소상공인기업과 |
| 3 |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출연 | 2,500 | 375,000 | 소상공인기업과 |
| 4 |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44,000 | | 친환경농업정책과 |
| 5 |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600 | 600 | 보건건강위생과 |
| 6 |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12,209 | | 관 광 정 책 과 |
| 7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 20 | | 소상공인기업과 |
| 2 | **창업분야** | 1,090 | | |
| 1 |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 250 | | 소상공인기업과 |
| 2 |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 | 40 | | 소상공인기업과 |
| 3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400 | | 소상공인기업과 |
| 4 |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 50 | | 소상공인기업과 |
| 5 |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 | 150 | | 소상공인기업과 |
| 6 |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신규) | 200 | | 소상공인기업과 |

| 번호 | 사 업 별 | 예산액 | 융자·보증 규 모 | 주관부서 |
|---|---|---|---|---|
| 3 | **기술분야** | 31,458 | | |
| 1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 과제) | 714 | | 소상공인기업과 |
| 2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역유망 중소기업지원과제) | 624 | | 소상공인기업과 |
| 3 |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신규) | 100 | | 소상공인기업과 |
| 4 |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 600 | | 소상공인기업과 |
| 5 | 중소기업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 67 | | 소상공인기업과 |
| 6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 15 | | 소상공인기업과 |
| 7 |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 | 70 | | 소상공인기업과 |
| 8 |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 25,645 | | 미 래 전 략 과 |
| 9 | 지역연고(풀뿌리)산업 육성사업 | 786 | | 미 래 전 략 과 |
| 10 |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지원 | 315 | | 미 래 전 략 과 |
| 11 |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 180 | | 미 래 전 략 과 |
| 12 |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 | 460 | | 미 래 전 략 과 |
| 13 |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90 | | 미 래 전 략 과 |
| 14 |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 1,492 | | 미 래 전 략 과 |
| 15 |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 300 | | 탄 소 없 는 제 주 정 책 과 |
| 4 | **인력분야** | 12,137 | | |
| 1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3,080 | | 경 제 정 책 과 |
| 2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760 | | 경 제 정 책 과 |
| 3 |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300 | | 일 자 리 과 |

| 번호 | 사 업 별 | 예산액 | 융자·보증 규 모 | 주관부서 |
|---|---|---|---|---|
| 4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 770 | | 일 자 리 과 |
| 5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 800 | | 일 자 리 과 |
| 6 |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지원 | 100 | | 일 자 리 과 |
| 7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583 | | 일 자 리 과 |
| 8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 1,500 | | 일 자 리 과 |
| 9 | 채 용 박 람 회 지 원 | 126 | | 일 자 리 과 |
| 10 | 마을기업 육성지원 | 448 | | 경 제 정 책 과 |
| 11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 2,700 | | 일 자 리 과 |
| 12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신규) | 700 | | 일 자 리 과 |
| 13 |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지원 | 270 | | 소상공인기업과 |
| 5 | **수출분야** | 5,777 | | |
| 1 |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운영 | 2,273 | | 통 상 물 류 과 |
| 2 |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 사업(신규) | 500 | | 통 상 물 류 과 |
| 3 | 제주-중국 경제무역인 통상 네트워크 구축사업(신규) | 70 | | 통 상 물 류 과 |
| 4 |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 추진 | 100 | | 통 상 물 류 과 |
| 5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 130 | | 통 상 물 류 과 |
| 6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649 | | 통 상 물 류 과 |
| 7 |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 90 | | 통 상 물 류 과 |
| 8 |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 행사 | 50 | | 통 상 물 류 과 |
| 9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신규) | 90 | | 통 상 물 류 과 |

| 번호 | 사 업 별 | 예산액 | 융자·보증 규 모 | 주관부서 |
|---|---|---|---|---|
| 10 | 해외통상사무소(중국·일본) 운영 | 980 | | 통 상 물 류 과 |
| 11 | 수출 보험료 지원 | 162 | | 통 상 물 류 과 |
| 12 |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 90 | | 통 상 물 류 과 |
| 13 | 해외 수출통관 컨설팅 지원 | 50 | | 통 상 물 류 과 |
| 14 | 제주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 54 | | 통 상 물 류 과 |
| 15 |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40 | | 통 상 물 류 과 |
| 16 |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 50 | | 통 상 물 류 과 |
| 17 |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 | 20 | | 통 상 물 류 과 |
| 18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45 | | 통 상 물 류 과 |
| 19 |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 25 | | 통 상 물 류 과 |
| 20 | 제주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 161 | | 통 상 물 류 과 |
| 21 | 해외지사화사업 및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 | 50 | | 통 상 물 류 과 |
| 22 |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 15 | | 통 상 물 류 과 |
| 23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 4 | | 제 주 시 (경제일자리과) |
| 24 |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EMS)비용 지원 | 25 | | 제 주 시 (경제일자리과) |
| 25 |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 18 | | 제 주 시 (경제일자리과) |
| 26 |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18 | | 제 주 시 (경제일자리과) |
| 27 |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EMS)비용 지원 | 7 | | 서 귀 포 시 (경제일자리과) |
| 28 |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 5 | | 서 귀 포 시 (경제일자리과) |
| 29 | 국제 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 | 6 | | 서 귀 포 시 (경제일자리과) |

| 번호 | 사 업 별 | 예산액 | 융자·보증 규 모 | 주관부서 |
|---|---|---|---|---|
| 6 | **판로분야** | 2,234 | | |
| 1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 135 | | 소상공인기업과 |
| 2 |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 지원 | 135 | | 소상공인기업과 |
| 3 |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홈쇼핑, 박람회 등) | 358 | | 소상공인기업과 |
| 4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운영 | 530 | | 소상공인기업과 |
| 5 |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 | 90 | | 소상공인기업과 |
| 6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 20 | | 소상공인기업과 |
| 7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 300 | | 통 상 물 류 과 |
| 8 | 제주화장품 산업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사업 | 350 | | 미 래 전 략 과 |
| 9 | 바이오(로하스,항노화,화장품 등)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 | 316 | | 미 래 전 략 과 |
| 10 |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지원 | 비예산 | | 제 주 시 (경제일자리과) |
| 7 | **동반성장분야** | 229.5 | | |
| 1 |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지원 | 89 | | 소상공인기업과 |
| 2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 45 | | 소상공인기업과 |
| 3 |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 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 22.5 | | 소상공인기업과 |
| 4 | 제주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쇼핑몰 홍보 | 10 | | 소상공인기업과 |
| 5 | 제주여성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 36 | | 소상공인기업과 |
| 6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 27 | | 경 제 정 책 과 |
| 8 | **지식서비스 분야** | 2,908 | | |
| 1 | 벤처기업 육성사업 | 270 | | 소상공인기업과 |
| 2 | 지역 SW기업 성장 지원 | 358 | | 디지털융합과 |

| 번호 | 사 업 별 | 예산액 | 융자·보증 규 모 | 주관부서 |
|---|---|---|---|---|
| 3 | 제주지역 ICT 신기술개발 지원 | 90 | | 디지털융합과 |
| 4 | 제주 IT제품 Step-Up 지원 | 90 | | 디지털융합과 |
| 5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 사업 | 1,000 | | 미 래 전 략 과 |
| 6 | 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도 운영 및 홍보마케팅 | 1,100 | | 경 제 정 책 과 |
| 9 | **소상공인 분야** | 11,500 | | |
| 1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200 | | 소상공인기업과 |
| 2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 180 | | 소상공인기업과 |
| 3 |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지원 | 135 | | 소상공인기업과 |
| 4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9,067 | | 소상공인기업과 |
| 5 |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 공모 | | 소상공인기업과 |
| 6 |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 공모 | | 소상공인기업과 |
| 7 | 전통시장 SNS 홍보 마케팅 지원 | 40 | | 소상공인기업과 |
| 8 |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운영 | 50 | | 소상공인기업과 |
| 9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 340 | | 소상공인기업과 |
| 10 |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 16 | | 소상공인기업과 |
| 11 |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 60 | | 소상공인기업과 |
| 12 |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홍보 | 20 | | 소상공인기업과 |
| 13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 76 | | 소상공인기업과 |
| 14 |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 304 | | 소상공인기업과 |
| 15 |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90 | | 소상공인기업과 |
| 16 |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 350 | | 소상공인기업과 |

| 번호 | 사 업 별 | 예산액 | 융자·보증 규 모 | 주관부서 |
|---|---|---|---|---|
| 17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 45 | | 소상공인기업과 |
| 18 |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 180 | | 소상공인기업과 |
| 19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320 | | 소상공인기업과 |
| 20 | 골목상권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 27 | | 소상공인기업과 |
| ⑩ | **기타 분야** | 13,680 | | |
| 1 |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 1,400 | | 투 자 유 치 과 |
| 2 | 도내 신·증설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 2,741 | | 투 자 유 치 과 |
| 3 | 제주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전략포럼)지원 | 10 | | 소상공인기업과 |
| 4 |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지원 | 1,635 | | 소상공인기업과 |
| 5 |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140 | | 소상공인기업과 |
| 6 |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지원사업 | 15 | | 소상공인기업과 |
| 7 |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농공단지) | 424 | | 소상공인기업과 |
| 8 | 금능농공단지 확장사업 | 6,073 | | 소상공인기업과 |
| 9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 300 | | 소상공인기업과 |
| 10 |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 80 | | 소상공인기업과 |
| 11 | 성장유망 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36 | | 소상공인기업과 |
| 12 |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 24 | | 소상공인기업과 |
| 13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비예산 | | 소상공인기업과 |
| 14 |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 420 | | 식 품 원 예 과 |
| 15 |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 100 | | 식 품 원 예 과 |
| 16 |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 100 | | 식 품 원 예 과 |
| 17 |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182 | | 경 제 정 책 과 |

# Ⅱ. 2019년 달라지는 주요사항 및 신규 추진 시책

# 1 기존시책 중 달라지는 주요사항

**❶ 마을기업 육성 지원 확대**

☞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에 사업비 370백만원 지원

- 지 원 금 : (종전) 320백만원 → (확대) 370백만원

**❷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상향 지원**

☞ 소상공인 노령·폐업 대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확대 지원

- 지 원 금 : (월) 1만원 → 2만원

**❸ 소상공인 상시컨설팅 운영 확대**(월1회 → 2회)

☞ 법률, 세무, 노무, 재무 등 사업운영 애로사업 종합컨설팅

**❹ 제조업종 소상공인 환경개선비 상향 지원**

☞ 제조업종 노후 사업장의 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비 지원 확대

- 지 원 금 : (종전) 8,000천원 → (확대) 8,200천원

**❺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확대**

☞ 점포면적 165㎡이하 노후화된 영세점포에 대한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업종&지원금액 확대

- 지원대상 : (종전) 7업종 → (확대) 8업종 * 꽃집 추가

  * 지원업종 : 슈퍼, 세탁소, 음식점, 이 · 미용실, 떡집, 문구점, 목욕탕, 꽃집

- 지 원 금 : (종전) 시설개선비용 6백만원 → (확대) 7백만원

**❻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확대**(제주시→서귀포시)

**❼ 골목슈퍼 자체브랜드 상품개발 및 공동배송 지원**(상품개발 40종→47종)

**❽ 2019년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확대**

☞ 미취업 청년 신규채용 시, 최대 2년간 1인당 인건비 연2,400만원의 90% 지원

- 지원인원 : ('18년) 20명 → ('19년) 75명 (신규 55명, 1월부터 채용 추진)

**❾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 혁신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제주향토 강소기업 및 거래 관계기업 동반 육성

- 사업내용 변경
  - '19년 신규 향토강소기업 선정 중단, 향토강소기업 2~3년차 지원
  - 향토강소기업+협업기업 협업프로젝트 시범 운영 : 2팀, 2.3억원 내외 지원

## ② 2019년 신규 추진 시책

(단위 : 백만원)

| NO | 사 업 명 | 예산액 | 주 요 내 용 |
|---|---|---|---|
| 7개 사업 | | 4,360 | |
| 1 |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 200 | 창업 후 7년이내 기업 대상<br>시장육성형, 시장진출형, 기술혁신형 등 맞춤형 사업 지원 |
| 2 |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 | 100 | 제조현장의 운영시스템 구축, 자동화 등 공정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장 기반 구축설비 지원, 20백만원 한도 |
| 3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 700 | 도내 1인이상 중소기업, 중장년(35~55세) 대상,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 대한 지원<br>* 가입기간 5년, 월34만원(근로자 10, 기업12, 도 12) |
| 4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 2,700 | 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대상<br>* 최대 2년간 선고용 후 숙련 프로그램 운영 월150만원 참여수당 지원 |
| 5 | 제주스타상품 통합지원 | 500 |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망 상품 선정, 해외광고, 왕홍 활용 온라인마케팅 등 집중 홍보 실시 |
| 6 | 제주-중국 경제무역인 통상 네트워크 구축 | 70 | 한·중 경제무역인 라운드테이블 운영 2회(상반기 제주, 하반기 중국 각 1회) |
| 7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90 |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국내 주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

# Ⅲ.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계획

# 1.
# 자금분야

# 1 자 금 분 야

## 1-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 사업내용

◦ 신청기간/지원형태 : 연중수시/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보전

◦ 지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 제조업, 제주이전기업, 지식서비스업 등 9개업종
- 경영안정 지원자금 : 제조업, 벤처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도·소매업 등 41개업종

※ 세부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4]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 이자차액보전율 : 부동산, 보증서 담보 - 대출금리의 50%(일반기업), 70%(우대기업)
신용 담보 - 2.3%(일반기업), 3.0%(우대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회차별 | 수요자 금리 (%) | | 이자차액보전율(%) | |
|---|---|---|---|---|---|---|
| | |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 보증서 | 3.80이하 | 1회차 | 1.70이하 | 0.80이하 | 2.10 | 3.00 |
| 부동산 | 4.10이하 | 1회차 | 2.00이하 | 1.10이하 | |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1회차 | 2.10차감 | 3.00차감 | | |

* 이자차액보전율은 1회차 기준에서 회차별 0.2%씩 차감(총 3회차 지원)

- 대출기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 3~10년 이하(대출금액별 차등, 거치기간 포함)
· 경영안정 지원자금 : 2년(총 3회차, 6년)

- 지원한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 : 90억원(시설자금+운전자금, 업종별 차등지원) 이하
· 경영안정지원자금 : 2천만원~5억원(업종별 차등, 매출액 기준)

◦ 사업추진 절차

| 도, 경제통상진흥원 | ⇨ | 협약금융기관 (16개/314개지점)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융자추천 | | 대출 실행 | | 대출 금리 이자차액 보전 |

※ 융자신청 : 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노형동KT&G4층, KT신서귀빌딩1층),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경제통상진흥원(본원 로비층,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 로비)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 30,000 | 30,000 | 28,000 | △2,000 | △6.7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이정화 주무관 (☏ 064-710-2634)

## 1-2. 창업 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지원

### ▣ 사업목적

◦ 담보력 부족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에 따른 특별보증 재원 출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자금한도 소진시까지(2016년 ~ 계속)
◦ 지원형태 : 출연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3년 이내 창업업체(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추천업체)
◦ 지원내용 :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실행에 따른 보증서 발급
  - 보증한도 : 업체별 2 ~ 5천만원 이내(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추천금액 범위 내)
    ⇒ 대상기업 · 창업교육 이수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
◦ 보증수수료율 : 연 0.7%(고정)
◦ 재원구분 : 자체예산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 | 제주신용보증재단 | ⇨ | 금융기관 |
|---|---|---|---|---|
|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신청 및 발급 | | 보증심사(소액심사) 및 보증서 발급 | | 대출 실행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지원 | 1,000 | - | 1,500 | 1,500 | 10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이정화 주무관 (☏ 064-710-2634)

## 1-3.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출연

### ▣ 사업목적

◦ 저신용, 저소득 골목상권 자영업자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특별보증을 제공하여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경영안정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자금한도(375억원) 소진시까지(2012 ~ 계속/8년)
◦ 지원형태 : 출연
◦ 사업시행 주체 : 제주신용보증재단
◦ 지원대상 : 골목상권 소상공인(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떡류제조업)
◦ 지원내용 :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3천만원 이내(생계자금, 운영자금)
◦ 보증기간 : 10년 이내 원금 일시상환(최초 2년, 1년씩 연장)
◦ 보증금리 : 1.7 ~ 3.5% 이내로 제1금융권 대출 가능
◦ 보증수수료 : 연 0.8% 고정
◦ 사업 추진절차

| 지자체 | 특별출연 → | 재 단 | 보증서 발급 → | 금융기관 | 저금리 대출 → | 골목상권 |
|---|---|---|---|---|---|---|
| 특별출연<br>(25억원) | | 신용보증<br>(375억원) | | · 중기자금 : 1.7%<br>· 일반자금 : 3.5% | | 생계자금<br>운영자금 |

※ 출연금의 15배수 보증운용(375억원)*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br>(A) | '19예산<br>(B) | 증 감<br>(B-A) | % |
|---|---|---|---|---|---|
|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지원 | 1,500 | 2,000 | 2,500 | 500 | 25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송상훈 주무관 (☏ 064-710-3076)

## 1-4.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 사업목적

◦ 우리 도의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 공급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농어업인 등에 당해 기금을 융자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지원형태 : 융자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수출업체 등
◦ 지원내용 : 농어가당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 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융자지원,
수출업체인 경우 신규 20억원, 기존업체 10억원이하
·융자금리 : 0.9%, 이차보전 지원 : 2.9% ~ 4.1% (2018년 12월 현재 기준)
·융자조건 - 운전자금 2년 상환(1회에 한하여 2년 연장가능)
- 시설자금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사업 추진절차

| 도 | ⇨ | 행정시 및 읍면동 | ⇨ | 도 | ⇨ | 행정시 | ⇨ | 농어업인 | ⇨ | 금융기관 |
|---|---|---|---|---|---|---|---|---|---|---|
| ·융자지원 계획수립 | | ·융자신청 접수 | | ·심의위원회 개최<br>·융자대상자 확정 | | ·융자추천서 발급 | | ·대출신청 | | ·서류심사 및 대출 실행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35,000 | 42,000 | 44,000 | 2,000 | 4.8 |

* 사업담당자 : 친환경농업정책과 고영선 주무관 (☏ 064-710-3025)

## 1-5.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 사업목적

◦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생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지정업소 육성을 위한 저리 융자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6년~계속
◦ 지원형태 : 융자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확충
- 단란주점·유흥주점 :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운전자금)

◦ 지원내용
- 기간 및 이율 : 4년(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연 2%
- 융자한도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3천만원 이내
  · 식품제조업·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7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운전자금) : 2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보수자금 : 1천만원 이내

◦ 사업 추진절차

| 도청 | ⇨ | 영업주 | ⇨ | 금융기관:영업점 (농협,제주은행) | ⇨ | 영업주 | ⇨ | 행정시 | ⇨ | 영업주 |
|---|---|---|---|---|---|---|---|---|---|---|
| ·융자지원 계획수립 | | ·사전융자상담 (영업점:제주은행, 농협) | | ·영업주에게 융자여부 결정통지 | | ·융자추천 신청 (행정시) | | ·융자추천서 발급(영업주)<br>·융자추천서 발급사실 통지 (금융기관) | | ·대출신청 (금융기관: 영업점) |

| 금융기관:영업점 (농협,제주은행) | ⇨ | 금융기관 (기업고객부) | ⇨ | 도청 | ⇨ | 금융기관 (기업고객부) | ⇨ | 금융기관:영업점 (농협,제주은행) |
|---|---|---|---|---|---|---|---|---|
| ·금융기관 (기업고객부) 자금신청 | | ·자금차입 신청(도청) | | ·금융기관 (기업고객부) 자금이체 | | ·금융기관(영업점) 자금배정 | | ·대출실행 (영업주)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식품진흥기금 융자 | 600 | 600 | 600 | 0 | 0 |

* 사업담당자 : 보건건강위생과 한은미 주무관 (☏ 064-710-2943)

## 1-6.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 ▣ 사업목적

◦ 관광시설사업 등의 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경영안정 도모, 관광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도 상·하반기
◦ 지원형태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융자)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의거한 업체
◦ 지원내용
- 융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 '18. 4/4분기 기준(1.52%)
  * 매분기별 기재부 공지 '공자금리'에서 0.75%우대
- 융자기간 : (경영안정·기념품개발 등)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건설·개보수)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전세버스교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융자한도
  ‣ 경영안정자금 : 개인 1억원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 기준)
  법인 10억원이내(매출액 또는 자본금의 50%이내)
  ‣ 건설(신축)자금 : 20억원이내
  ‣ 개보수자금 : 50억원이내(일반숙박업의 경우 30억원이내)
  ※ 융자금리, 기간, 한도는 '18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19년도에는 변경될 수 있음
◦ 재원구분 : 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사 업 자 | ⇨ | 협약금융기관(15개)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융자추천 | | 대출신청→금융기관 | | 대출심사 및 실행 | | 이자차액보전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 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관광진흥기금 | 19,452 | 15,318 | 12,209 | △3,109 | △20.3 |

* 사업담당자 : 관광정책과 권미숙 주무관 (☏ 064-710-3344)

## 1-7.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차보전 지원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제기금 이차보전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거래상대방 사업자 도산 발생으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또는 지연 시 자금지원을 통한 연쇄 도산방지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2007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협약
◦ 사업시행 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를 둔 공제기금 2호 및 3호 대출업체
◦ 지원내용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2호 대출(어음·수표대출) 및 제3호 대출(단기 운영자금대출)에 따른 연 1.6% 이내의 이자차액 보전
◦ 재원구분 : 자체예산
◦ 사업 추진절차
  - 공제기금 대출실행(중소기업중앙회 → 지자체 사업자) ⇒ 분기별 이차보전 청구(중소기업중앙회 → 도) ⇒ 이차보전 지원(도 → 중소기업중앙회)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공제사업 기금 이차보전 지원 | 10 | 13 | 20 | 7 | 53.8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이정화 주무관 (☏ 064-710-2634)

# 2.
# 창업분야

# 2 창 업 분 야

## 2-1. 중소기업 창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선정하여 창업 교육, 멘토링, 창업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창업 활성화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창업교육, 박람회 참관 및 벤치마킹, 창업컨설팅, 창업비용 지원
◦ 사 업 비 : 250백만원(국비 90, 도비 160)
◦ 사업 추진절차

| 도 | | 대행기관 | | 도 |
|---|---|---|---|---|
| ·기본계획 수립<br>·사업비 교부(1월 중) | ⇨ | ·모집공고(2월 중)<br>·사업대상자 선정<br>·사업시행 | ⇨ | ·사업 성과분석<br>·사업비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사업 | 190 | 250 | 25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현정 주무관 (☏ 064-710-4182)

## 2-2. 제주형 프랜차이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 사업목적

◦ 청정 제주 농수축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도내 중소기업 창업 경쟁력 강화
◦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가맹본부 사후 관리 강화 및 참여도 제고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3월 ~ 2019.12월
◦ 지원형태 : 보조사업(보조금 70%, 민간자부담 30%) *공모사업
  * 지원업체는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VAT는 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음식점 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도내 가맹본부(직영점 1개 이상 운영) 2개소 내외
  * 기존 제주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우수 가맹본부 지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10백만원~20백만원 이내
◦ 선정기준 : 제주형 프랜차이즈 사업화 가능성, 제주산 재료 활용도, CEO 역량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 지 원 내 용 |
|---|---|
| 프랜차이즈화 컨설팅 지원 | ▪사업모델분석 및 체계화<br>▪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br>▪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자문 |
|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 | ▪CI·BI, 인테리어, 포장, 캐릭터 등 디자인 개발<br>▪QR코드, 모바일 웹 개발 |
| 프랜차이즈 시설 및 설비 지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시설 및 설비 보강 (단순 설비 교체 제외) |
| 홍보마케팅 | ▪(우수 가맹본부)제주형 프랜차이즈 사업 홍보마케팅 |

◦ 사업 추진절차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평가)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안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
| 제주자치도 | | (중소기업) | | 제주자치도 | | (중소기업) | | 제주자치도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형 프랜차이즈 선정 및 지원 | 100 | 60 | 40 | △20 | △33%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현숙 주무관 (☏ 064-710-2527)

## 2-3. 창업보육센터(BI)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 사업목적

◦ 도내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경영, 기술개발 등)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지원형태 : 국비에 대응하는 도비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도내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
◦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업체
◦ 지원내용
  - 업무·공간 제공, 경영·기술 자문, 세무·회계 지도, 컨설팅 등 지원
  - 예비기술 창업자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40, 도비 160)
◦ 사업 추진절차

| 도 | | 창업보육센터 | | 창업보육센터/도 |
|---|---|---|---|---|
| ·운영지원 계획 수립<br>·보조금 교부(1월 중) | ⇨ | ·입주기업 지원 | ⇨ | ·사업 성과분석<br>·사업비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 | 400 | 400 | 40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현정 주무관 (☏ 064-710-4182)

## 2-4.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 ▣ 사업목적

◦ 향토자원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향토자원을 활용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컨설팅, 사업타당검토, 창업절차대행, 창업공장설립대행 등
◦ 사 업 비 : 50백만원(국비 28백만원, 도비 22백만원)
◦ 사업 추진절차

| 도 | | 대행기관 | | 대행기관/도 |
|---|---|---|---|---|
| ·기본계획 수립<br>·사업비 교부(1월 중) | ⇨ | ·모집공고(2월 중)<br>·사업대상자 선정<br>·사업시행 | ⇨ | ·사업 성과분석<br>·사업비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향토자원 활용형 창업지원 | 50 | 50 | 5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호진 주무관 (☏ 064-710-4183)

## 2-5.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

### ▣ 사업목적

◦ 예비 창업자 및 창작희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제공하고 디지털 장비교육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일반인
◦ 지원내용
  - 레이저커터, 3D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 활용 교육, 시제품 제작과정 운영 등
◦ 사 업 비 : 15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도 | | 대행기관 | | 대행기관/도 |
|---|---|---|---|---|
| ·기본계획 수립<br>·사업비 교부(1월 중) | ⇨ | ·모집공고(수시 모집)<br>·사업대상자 선정<br>·사업시행 | ⇨ | ·사업 성과분석<br>·사업비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아이디어 창업 활성화 지원 | 150 | 150 | 15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호진 주무관 (☏ 064-710-4183)

## 2-6.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우수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의 성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력 및 경쟁력을 확보한,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기업으로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신규사업)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창업 후 7년이내 기업
◦ 지원내용 :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성장육성형 : 제품 개발 컨설팅, 제품 고도화(제품 디자인 개선) 지원 등
  - 시장진출형 : 마케팅, 수출역량 강화(고객관리, 시장조사 분석), 수출 지원 (바이어 매칭, 제품홍보/전시회 참가) 등
  - 기술혁신형 : 신제품 개발지원(R&BD), 기술거래 라이센싱 아웃 등
◦ 사 업 비 : 20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도 | | 대행기관 | | 대행기관/도 |
|---|---|---|---|---|
| ·기본계획 수립<br>·사업비 교부(1월 중) | ⇨ | ·모집공고(2월 중)<br>·사업대상자 선정<br>·사업시행 | ⇨ | ·사업 성과분석<br>·사업비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 - | - | 200 | 200 | 10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현정 주무관 (☏ 064-710-4182)

# 3.
# 기술분야

# 3 기 술 분 야

## 3-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첫걸음 과제)

### ▣ 사업목적

◦ 첫걸음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경쟁력 제고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3년 ~ 2019(* 2018년 선정과제 지원)

◦ 지원형태 : 국비(국가 직접지원) + 도비(매칭)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중소기업&대학 또는 연구기관(공모)

◦ 지원대상

- 첫걸음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며,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 처음으로 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기업으로서 대학·연구기관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공동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1억원 한도내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중소벤처기업부 | ⇨ | 중소기업 | ⇨ | 도·주관기관 | ⇨ |
|---|---|---|---|---|---|
| · 사업시행 공고 | | · 사업참여 신청 | | · 현장평가 및 과제추천 | |
| 전문기관 | ⇨ | 도·주관기관 | ⇨ | 전문기관·도 | ⇨ |
| · 대면 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 · 협약(전자) 체결 (도·주관기관·업체·전문기관) | |
| 도(관리기관) | ⇨ | 주관기관(기업) | ⇨ | 전문기관 | |
| · 진도점검 | | · 최종 결과 보고 | | · 완료과제 평가 |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첫걸음·기업부설연구소 설치) | 1,689 | 1,712 | 714 | △998 | △58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요숙 주무관 (☏ 064-710-2637)

## 3-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역유망 중소기업지원과제)

### ▣ 사업목적

◦ 지역의 경쟁력 있는 유망중소기업 R&D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7년 ~ 2020(* 2018년 선정과제 지원)
◦ 지원형태 : 국비(국가 직접지원) + 도비(매칭)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중소기업&대학 또는 연구기관(공모)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역유망중소기업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재무제표상의 성장성, 지속가능능력 등의 지표가 양호하고 일자리 창출능력 또는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 공공기술개발 비용의 75%까지 2년간, 4.5억원 한도내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중소벤처기업부&도 | ⇨ | 중소기업 | ⇨ | 도·주관기관 | ⇨ |
|---|---|---|---|---|---|
| · 사업시행 공고 | | · 사업참여 신청 | | · 현장평가 및 과제추천 | |
| **도** | ⇨ | **도** | ⇨ | **전문기관·도** | ⇨ |
| · 대면 평가 | | · 지원과제 선정 | | · 협약(전자) 체결 (도·주관기관·업체·전문기관) | |
| **도(관리기관)** | ⇨ | **주관기관(기업)** | ⇨ | **전문기관** | |
| · 진도점검 | | · 최종 결과 보고 | | · 완료과제 평가 |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 600 | 1,083 | 624 | △459 | △42%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요숙 주무관 (☏ 064-710-2637)

## 3-3.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

### ▣ 사업목적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제조현장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지속성장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2019년 신규)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제주도내 소재한 제조업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설비를 필요로 하는 기업, 기업당 도비 2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지원재원 : 국비 30%, 도 20%, 자부담 20%, 기타 30%
◦ 지원내용 : 제조 현장의 혁신, 운영시스템 구축, 자동화 등 공정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 | 사업신청·대상자선정 | → | 중소기업·협약업체 |
|---|---|---|---|---|
| 도·대행기관 | | 대행기관·중소기업 | | 지원사업 추진 |
| | | | | ↓ |
| 사업비 정산 | ← | 최종 사업 결과보고 | ← | 중간 진도점검 |
| 대행기관·협약업체 | | 도·대행기관·기업·협약업체 | | 도·대행기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지원 | | | 100 | 100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요숙 주무관 (☏ 064-710-2637)

## 3-4.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 ▣ 사업목적

◦ 제주지역 중견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R&BD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생산기술지원 체제 구축

◦ 애로기술을 겪고 있거나 창의적 신기술 및 제품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맞춤형 기술실용화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2020년 2월(2014년~계속/6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

◦ 지원내용 : 애로기술 해소(핵심기반, 공정설계, 시제품/시작품 제작지원)

◦ 재원구분 : 도 50%, 기타 50%(생기원)

◦ 사업 추진절차

| 도 | | 대행기관 | | 도 |
|---|---|---|---|---|
| ·기본계획 수립<br>·대행기관 사업수행 협약<br>·사업비 교부 | ⇨ | ·사업세부 계획 수립<br>·사업 공고<br>·기술애로 수요조사<br>·현장맞춤형 애로기술 해소 지원 | ⇨ | ·사업비 정산<br>·사업추진결과 분석 및 피드백 실시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 | 600 | 600 | 600 | 0 | 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가태순 주무관 (☏ 064-710-2638)

## 3-5. 중소기업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 ▣ 사업목적

◦ 기술개발 과제발굴 및 기획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제품개발을 위해 전문가 및 기업이 공동연구회를 구축

◦ 기술정보 수집, 학습활동을 통해 기술개발 과제 도출 및 정부 R&D과제 참여 확대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2014년~계속/6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유망기술 기획 컨설팅

◦ 재원구분 : 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도 | ⇨ | 도/대행기관 | ⇨ | 도 |
|---|---|---|---|---|
| ·기본계획 수립 | | ·대행기관 사업수행 협약 | | ·사업비 교부 및 정산<br>·사업추진결과 분석 및 피드백 실시 |

- 대행기관

| 대행기관/기업 | ⇨ | 대행기관 | ⇨ | 대행기관/기업 | ⇨ | 대행기관 |
|---|---|---|---|---|---|---|
| ·연구회그룹 구성·운영 | | ·R&D발굴과제 모집 및 선정·최종평가 | | ·기술개발제안요청서 제출 | |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서 제출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 R&D과제 상시발굴 지원 | 67 | 67 | 67 | 0 | 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가태순 주무관 (☏ 064-710-2638)

## 3-6.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품질분임조 혁신 활동을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우수 분임조 품질경영 활동을 홍보·장려하기 위하여 경진대회 개최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5월 ~ 12월 (2012년~계속/8년)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사업시행 주체 : 한국표준협회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 지원대상 : 도내 품질 분임조
◦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분임조 벤치마킹
◦ 재원구분 : 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도 | ⇨ | 한국표준협회<br>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 ⇨ | 도 |
|---|---|---|---|---|
| ·기본계획 수립<br>·품질경영 유공자 표창 | | ·품질분임조경진대회 개최<br>·우수 분임조 벤치마킹 | | ·사업비 정산<br>·사업추진결과 분석 및 피드백 실시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 15 | 15 | 15 | 0 | 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가태순 주무관 (☏ 064-710-2638)

## 3-7.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

### ▣ 사업목적

◦ 제주지역 내 특화자원 소재를 활용하여 기술과 아이디어, 디자인, IT, 전통문화 등을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전략제품 개발 및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성장 촉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2월 (2012년~계속/8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제주지역 소재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획 단계부터 마켓시장 진출 등을 고려하여 특정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상품·서비스 기술개발
  - 제주지역 내 특화자원을 대상으로 소재·기법·디자인 등을 융·복합하여 기존 제품 개선 및 신제품 개발
◦ 재원구분 : 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도 | | 대행기관 | | 도 |
|---|---|---|---|---|
| ·기본계획 수립<br>·대행기관 사업수행 협약<br>·사업비 교부 | ⇨ | ·사업세부 계획 수립<br>·사업 공고<br>·진도점검<br>·성과발표회 | ⇨ | ·사업비 정산<br>·사업추진결과 분석 및 피드백 실시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지원 | 80 | 80 | 70 | 10 | △13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가태순 주무관 (☏ 064-710-2638)

## 3-8.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 2019년 제주권 지역산업육성사업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국비)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비)에서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①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②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③지역연고(전통/풀뿌리산업)사업 육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 각 사업의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 공고를 참고바랍니다.
(http://jeju.irpe.or.kr 이나 http://www.kiat.or.kr 참조)

### ▣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사업

○ 개요 및 목적 :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 과제 지원

○ 지원 산업군 및 예산 : 청정헬스푸드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 스마트그리드산업의 R&D 및 비R&D(총 16,518백만원, 국비 11,846백만원, 도비 4,672백만원)

○ 공고 주요일정(예정) : 신규과제 공고 : 16,518백만원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 12월말 ~ 2019. 1월말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 1월말 ~ 2019. 2월

### ▣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 개요 및 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협력산업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 산업군 및 예산 : 뷰티향장품(제주,충북,충남,전북), 에너지신산업(충북,제주) R&D 및 비R&D(총 9,127백만원, 국비 6,389백만원, 도비 2,738백만원)

○ (공고 주요일정(예정)) : 신규과제 공고 : 9,127백만원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 12월말 ~ 2019. 1월말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 1월말 ~ 2019. 2월

## ▣ 사업 추진절차

| 공고사업계획서 접수 | | 선정 평가 | | 최종선정 협약 및 연차·최종평가 | | 사업비 정산 |
|---|---|---|---|---|---|---|
| (재)제주지역사업 평가단 | → | (재)제주지역사업 평가단 ⇒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 → | (재)제주지역사업 평가단 ⇒ 사업선정·협약·연차·최종평가 | → | (사)제주지역사업 평가단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지역산업육성사업 | 33,870 | 29,095 | 25,645 | △3,450 | △11.9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강일두 주무관 (☏ 064-710-4713)
(재)제주테크노파크 고영국 정책기획팀장 (☏ 064-720-2306)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김정희 평가팀장 (☏ 064-759-7421)

## 3-9. 지역연고(풀뿌리)산업 육성사업

**< 2019년 제주권 지역산업육성사업 안내 >**

◇ 산업통상자원부(국비) 및 제주특별자치도(지방비)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연고(풀뿌리) 자원(조릿대, 양채류, 제주무 등) 활용 제품개발, 마케팅지원 등 관련 기업(산업) 육성지원으로 관련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 각 사업의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상세 내용은 웹사이트 공고를 참고바랍니다.(http://jeju.irpe.or.kr 이나 http://www.kiat.or.kr 참조)

### ▣ 지역연고(풀뿌리)산업 육성사업

○ 개요 및 목적 : 지역 내 특성화된(전통) 자원(품목)을 활용하는 제품의 고부가가치 R&D(기술개발) 및 비R&D(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지원

○ 지원 산업군 및 예산 : 다른 지역에 비해 특화도가 높은 품목 분야(R&D 및 비R&D, R&D(총 876백만원, 국비 714백만원, 도비 72백만원)

○ 공고 주요일정(예정) : 신규과제 공고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 12월말 ~ 2019. 1월말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 1월말 ~ 2019. 2월

### ▣ 사업 추진절차

| 공고사업계획서 접수 | | 선정 평가 | | 최종선정 협약 및 연차·최종평가 | | 사업비 정산 |
|---|---|---|---|---|---|---|
| (재)제주지역사업 평가단 | → | (재)제주지역사업 평가단 ⇒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 → | (재)제주지역사업 평가단 ⇒ 사업선정·협약·연차·최종평가 | → | (사)제주지역사업 평가단 ⇒ 사업비 정산 및 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지역연고(풀뿌리) 산업 지원사업 | | 886 | 786 | △100 | △11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강일두 주무관 (☏ 064-710-4713)
(재)제주테크노파크 고영국 정책기획팀장 (☏ 064-720-2306)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김정희 평가팀장 (☏ 064-759-7421)

# 3-10.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을 가진 도내 중소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상 연구인력 및 자금력 부족 등으로 사업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제품경쟁력 확보로 매출 증대, 고용창출, 해외수출 증대 등 지역을 대표 기업으로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테크노파크(JTP)

◦ 지원대상

 ▪ 도내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술융복합 제품개발 지원(5개사 내외), 품질(성능) 인증지원(4개사 내외)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JTP |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 수립<br>·JTP에 사업비 교부 | |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br>·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 ·사업환류 및 평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지원사업 | - | 350 | 315 | △35 | △10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양재석 주무관 (☏ 064-710-4812)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오정협 연구원 (☏ 064-720-3054)

# 3-11.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신규로 신·증설하는 제조설비의 투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투자 유발 및 FTA 등 각종 무역협약에 대비한 제주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2011년 ~ 계속/2019년)
◦ 지원형태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JTP)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으로 기재되어있는 중소기업 중 본사가 제주지역이며, 협약기간 내에 제조설비 설치 완료 및 제품 출시가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신규 제조설비의 60% 이내 보조)
◦ 재원구분 : 도비
◦ 사업 추진절차

| | | | | | | | | | |
|---|---|---|---|---|---|---|---|---|---|
| 사업계획 공고 (JTP) | → | 신청·접수 (JTP) | → | 서면평가 (JTP) | → | 현장·발표 평가 (심사위원회) | → | 지원대상 선정 (JTP) | ↓ |
| 사업비지급 (JTP) | ← | 물품검수 (JTP) | ← | 사업완료, 보조금신청 (참여기업) | ← | 사업추진 (참여기업) | ← | 협약 체결 (JTP-참여기업) | |

## ▣ 예산현황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 200 | 200 | 180 | △20 | △10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이성철 주무관 (☏ 064-710-8883)

## 3-12.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 ▣ 사업목적

◦ 지역 우수 기술과 현장 수요 간의 기술적 차이를 해소하여 지역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제주지역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 강화

※ 사업시행 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2013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및 오픈이노베이션에 애로요인이 있는 도내 기업 (제한분야 없음)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사업화 전략 및 컨설팅, 투자연계·유치 지원 등 200백만원

| | |
|---|---|
| Early Stage Project | 기술(아이템) 확보 前단계에서 필요한 항목 |
| Middle Stage Project | 기술(아이템) 확보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 |
| Latter Stage Project | 기술(아이템) 확보 後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항목 |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사업 수행기관 | | 사업 수행기관 |
|---|---|---|---|---|
| · 기본계획 수립 | ⇨ | · 지원대상자 선정<br>· 사업관리 | ⇨ | · 지원사업 평가 및 환류<br>·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기술사업화 지원 | 590 | 460 | 460 | - | -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양재석 주무관 (☏ 064-710-4812)

## 3-13.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 사업목적

◦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했으나 자금력이 취약하여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초기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과 실용화 가능성 확인 등 사업화 지원

◦ 등록된 우수 특허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제주지식재산센터(특허청 지정)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국내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된 발명 및 고안을 보유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우수기술의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시제품 실제 제작비용의 80%를 1기업당 최대 11,000천원 내로 지원, 기업부담금 20%(현금부담, 현물부담 불인정)
- Mock up제작, 재료비, 금형제작비, 연구기자재 임차료 등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추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필수)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제주지식재산센터<br>(특허청 지정) |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 수립<br>·운영지침 결정 | |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br>·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 ·사업환류 및 평가 |

### ▣ 예산현황

<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br>(A) | '19예산<br>(B) | 증 감<br>(B-A) | % |
|---|---|---|---|---|---|
|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 | 100 | 100 | 90 | △10 | △10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문경록 주무관 (☏ 064-710-2602)

## 3-14.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대표기업으로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제주지식재산센터(특허청 지정)
◦ 지원대상
  - 글로벌IP기업육성 : 2019년 신규선정업체 및 18/17년도 기 선정업체 대상
  -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 도내 중소기업 대상
  - IP창출인프라구축 :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도내 중소기업 대상
  - IP나래 프로그램 :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이내 기업 대상
  - 국내 권리화 지원 : 도내 중소기업 대상
◦ 지원내용
  - 글로벌IP기업육성 사업 : 해외 출원비용지원, 특허/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특허&디자인 융합,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등 종합지원
  - 중소기업IP경영지원단 사업: 특허/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등 종합지원(기업당 2건 이내)
  - IP창출인프라구축 사업: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지식재산재능나눔사업, IP경영인클럽운영, 무료변리상담 운영, IP페스티벌 등
  -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IP 기술·경영의 융·복합 컨설팅 지원
  - 국내 권리화 지원사업 : 국내권리화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제주지식재산센터 (특허청 지정) |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 수립<br>·사업비 교부 | |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br>·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 ·사업환류 및 평가 |

### ▣ 예산현황

<지식재산창출지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 1,344 | 1,392 | 1,324 | △68 | △4.9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문경록 주무관 (☏ 064-710-2602)

# 3-15.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육성 위한 도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연구센터)
◦ 지원대상 : 스마트그리드 분야 도내기업
◦ 지원내용 :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사업 수행기관 | | 사업 수행기관 |
|---|---|---|---|---|
| · 기본계획 수립 | ⇨ | · 지원대상자 선정<br>· 사업관리 | ⇨ | · 지원사업 평가 및 환류<br>· 차년도 사업계획 반영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기술개발지원 | 300 | 300 | 300 | 0 | 0 |

* 사업담당자 : 탄소없는제주정책과 이현탁 주무관 (☏ 064-710-2534)

# 4.
# 인력분야

# 4 인 력 분 야

## 4-1.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확보 및 사회서비스 제공확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인건비,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시 경제일자리과 | | (예비)사회적기업 | | 시 경제일자리과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공모 및 선정 | ⇨ | · 사업 신청.접수<br>· 사업 지원 | ⇨ | · 사업수행<br>·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 ⇨ | · 보조금 정산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2,228 | 2,741 | 3,080 | 339 | 12.3 |

* 사업담당자 : 경제정책과 이순복 주무관 (☏ 064-710-2553)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김수철 주무관 (☏ 064-728-281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박은영 주무관 (☏ 064-760-2613)

## 4-2.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에 브랜드 개발,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수익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 지원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개발, 시제품제작비,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비용, 특허·출원 등 인증취득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시 경제일자리과 | | (예비)사회적기업 | | 시 경제일자리과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공모 및 선정 | ⇨ | · 사업 신청접수<br>· 사업 지원 | ⇨ | · 사업수행<br>·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 ⇨ | · 보조금 정산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935 | 575 | 760 | 185 | 32.1 |

* 사업담당자 : 경제정책과 이순복 주무관 (☏ 064-710-2553)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김수철 주무관 (☏ 064-728-281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박은영 주무관 (☏ 064-760-2613)

## 4-3.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 ▣ 사업목적

◦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최대 사회적 공헌이므로 이들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고

◦ 기업에 시설환경개선비 등을 지원,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직원복지 향상을 통한 고용 촉진 유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고용우수기업 신규 인증기업

◦ 지원내용 : 시설환경개선비 지원(업체당 20백만원 범위 내)

- 직원 복지시설 개·보수, 작업 환경 개선 등 작업 능률 향상 및 직원 복지 향상에 관계되는 사항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기업체. 제주특별자치도 | | 기업체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계획 수립 | ⇨ | · 사업계획서 신청<br>·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 | · 사업수행 및 완료보고 | ⇨ | · 현장확인 및 사업비 교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년예산 (B) | 증 감 (B-A) | % |
|---|---|---|---|---|---|
|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 180 | 180 | 300 | 120 | 66.6% |

* 사업담당자 : 일자리과 고미경 주무관 (☏ 064-710-3793)

# 고용우수기업 우대지원(인센티브) 내용

| 지원 기관·부서 | 지 원 내 용 |
|---|---|
| 도 일자리과<br>(710-37933) |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교부<br>❍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원인원 확대<br>: 최대 10명에서 <u>1명 추가 지원(총11명까지 지원)</u><br>❍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br>: '19년 신규 인증기업에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지원<br>(업체당 2천만원 범위) |
| 제주시 재산세과<br>(728-2383)<br>서귀포시 세무과<br>(760-2325) | ❍ 재산세 50% 감면<br>☞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함 |
| 도 소상공인기업과<br>(710-2634)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br>- 담보별(부동산, 보증서) 대출금리의 70%<br>- 신용 대출금리 3.0%<br>❍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최고25억원)<br>❍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금리우대(2.8%)<br>❍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최고4억) |
| 제주신용보증재단<br>(758-5740) | ❍ 신용보증 수수료 0.3% 인하<br>☞ 보증심사 결과 최종 결정된 보증수수료율<br>(0.5 ~ 2% 이내)에서 0.3% 인하 |

## 4-4.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 ▣ 사업목적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조속한 취업 지원

◦ 대학-기업-행정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제주대학교 등 도내 4개 대학교

◦ 지원대상: 도내 대학교 졸업예정자(미취업 졸업자 포함)

◦ 지원내용: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성장유망 직종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연계 지원 (해양, 육상 레저스포츠 안전관리, 드론, 방송콘텐츠, 국제항공서비스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대학교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지침) 수립<br>·보조금 접수 및 교부 | ⇨ | ·사업수행<br>·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 ⇨ | · 보조금 정산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청년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690 | 770 | 770 | 0 | |

* 사업담당자: 일자리과 현승현 주무관 (☏ 064-710-2543)

## 4-5.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 ▣ 사업목적

◦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숙소 임차 비용을 지원으로 청년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청년기업 (상시근로자 무관)
◦ 지원내용 : 기업에서 청년 근로자(만15세 ~ 39세)에게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기업이 청년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여 숙소를 지원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한도(임차비용의 80%범위),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최대 5명(추가 지원 대상의 경우 최대 8명)
◦ 참여신청 : 매월 1일 ~ 10일(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신청 : 매분기 1일 ~ 10일(3월, 6월, 9월, 12월)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기업 | | 제주도 |
|---|---|---|---|---|
| · 사업참여기관 공모 | ⇨ | · 임대차계약 체결 후 사업신청 | ⇨ | · 선정결과 알림<br>· 사업수행 및 정산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 500 | 800 | 300 | 60 |

* 사업담당자 : 일자리과 채민리 주무관 (☏ 064-710-4471)

## 4-6.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지원

### ▣ 사업목적

◦ 민간기업의 열악한 채용시스템을 개선하고 우수한 능력을 가진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구인 구직 비용을 절약하고 일시에 많은 구직자 채용 가능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지원
◦ 사업시행 주체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 : 도내 구인 중소기업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상반기(4월) 하반기(9월) 연2회 구인 기업 모집, 기업체별 채용 요강 가이드북 제작, 구직자 취업컨설팅, 채용면접 등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보조사업자 | | 기업 및 도민 |
|---|---|---|---|---|
|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 | · 참가기업 모집<br>· 기업체별 채용요강 가이드북 제작<br>. 구직자 취업컨설팅<br>. 채용면접 지원 | ⇨ | · 채용면접 실시<br>· 채용결과 보고 |

### ▣ 예산현황(도비100%)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민간기업 통합 정기 채용지원 | 100 | 100 | 100 | 0 | - |

* 사업담당자 : 일자리과 오지원 주무관 (☏ 064-710-4459)

## 4-7.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 사업목적

◦ 중장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장년 고용을 활성화하고, 중장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지원
◦ 사업시행 주체 :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도내 중소기업이 중장년 신규채용시 1인당 인건비 일부 지원(1년)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보조사업자 | | 기업 |
|---|---|---|---|---|
| · 업무대행협약 | ⇨ | · 신청서류 심사 및 선정<br>· 신청서류 심사 및 선정<br>·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 · 근로계약 체결 및 지원약정 체결<br>· 참여근로자 관리 및 지원금 신청 |

### ▣ 예산현황(도비100%)

(단위: 백만원)

| 구 분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장년 취업 지원 프로젝트 | 323 | 583 | 260 | 80.5 |

* 사업담당자 : 일자리과 최홍범 주무관 (☏ 064-710-3794)

## 4-8.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 ▣ 사업목적

◦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대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 임금 기준 상향 견인하고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고용여건 개선 및 기업체의 경영애로 해소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 업 비 : 15억
◦ 지원대상

※ 사업참여기업 자격
① 제주도내 사업자 등록
② 최근 1년간 매출액 1억원 이상
③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대 보험가입 사업장

※ 사업참여근로자 자격
①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자
②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1980. 1. 1 ~ 2004. 12. 31 출생자)

◦ 사업신청 : 매월 1~10일 / 지원금 교부 : 분기(3, 6, 9, 12월)
◦ 사업내용 : 미취업청년 신규채용 기업에 1인당 월 50~70만원 지원(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 추진절차

| 사업참여 신청 접수 | | 선정(2년간 약정) | | 지원금 신청 접수 | | 지원금 지급 |
|---|---|---|---|---|---|---|
| .접 수 처 :<br>제주특별자치도<br>경제일자리정책과<br>.접수기간 :<br>매월 1~10일 | ⇨ | 제주특별자치도<br>경제일자리정책과 | ⇨ | .접 수 처 :<br>제주특별자치도<br>경제일자리정책과<br>.접수기간 :<br>분기별(3,6,9,12월)<br>1~10일 | ⇨ | 분기별<br>(3,6,9,12월)<br>지급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청년취업 지원 프로젝트 | 1,600 | 2,400 | 1,500 | △900 | △37.5 |

* 사업담당자 : 일자리과 채민리 주무관 (☏ 064-710-4471)

## 4-9. 채용 박람회 지원

### ▣ 사업목적

◦ 도내 구인기업과 도내 구직자 간 만남의 날을 개최하여 현장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현장의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고용 활성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지원
◦ 사업시행 주체 : 공모에 의한 사업자 선정
◦ 지원대상 : 도내 구인 기업 및 구직자
◦ 지원내용
  - 청년드림취업박람회(10월), 도민행복일자리박람회(10월) 실시
  - 현장면접 및 취업컨설팅 지원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보조사업자 | | 기업 및 도민 |
|---|---|---|---|---|
| ·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 ⇨ | · 참가기업 모집<br>· 기업체별 채용요강 가이드북 제작<br>· 채용박람회 운영<br>· 사후관리 | ⇨ | · 현장면접 실시<br>· 채용결과 보고 |

### ▣ 예산현황(도비100%)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채용박람회 | 116 | 140 | 126 | △14 | △10 |

* 사업담당자 : 일자리과 한미숙 주무관 (☏ 064-710-4443)

## 4-10. 마을기업 육성 지원

### ▣ 사업목적

◦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등(지원기관은 도, 지정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은 행정시)
◦ 지원대상 : 컨설팅 기관 및 마을기업
◦ 지원내용 : 컨설팅 기관 지원 78백만원, 지정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370백만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 행정안전부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
| · 마을기업 공모<br>· 중간지원기관 공모 | ⇨ | · 사업신청<br>· 심사위원회 심사 및 심사결과 행정안전부 제출 | ⇨ | · 중앙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과 통보 | ⇨ | · 선정결과 알림<br>· 사업수행 및 정산보고 |

### ▣ 예산현황(국비50%. 도비50%)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마을기업 육성사업 | 368 | 398 | 448 | 50 | 12.6 |

* 사업담당자 : 경제정책과 김완수 주무관 (☏ 064-710-2552)
제주시 마을활력과 이현진 주무관 (☏ 064-710-2922)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강지향 주무관 (☏ 064-760-2243)

## 4-11. 제주 더 큰 내일센터

### ▣ 사업목적

◦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취·창업을 지원하는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도내 청년 고용 환경의 미스매치 현상 해소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지원형태 : 직접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공기관 대행)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 만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최대 2년간 先 고용 後 숙련프로그램 운영, 월 150만원 참여 수당 지원
◦ 사업내용
- 제주지역 내 청년 先 고용, 後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국내 기업연수원 및 지역사회 기관 연계 현장·실무 취창업 현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프로그램 이수한 청년 인력에 대한 취업·벤처 창업 지원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대행사업자 | | 유관기관 |
|---|---|---|---|---|
| · 사업계획 수립<br>· 업무대행협약<br>· 사업비 확보 및 교부 | ⇨ | · 참여자 선발 및 지원<br>(고용계약 및 지원약정 체결)<br>· 세부 프로그램 운영<br>·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 · 직무체험 현장 제공<br>·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br>· 지역혁신 인력양성 지원 |

### ▣ 예산현황(도비100%)

(단위: 백만원)

| 구 분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 100 | 2,700 | 2,600 | 2,700 |

* 사업담당자 : 일자리과 정철 주무관 (☏ 064-710-2546)

## 4-12.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 사업목적

◦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숙련인력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목돈마련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지원대상 : 도내 1인이상 중소기업 / 중장년(35 ~ 55세)
◦ 지원내용 :
- 가입기간 : 5년 의무(60개월)
- 공제적립 방식 : 월34만원(근로자 10, 기업 12, 도 12) 저축 → 2,040만원 + 이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보조사업자 | | 기업 |
|---|---|---|---|---|
| · 업무대행협약 | ⇨ | · 신청서류 심사 및 선정<br>· 신청서류 심사 및 선정<br>·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 · 근로계약 체결 및 지원약정 체결<br>· 참여근로자 관리 및 지원금 신청 |

### ▣ 예산현황(도비100%)

(단위: 백만원)

| 구 분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 | 700 | 700 | 순증 |

* 사업담당자 : 일자리과 최홍범 주무관 (☏ 064-710-3794)

# 4-13.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지원

## ▣ 사업목적

◦ 특성화고 졸업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구직난 해소에 도움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지원형태 : 도비 + 교육청 보조 사업
◦ 사업시행 주체 : 특성화 고등학교
◦ 지원대상 : 특별교육과정 학생 20명 이상을 선발하여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 지원내용
- 별도반 편성,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초소양능력 배양 등 직장적응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도·도교육청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사업공고(참여학교 모집) | | · 참여학교 선정 | | · 사업비 지원 | |

| 특성화고 | ⇨ | 도·도교육청 | ⇨ | 도·도교육청·특성화고 |
|---|---|---|---|---|
| · 참여학생 및 업체선정 등 사업추진 | | · 추진상황 지도 점검 | | · 운영 성과 보고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산학협력 및 인력양성사업 | 270 | 270 | 27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요숙 주무관 (☏ 064-710-2637)

# 5.
# 수출분야

# 5 수 출 분 야

## 5-1. 2019년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운영

### ▣ 사업목적

◦ 청년들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자산 형성이 가능한 수준의 소득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도내 수출기업에는 우수한 청년인력을, 취업희망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청년 :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참여 확정시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만18~39세의 미취업자(1980.2~2001.2 출생자)

◦ 지원내용

- 직접 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최대2년(채용일~2020.12.31.)+ 취·창업 시 추가 지원(1년)
- 직원 신규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 수립<br>·참여기업 및 취업희망자 모집 공고 | ⇨ | ·세부추진계획 수립<br>·인력뱅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취업희망자 모집·선정<br>·인력뱅크 지원사업 시행 등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 - | 256 | 2,273 | 2,017 | 788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2.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 ▣ 사업목적

◦ 화장품, 식음료 등 경쟁력 있는 제주대표상품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집중 투자와 육성으로 통상정책 강화

◦ (선)성공사례 창출 (후)수출기업간 공유 및 후속지원을 통해 제주 수출기업의 전체적 수준향상 선도 견인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제주 생산 제품 중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 지원내용 : 제주 대표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대한 홍보물 제작, 왕홍 활용 모바일 마케팅 홍보, 제주상품홍보전시 판매장 개설

◦ 재원구분 : 지방비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발전연구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정책연구과제 제출 (제주수출유망품목 선정 연구) | ⇨ | ·기본계획 수립<br>·사업비 교부 | ⇨ | ·세부추진계획 수립 (홍보마케팅, 판매장 개설 등)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 - | - | 500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정미나 주무관 (☏ 064-710-3063)

## 5-3. 제주-중국 경제무역인 통상 네트워크 구축사업

### ▣ 사업목적

◦ 한국 전경련에 해당하는 중국 국제글로벌기업촉진회(CICPMC)와 협업, 중국 성(省) 단위 유명기업 CEO 및 경제인들과 제주기업과의 경제 네트워크 구축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내용
  - 상반기 한·중 경제무역인 라운드 테이블(5월)
    · 제주포럼기간 연계추진-환영만찬, 라운드테이블 및 상담회, 제주포럼 개막식 및 세션운영
  - 하반기 라운드 테이블(11월) : 중국 성(省)단위 개최
◦ 재원구분 : 지방비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 수립<br>(CICPMC와의 세부협의 및 MOU체결, 운영계획 등)<br>·사업비 교부 | ⇨ | ·세부추진계획 수립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중국 경제무역인 통상 네트워크 구축사업 | - | - | 70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정미나 주무관 (☏ 064-710-3063)

## 5-4.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 추진

### ▣ 사업목적

◦ 최근 글로벌 무역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환경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우수한 제주 제품과 제주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 수출마케팅 확대 추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대행기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 기업
◦ 지원내용
  - 상품페이지 제작, 온라인몰 상품 입점, 고객 대응, 배송비 지원
  - 사업설명회, 판매상담회, 운영경비 등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등 | | 제주도 |
|---|---|---|---|---|
| ·기본계획 수립 | ⇨ | ·세부추진계획 수립<br>·위탁업체 선정<br>·대상업체 공모 및 결정<br>·지원사업 추진, 평가 및 정산 | ⇨ | · 사업평가, 정산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글로벌 온라인마켓 제주상품 입점 추진 | 200 | 200 | 100 | △100 | △50%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조건형 주무관 (☏ 064-710-2627)

## 5-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 사업목적

◦ KOTRA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유망시장의 잠재력 있는 바이어를 발굴·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제주상품의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수출확대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대행기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KOTRA제주사무소: 해외바이어 발굴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 기업
◦ 지원내용 : 바이어 발굴비, 바이어 항공료(50%) 및 숙박료(2일),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등 기타 수출상담회 개최 제반비용

※'19년 운영 개선 : 해외바이어 현지 투어, 단체 환영만찬 등 상담회 외적인 분야를 축소 조정하고 수출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경비 조정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도 |
|---|---|---|---|---|
| ·기본계획 수립 | ⇨ | ·세부추진계획 수입<br>·참가업체 모집·선정<br>·수출상담회 개최 | ⇨ | ·사업평가, 정산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개최 | 100 | 100 | 130 | 30 | 30%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조건형 주무관 (☏ 064-710-2627)

## 5-6.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 사업목적

◦ 도내 수출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강화 및 수출증대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대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등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 기업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공동 참가 3회내외('19. 4월중순 베트남하노이엑스포 등)
  · 항공료(1사1인 50%), 편도운송비, 부스임차비·기본장치비(100%), 통역비 등 공통경비(100%)
- 무역사절단파견 3회내외('19.3월말 중국(상해·청두·대만)무역사절단 등)
  · 상담장·차량 임차료, 해외시장조사비·바이어발굴비·통역료 등 공통경비(100%) 및 항공료(50%, 1사1인)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 수출기업 |
|---|---|---|---|---|
| ·기본계획 수립<br>·참가업체 선정<br>·현지 파견 공동지원, 사업평가, 정산 및 환류 | ⇨ | ·참가업체 공동모집<br>·현지 파견 공동지원<br>·사후 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 | ⇨ | ·사업 참가<br>·사업성과 설문참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 649 | 649 | 649 | 0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조건형 주무관 (☏ 064-710-2627)

## 5-7.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농수축산 가공식품 대상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공동참가 지원을 통한 상품 홍보 및 수출상담 기회 제공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대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 지원내용 : 농수산 식품박람회 3회(UAE 두바이 식품박람회('19.2.17 ~ 2.21), 일본 동경식품박람회('19.3.5 ~ 3.8) 등) 내외 참가에 따른 제반비용 지원
  - 항공료 1사1인(50%), 편도운송비, 부스임차료·기본장치비(100%), 통역비 등 공통경비(100%)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등 | ⇨ | 수출기업 |
|---|---|---|---|---|
| ·기본계획 수립<br>·참가업체 선정<br>·현지 파견 공동지원, 사업평가, 정산 및 환류 | | ·참가업체 공동모집<br>·현지 파견 공동지원<br>·사후 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 | | ·사업 참가<br>·사업성과 설문참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농수산식품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100 | 100 | 90 | △10 | △10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조건형 주무관 (☏ 064-710-2627)

## 5-8.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행사

### ▣ 사업목적

◦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공조로 해외시장 개척활동 효율성증진

◦ 해외 조직망을 갖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연계·우수 유통마켓 판촉행사 추진으로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대행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 지원내용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판촉행사 추진

- 해외현지 대형유통 매장 내 판촉행사 소요비용 지원(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행사 점검비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 | 제주도 |
|---|---|---|---|---|
| ·판촉행사 기본계획 수립<br>·협약 체결 | | ·사업자 선정·추진<br>·사업정산 및 성과보고 | | ·사업평가, 정산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판촉 행사 | 60 | 60 | 50 | △10 | △17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조건형 주무관 (☏ 064-710-2627)

## 5-9.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 사업목적

◦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국내 주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기업인지도 제고, 수출상품 홍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 제공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정액)
◦ 대행기관(보조사업자) : 한국무역협회제주지부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2회(중국국제수입박람회 등) 내외 참가에 따른 항공료 1사1인(50%), 편도운송비, 부스임차료·기본장치비(100%), 통역비 등 공통경비(100%) 제반비용
◦ 사업 추진절차

| | | | | | |
|---|---|---|---|---|---|
| **보조금교부내시** | ⇒ | **보조금교부신청** | ⇒ | **사업비 교부** | ⇒ |
| (도 → 한국무역협회) | | (한국무역협회 → 도) | | (도 → 한국무역협회) | |
| **해외전시회참가 신청 (접수)** | ⇒ | **사업진행** | ⇒ | **결과보고 및 정산** | |
| (한국무역협회) | | (한국무역협회) | | (한국무역협회 → 도) |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 | - | 90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조건형 주무관 (☏ 064-710-2627)

# 5-10. 해외통상사무소(상해대표처, 동경사무소) 운영

## ▣ 사업목적

◦ 중국 및 일본 현지 판로 및 유통채널 개척·관리를 통해 제주상품 수출 증대 도모
◦ 중국 및 일본 수출시장 동향 수집, 제주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지원,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제주상품 판촉전 등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증대
◦ 중국 및 일본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및 한일 교류협력사업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년(동경사무소는 2017년) ~ 계속
◦ 지원형태 : 출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도내 수출(희망)기업
◦ 지원내용 : 제주 수출기업의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현지 수출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동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 ⇨ | · 세부추진계획 수립<br>·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 운영<br>· 현지 마케팅 활동 전개 등 |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지원 | 800 | 900 | 980 | 80 | 8.89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정미나 주무관 (☏ 064-710-3063)
김성범 주무관 (☏ 064-710-2626)

## 5-11. 수출 보험료 지원

### ▣ 사업목적

◦ 수출진흥을 위한 공격적 해외마케팅 강화 등에 따른 신규 수출기업 증가 등으로 수출보험 수요급증이 전망됨에 따라

◦ 지역 중소 수출업체의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수출거래에 따르는 불안해소, 환율변동 등 국제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이고 공격적인 수출 활동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한도 :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 이상 8백만원, 그 외 6백만원

◦ 지원내용 :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보증료 100% 지원 (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
| · 수출보험료 지원 기본계획 수립<br>· 협약체결 및 사업안내 | | · 수출기업 수출보험 대상자 선정·지원 | | · 수출보험 성과 보고<br>·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 보험료 지원 | 180 | 180 | 162 | △28 | △15.6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12.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 ▣ 사업목적

◦ 타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수출실무를 지원할 수 있는 「종합 수출 지원시스템」 구축
◦ 제주기업의 수출상품 해외 소개, 통관, 사후관리 등 수출 전과정 지원 강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농축수산·제조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3,000천원(세부항목별 한도설정)
◦ 지원내용
- 무역실무 종합지원(무역서류 번역, 대행 등): 100천원 이내
- 해외시장테스트를 위한 수출상품 샘플발송: 1,000천원 이내
- 외국어 리플릿, 카탈로그 등 홍보물 제작: 2,000천원 이내
- 해외바이어 신용도조사, 진단 등: 1,500천원 이내
- 해외바이어 초청 소규모 상담회 등: 2,000천원 이내
- 찾아가는 무역상담소, 역량진단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 ⇨ | · 세부추진계획 수립<br>· 참여업체 선정 및 수출업체 밀착지원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 One-Stop 서비스 지원 | 90 | 90 | 90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13. 해외 수출통관 컨설팅 지원

### ▣ 사업목적

◦ 중국 등 해외 수출통관 관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도내 수출기업 애로점 해소 및 해외 수출시장 진출 기반 조성

◦ 수출통관에 정통한 컨설팅 회사와 공동협력 및 통관업무 대행 체계 구축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농축수산·제조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5,000천원(품목당 최대 500천원, 10개 품목이내)

◦ 지원내용

- 수출통관 사전진단 및 외국어 라벨 작업 등 해외수출가이드·컨설팅비용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 ⇨ | · 세부추진계획 수립<br>· 컨설팅 업체를 통한 컨설팅 지원 |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해외 수출통관 컨설팅 지원 사업 | 100 | 100 | 50 | △50 | △50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14. 제주 전자무역지원시스템 운영

##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인프라 구축, 제주상품 해외바이어 홍보 등 온라인 수출지원 체계 구축으로 수출확대 기반 조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농축수산·제조업체
◦ 지원내용
- 수출기업 해외 유명 포탈 사이트 광고
- 수출기업 전자카달로그 신규제작 등록(40개사 내외) 및 업데이트
- 해외바이어 E-mail 번역 지원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 ⇨ | · 해외 유명 포탈 사이트 광고<br>· e-catalog 제작등록<br>· 해외바이어 E-mail 번역 지원 등 |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전자무역지원 시스템 운영 | 60 | 60 | 54 | △6 | △10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15.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 ▣ 사업목적

◦ 수출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진출 및 시장개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어와의 통역, 통관 제출서류 등 제반 외국어 제반서류의 번역 지원을 통해 수출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수출(희망)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1,500천원
◦ 지원내용
  - 수출기업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홍보자료, 계약서 번역 등
  - 바이어 미팅 통역 등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직·간접적 필요한 통번역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 ⇨ | · 통역 및 번역 업체 선정<br>·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지원 |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사업 | 40 | 40 | 40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16.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 ▣ 사업목적

◦ 제주특산품을 생산·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으로 해외마케팅 효과제고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농수축산·제조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6,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상품소개, 제조과정, 공장시설 등 홍보 영상물(외국어) 제작비 지원
- HD급 이상 촬영 및 편집, 컴퓨터 CG 등 활용한 영상제작
  * 지원기준: 예산범위내 지원(자부담 20%)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 ⇨ | · 세부추진계획 수립<br>·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br>· 정산 및 사업성과 피드백 |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상품 외국어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 50 | 50 | 50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17.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

##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통상분야의 전문가의 초청강연, 교육사업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기업가, 관리자 등의 통상업무 능력 향상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 지원내용
- 무역 실무 교육, 수출 성공사례 특강 등
- 수출관련 도내 업체 교육 참석비, 강사초청비 등 일부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 ⇨ | · 세부추진계획 수립<br>· 사업시행 |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기업 역량강화 지원 | 20 | 20 | 20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64-710-2628)

# 5-18.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 ▣ 사업목적

◦ 무역에 있어 해당국가의 통관에 해외규격인증은 필수

◦ 해외정보 및 전문인력, 자금 부족 등 영세 수출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지원으로 제주기업 제품의 수출 촉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테크노파크(JTP)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한 수출(희망) 중소 제조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1,0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규격인증 취득비의 70%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JTP | ⇨ | 주관기업, 컨설팅사 | ⇨ | JTP, 도 |
|---|---|---|---|---|---|---|
|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 · 사업대상자 모집·선정<br>· 컨설팅사 협약체결 | | · 인증획득 추진<br>· 성과보고 | | · 인증획득 확인<br>·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 50 | 50 | 45 | △5 | △10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19.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

### ▣ 사업목적

◦ 수출업체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정합성을 확인 검토하여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켜 수출을 원활하게 추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상공회의소
◦ 지원대상 : 원산지 확인서 발급의 정합성을 확인 검토하고자 하는 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3,000천원
◦ 지원내용 : 전문관세사에 의한 원산지 확인서 제3자에 의한 검토 및 발급, 컨설팅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배부 | ⇨ | · 사업비 신청<br>· 지원공고 및 신청접수<br>· 확인서 검토 및 발급, 컨설팅 |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 25 | 25 | 25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20.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

### ▣ 사업목적

◦ FTA의 활용과 관련한 중앙과 도, 유관기관 간 협력,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FTA활용지원 사업의 발굴, 운용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운영기관 : 제주상공회의소(제주 FTA활용 지원센터)
◦ 사업내용
- 업체 맞춤형 찾아가는 FTA 현장방문 컨설팅
- 제주지역 수출 경쟁력 제고 및 FTA 전문인력 양성
- FTA 교육, 설명회, 기타 콜센터 운영, 방문객 상담 등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상공회의소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 ⇨ | · 세부추진계획 수립<br>· FTA관련 기업상담 등 추진 | ⇨ | · 사업평가 및 환류 |

### ▣ 예산현황(국고 101백만원, 도비 60백만원)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 FTA활용 지원센터운영 | 141 | 141 | 161 | 20 | 14.2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문희영 주무관 (☏ 064-710-2628)

# 5-21. 해외지사화사업 및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

## ▣ 사업목적

◦ KOTRA 무역관을 해외지사로 활용, 해외마케팅 전문인력과 비용부담 없이 수출시장 개척지원

◦ 현지물류창고이용 지원 및 물류컨설팅 제공을 통한 국내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사업 * 공모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 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수수료)의 80%지원(※업체당 600만원 한도)

| 구 분 | 사업(지원)내용 | 참가비(수수료) | 지원기준 |
|---|---|---|---|
| 해외 지사화사업 | KOTRA 해외무역관의 전담지원을 통해 해외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에서 거래성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외판로 개척활동지원. | 250만원~350만원 (지역별차등적용) | - 참가비의 80% 지원<br>- 1개사 당 2개 지역 (해외물류네트워크 사업포함) |
| 해외물류 네트워크사업 | 현지 물류창고 이용을 지원 및, 물류컨설팅 제공. | 125만원~175만원 (지역별차등적용) | - 수수료의 80%<br>- 1개사 당 2개 지역 (해외지사화사업 포함) |

◦ 추진절차

**지원신청 (접수)** (업체 → 도, Kotra) ⇒ **심사.평가 (지원 대상 선정)** (도, Kotra) ⇒ **Kotra 최종 선정여부 확인 후 사업비 교부** (도 → 업체) ⇒

**업체·Kotra 협약 체결 및 참가비 납부** (업체, Kotra) ⇒ **사업진행** ⇒ **결과보고 및 정산** (업체 → 도)

* Kotra모집기간(예정) : 신청(2월, 4월, 6월, 8월) → 선정(2주) → 참가비 납부(1주)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해외지사화사업 및 해외물류네트워크사업 | 50 | 50 | 50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조건형 주무관 (☏ 064-710-2627)

# 5-22.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신규 거래선 발굴, 해외시장 동향 등 조사활동 지원

◦ 현지무역관을 통한 바이어발굴 및 상담주선, 통역비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대행기관 : KOTRA(제주사무소)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 기업

◦ 지원내용 : 참가비(수수료)의 100%지원(※업체당 100만원 한도)

| 구 분 | 세부사업명 | 사업(지원)내용 | 참가비(수수료) | 지원기준 |
|---|---|---|---|---|
| 해외 시장조사 서비스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서비스 | ①신청 고객의 제품에 관심을 보인 해외 수입 업체 조사<br>②발굴 해외 수입업체와의 거래교신 지원(2개월) | 33만원 (3~5개사) | - 수수료의 100% 지원 (1개사당 100만원한도) |
| | 맞춤형 시장조사 | 수요동향,수입동향·수입관세율, 경쟁동향, 수출동향, 소매가격동향·유통구조, 품질인증제도, 생산동향, 기타 등 조사 | 항목당 수수료 16.5만원 | |
| 해외 비지니스 출장 지원 | 해외비지니스 출장지원 | KOTRA 출장지원이 가능한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상담주선 등 출장 업무 지원(일반서비스) | 수수료 55만원~77만원 | - 수수료의 100% (연 2회) |
| | | 일반서비스+통역 및 차량지원 (프리미엄 서비스) | 수수료 110만원~154만원 | |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KOTRA 제주사무소 | | 수출기업 |
|---|---|---|---|---|
| ·기본계획 수립<br>·사업평가, 정산 및 환류 | ⇨ | ·참가업체 모집<br>·KOTRA 본사 및 무역관 연계 사업추진<br>·사후 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 | ⇨ | ·사업 참가, 결과보고<br>·사업성과 설문참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및 해외비지니스 출장 지원 | 15 | 15 | 15 | - | -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조건형 주무관 (☏ 064-710-2627)

# 5-23.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등 참가경비 지원

## ▣ 사업목적

◦ 수출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규모의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수출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해외바이어와 상담, 계약 등을 통해 해외 시장 개척 판로 조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제주시 경제일자리과)
◦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 국내 왕복 항공요금 실비 지원(1사·2인 기준)
◦ 재원구분 : 지방비
◦ 사업 추진절차

| 제주시/서귀포시 | ⇨ | 수출기업 | ⇨ | 제주시 | ⇨ |
|---|---|---|---|---|---|
| ·지원 계획 공고 | | ·참가 신청 | | ·전시회 확인 및 선정 | |

| 수출기업 | ⇨ | 수출 중소기업 | ⇨ | 제주시 |
|---|---|---|---|---|
| ·전시회 참가 | | ·참가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항공료 지원 |

## ▣ 예산현황(중소기업지원 총액 기준)

<일반>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국내개최 국제무역전시회 참가지원 | 4 | 4 | 4 | 0 | - |

* 사업담당자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문소영 주무관 (☏ 064-728-2803)

# 5-24.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EMS)비용 지원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 측의 상품 샘플 요구시 발생하는 국제특송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제주시 경제일자리과)
◦ 지원대상 : 관내에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 지원내용 :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비용 지원
  - 제주시 : 협약 참가업체에 EMS 우편요금(93%) 지원
  - 우정청 : 협약 참가업체에 일괄요금제(7% 할인) 적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연 2,000천원 이내
◦ 지원품목 : 수출상품 샘플(별도의 통관 등의 절차가 필요없는 가공품)
◦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재원구분 : 지방비
◦ 사업 추진절차

| 제주시 | ⇨ | 수출기업 | ⇨ | 제주시 | ⇨ |
|---|---|---|---|---|---|
| ·사업 공고 | | ·지원 신청 |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

| 제주시 | ⇨ | 수출 중소기업 | ⇨ | 제주시 |
|---|---|---|---|---|
| ·우정청 통보 | | ·우체국 이용요금 납부 | | ·보조금 정산 |

## ▣ 예산현황(중소기업지원 총액 기준)

<일반>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상품 국제특송비 지원 | 25 | 25 | 25 | 0 | - |

* 사업담당자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문소영 주무관 (☏ 064-728-2803)

# 5-25.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 ▣ 사업목적

◦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수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 지원내용 :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업체당 최대 1,500천원 범위 내)
◦ 재원구분 : 지방비
◦ 사업 추진절차

| 수출업체↔센터 | ⇨ | 센터 | ⇨ | 센터 | ⇨ |
|---|---|---|---|---|---|
| ·신청 및 접수 | | ·지원자격 검토 | | ·검사시행 | |

| 센터→수출업체 | ⇨ | 수출업체→센터 | ⇨ | 센터→수출업체 |
|---|---|---|---|---|
| ·성분분석표 발급 | | ·수출증빙서 제출 | | ·검사비 지원 |

## ▣ 예산현황(중소기업지원 총액 기준)

<일반>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 20 | 20 | 18 | △2 | △10 |

* 사업담당자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문소영 주무관 (☏ 064-728-2803)

# 5-26.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 사업목적

◦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 및 제품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홍보 수준의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에 기여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JTP)
◦ 지원대상 : 관내에 본사가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 지원내용 : 수출상품 소개 등 홍보물 제작 지원(업체당 최대 2,000천원 범위 내)
◦ 재원구분 : 지방비
◦ 사업 추진절차

| 제주시 | | JTP(업무대행기관) | | 제주시 |
|---|---|---|---|---|
| ·지원계획 수립<br>·지원사업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 | ·지원사업 공고 및 모집<br>·지원업체 심사 및 선정<br>·대상기업 협약체결<br>·외국어 홍보물 제작 | ⇨ | ·사업결과 분석<br>·사업비 정산검사 |

## ▣ 예산현황(중소기업지원 총액 기준)

<일반>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중소기업 외국어 홍보물 제작지원 | 20 | 20 | 18 | △2 | △10 |

* 사업담당자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문소영 주무관 (☏ 064-728-2803)

# 5-27.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EMS)비용 지원

## ▣ 사업목적

◦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협의 과정 중 해외 바이어측의 상품 샘플 요구 시 발생하는 국제특송비용을 지원하여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지원대상 : 관내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 지원내용 : 수출상품 샘플 발송에 따른 국제특송비용 지원
  - 행정시 : 협약 참가업체에 대한 EMS 우편요금(93~95%) 지원
  - 우정청 : 협약 참가업체에 대한 일괄요금제(5~7%할인) 적용
◦ 지원한도 : 업체당 연 1,800천원 이내
◦ 지원품목 : 수출상품 샘플(별도의 통관 등의 절차가 필요없는 가공품)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017년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업체가 우편요금 납부
◦ 사업 추진절차

| 수출기업 | ⇨ | 서귀포시 | ⇨ | 서귀포시 | ⇨ |
|---|---|---|---|---|---|
| 분기별 지원신청 |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교부 | | 우정청 통보 | |

| 수출업체 | ⇨ | 수출기업→서귀포시 | ⇨ | 서귀포시 |
|---|---|---|---|---|
| 분기별사업진행 | | 분기별 사업완료 | | 보조금 분기별 정산 |

## ▣ 예산현황

<일반>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상품 샘플 국제특송(EMS)비용 지원 | 7 | 8 | 7 | △1 | △12.5 |

* 사업담당자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강아름 주무관 (☏ 064-760-2815)

# 5-28. 수출기업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 ▣ 사업목적

◦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절차이행에 필요한 영양성분 분석검사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수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 지원대상 : 관내 공장(제조업)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연 1,25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수출식품 영양성분분석 검사수수료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수출업체↔센터 | ⇨ | 센터 | ⇨ | 센터 | ⇨ |
|---|---|---|---|---|---|
| 신청 및 접수 | | 지원자격 검토 | | 검사 시행 | |

| 센터→수출업체 | ⇨ | 수출업체→센터 | ⇨ | 센터→수출업체 |
|---|---|---|---|---|
| 성분분석표 발급 | | 수출증빙서 제출 | | 검사비 지원 |

## ▣ 예산현황

<일반>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수출 농수산식품 영양성분 분석 검사비 지원 | 7 | 7 | 5 | △2 | △28.5 |

* 사업담당자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강아름 주무관(☏ 064-760-2815)

## 5-29. 국제 자매교류도시 및 해외무역활동비 지원

### ▣ 사업목적

◦ 해외 자매교류도시에 있는 바이어의 사업소재지를 직접 방문하고 상담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출 상담기회 마련으로 수출기회 촉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 지원대상 : 서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희망)업체
◦ 지원내용 : 항공료 및 바이어 항공료(100%), 카달로그(100%), 통역료(50%) (1사당 2인·1,575천원 범위 내)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공고 | ⇨ | 참가신청(수시) | ⇨ |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교부 | ⇨ |
|---|---|---|---|---|---|
| 서귀포시 | | 수출기업 | | 서귀포시 | |

| 사업시행 | ⇨ |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 정산검사 |
|---|---|---|---|---|
| 수출기업 | | 수출기업 | | 서귀포시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국제자매교류도시 및 해외 무역활동비 지원사업 | 5 | 7 | 6 | △1 | △14 |

* 사업담당자 :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강아름 주무관(☏ 064-760-2815)

# 6.
# 판로분야

# 6 판 로 분 야

## 6-1.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 ▣ 사업목적

◦ 트렌드 변화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제주 중소기업의 디자인 마케팅을 통한 국내외 판로 지원

◦ 제주의 청정 이미지와 바이어 요구에 맞는 디자인 개발 등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사업(보조금 90%, 민간자부담 10%) *공모사업

* 지원업체는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VAT는 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1. 본사와 공장을 도내에 보유하여 도내에서 생산하는 중소제조업체
2. 도내 수출업체 및 수출단체

◦ 지원내용 : BI, CI, 제품 포장, 카달로그 디자인 개발

◦ 추진절차

| | | | | | |
|---|---|---|---|---|---|
| **지원신청 (접수)** | ⇒ | **심사.평가 (지원 대상 선정)** | ⇒ | **디자인개발 협약 체결** | ⇒ |
| (중소기업→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업체,디자인회사) | |
| **디자인개발(진행)** | ⇒ | **개발 결과 평가 (통보)** | ⇒ | **사업 정산** | |
| (중소기업,디자인회사) |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 120 | 120 | 135 | 15 | 12.5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현숙 주무관 (☏ 064-710-2527)

## 6-2.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 지원

### ▣ 사업목적

◦ 단순 홍보와 판촉에 치중하는 단편적 마케팅 기법에서 벗어나 제주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및 소비자 공감대를 보다 설득력 있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마케팅 지원

◦ 구체화된 스토리텔링 마케팅 방안을 지속 발전시킴으로써 마케팅 경쟁력 강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2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사업(보조금 90%, 민간자부담 10%) *공모사업

* 지원업체는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VAT는 사업비에서 제외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체 5개 업체 내외

◦ 사업내용 : 제품 스토리텔링 개발 및 방송광고물 제작 지원

| | |
|---|---|
| 스토리텔링 개발 | 콘텐츠 수집, 발굴, 분석 후 과제 도출 및 스토리 설계 |
| 방송광고물 제작 | 스토리텔링 개발에 대한 방송용 광고 제작 |

◦ 추진절차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평가)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안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
| 제주자치도 | | (중소기업) | | 제주자치도 | | (중소기업) | | 제주자치도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제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개발지원 | 150 | 150 | 135 | △15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현숙 주무관 (☏ 064-710-2527)

## 6-3. 제주제품 국내 판로지원(홈쇼핑, 박람회, 상담회 등)

### ▣ 사업목적

◦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기반은 취약하나 상품성은 우수한 제주제품의 판로 개척 및 마케팅 경쟁력 향상 지원

◦ 시장 변화, 기업 수요에 따른 핵심사업 확대로 기업 매출, 판로 확대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

◦ 지원형태 : 사업비 지원 또는 참여자격 제공

◦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사업 : 홈쇼핑,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상담회 참가지원 등

| 사업명 | 내 용 |
|---|---|
| 홈쇼핑 진출지원 | · 공영홈쇼핑(홈&쇼핑, 아임쇼핑) 방송 지원 |
|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 | · 국내 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 (200만원 한도)<br>·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참가 지원 |
| 유통상담회 개최 | · 온&오프라인 채널 구매·입점 상담회(연2회 내외) |

◦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경제통상진흥원 | ⇨ | 참여업체 |
|---|---|---|---|---|
|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 |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br>·사업 진행상황 점검 | | ·결과 보고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국내 판로지원 사업 | 320 | 320 | 358 | 38 | 11.8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현숙 주무관 (☏ 064-710-2527)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허지훈 과장 (☏ 064-751-3309)

## 6-4.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 이제주몰 운영 및 홍보마케팅

###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공동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시판매장으로서 모바일 및 온라인 쇼핑시장 급성장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는 마케팅 기획을 통한 제주제품 판로 확대 및 매출 증대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지원형태 : 출연사업
◦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전시판매장 현황

| 구 분 | | 소재지 | 개설 | 입점기업 | 비고 |
|---|---|---|---|---|---|
|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 본점 | 진흥원 로비 | '08.3 | 195개사 | |
| | ICC점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로비 | '10.6 | 131개사 | |
| 이제주몰 | | https://mall.ejeju.net | '03.5 | 150개사 | |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제품
◦ 지원내용 : 공동 홍보마케팅(채널별 프로모션, 물류비,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 등)
◦ 입점신청 :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수시 신청(온라인 입점은 전시판매장 입점 후 가능)
※ 경제통상진흥원 직영 도외 제주제품전용매장 입점도 전시판매장 입점 후 가능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및 온라인몰 운영 | 300 | 530 | 530 | 0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현숙 주무관 (☏ 064-710-2527)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강형석 과장 (☏ 064-751-2505)

## 6-5.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 및 홍보마케팅

### ▣ 사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상표「제주마씸」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마케팅을 통하여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판매촉진 기여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
◦ 지원형태 :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간접 지원
◦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공동상표 제주마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공동상표 제주마씸 상표권 부여 : 참여기업 모집(상·하반기, 연2회)
  · 참여기업 역량강화 : 품질관리비 사후지원 등
  · 공동상표 제주마씸 홍보마케팅 : 매체별 브랜드 마케팅 등
◦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
| · 제주마씸 육성계획 수립<br>· 사업비 교부 | ⇨ | · 세부추진 계획 수립<br>· 사업 집행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마씸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지원 | 100 | 100 | 90 | △10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현숙 주무관 (☏ 064-710-2527)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김경환 과장 (☏ 064-751-2507)

## 6-6.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 ▣ 사업목적

◦ 제주 전통 공예에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를 접목한 우수 공예품 발굴 지원
※ 지역 예선 참가 수상작에 한하여 대한민국 공예품 공모전 참가 자격이 주어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월 ~ 12월
◦ 지원형태 : 민간위탁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명품공예인협동조합
◦ 지원대상 : 도내 공예인(개인, 사업자, 학생)
◦ 지원내용 : 지방 및 전국 공예품 대전 참가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예품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품개발비 지원
- 본선 참가에 따른 상품 운반비, 항공료 등 경비 지원
◦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수행주관 |
|---|---|---|
| · 기본 계획 수립<br>· 지도.감독 | ⇨ | · 지역예선 개최 및 전국공예품대전 참가 및 결과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지원 | 20 | 20 | 20 | 0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현숙 주무관 (☏ 064-710-2527)

## 6-7.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 ▣ 사업목적

◦ 도내·외 반·출입 물동량의 집적화·대형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지원대상 : 제주 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2018년 기준 90개 업체)
◦ 지원내용
  - 공동물류센터 보관료(상온, 냉장·동), 상·하차료
    ※ 보관료는 1개월 이내 무료, 초과시 이용기업 부담
  - 도내 순환 운송료는 구간, 거리에 따라 일부 지원
  - 도외 지역 수시 수·배송 차량운행(운송료는 이용기업 부담)
◦ 재원구분 : 자체재원(100%)
◦ 사업 추진절차

| 중소기업(도내) |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 공동물류 위탁업체 |
|---|---|---|---|---|
| · 공동물류센터 이용 신청 | ⇨ | · 공동물류센터 이용신청에 따른 심사 | ⇨ | · 이용기업 화물 공동 보관 및 수·배송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사업 | 250 | 250 | 300 | 50 | 20% |

* 사업담당자 : 통상물류과 조연주 주무관 (☏ 064-710-306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물류관리팀 김신범 (☏ 064-780-3869)

## 6-8. 제주화장품 산업육성 및 제품생산 활성화사업

### ▣ 사업목적

◦ 화장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내 화장품기업의 맞춤형 Made In Jeju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수행 : (재)제주테크노파크(JTP)
◦ 지원대상 : 도내 화장품기업
◦ 지원내용 : JTP화장품공장을 통한 화장품 제형개발 및 생산지원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재)제주테크노파크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 | · 도내 화장품기업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 | ⇨ | · 사업환류 및 평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화장품 생산지원 및 판로개척 활성화사업 | 300 | 300 | 350 | 50 | 16.7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양석전 주무관 (☏ 064-710-2603)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김봉석 팀장 (☏ 064-720-2333)

## 6-9.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소득 수준의 향상 및 고령화 사회 대비 등의 이유로 웰니스, 항노화 및 로하스(LOHAS)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청정자연과 8,000여종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음

◦ 이에, 제주가 항노화 및 로하스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를 대표하는 바이오 분야(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의 전시회 개최 지원 필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2015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테크노파크(JTP)

◦ 지원대상

-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사업화 관련 기업(기관)

◦ 지원내용

- 바이오 기업(제품)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운영 사업화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JTP |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 수립<br>·JTP에 사업비 교부 | |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br>·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 ·사업환류 및 평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결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바이오(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등) 박람회 및 학술포럼 지원사업 | 200 | 240 | 316 | △76 | △32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양석전 주무관 (☏ 064-710-2603)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오정협 연구원(☏ 064-720-3054)

# 6-10. 중소기업 산업디자인(로고 및 브랜드 등) 무료개발 지원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이미지 및 제품의 홍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각(로고, 심볼, 브랜드 등)디자인 및 제품 포장디자인 등을 무료로 개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에 기여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0년~계속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제주시 지역경제과)
◦ 지원대상 : 관내 농·수·축산물을 생산·제조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시각(로고, 심볼, 브랜드 등)디자인 및 제품포장 디자인
◦ 운영인력 : 전문디자이너 1명
◦ 사업 추진절차

| 제주시↔중소기업 | | 제주시 | | 중소기업 | | 제주시 |
|---|---|---|---|---|---|---|
| ·신청서 작성 및 상담 | ⇨ | ·디자인 개발 | ⇨ | ·시안검토 및 수정 | ⇨ | ·시안교부 |

※ 처리기간 : 30일이내(신청내용과 접수건에 따라 조정됨)

## ▣ 예산현황(중소기업지원 총액 기준)

<일반>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산업디자인(로고 및 브랜드) 무료개발 지원 | 비예산 | | | | - |

* 사업담당자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한용희 주무관 (☏ 064-728-2805)

# 7.
# 동반성장분야

# 7 동 반 성 장 분 야

## 7-1.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지원

### ▣ 사업목적

◦ 장애경제인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 경영애로사항 등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역량 강화 및 경영안정화 제고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2007년~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수행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온라인쇼핑몰 창업강화, 홍보비지원, 경영애로지원, 장애인 CEO 경영혁신 연수 및 세미나 강좌,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수행기관 | | 제주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배부 | ⇨ | · 사업비 신청<br>· 사업공고<br>· 사업완료 정산서 제출 | ⇨ | · 사업 결과분석<br>· 사업비 정산검사 |

### ▣ 예산현황

<일반>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A) | '18예산 (B)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장애인기업 경쟁력강화 및 경영애로지원 | 70 | 70 | 89 | 19 | 27.1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영희 주무관 (☏ 064-710-2522)

## 7-2.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 ▣ 사업목적

◦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2010년~계속/6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도내소재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 여성기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여성기업CEO 워크숍 및 연수지원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수행기관 | | 제주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배부 | ⇨ |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br>· 대상기업 선정<br>· 사업비 지원<br>· 사업비 정산서 제출 | ⇨ | · 사업 결과분석<br>· 사업비 정산검사 |

### ▣ 예산현황

<일반>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A) | '18예산 (B)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지원 | 50 | 50 | 45 | △5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영희 주무관 (☏ 064-710-2522)

## 7-3.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 ▣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 온라인판매장(쇼핑몰)을 온라인 마케팅에 연계하여 장애인기업의 권익 보호화 비장애인기업과의 소통의 도구로 활용, 매출 증대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도내 소재 장애인기업
◦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 온라인 판매장 유지보수, 제품 운송비 보조, 온라인 주문 배송·처리 Web관리 인건비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수행기관 | | 제주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배부 | ⇨ | · 사업대상자 신청·접수<br>· 대상기업 선정<br>· 사업비 지원<br>· 사업비 정산서 제출 | ⇨ | · 사업 결과분석<br>· 사업비 정산검사 |

### ▣ 예산현황

<일반 >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A) | '18예산 (B)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장애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및 장애인 기업 온라인 판매장 운영 | 15 | 25 | 22.5 | △2.5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영희 주무관 (☏ 064-710-2622)

# 7-4. 제주장애인기업 물품판매장 쇼핑몰 홍보사업

## ▣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 판로 활성화 위하여 구축한 장애인기업물품판매장(www.ablejeju.or.kr) 홍보를 통한 장애인기업 경쟁력 제고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물품판매장 홍보물 제작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수행기관 | | 제주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배부 | ⇨ | · 홍보물제작업체 선정<br>· 사업착수 및 제작완료<br>· 사업비 지원<br>· 사업비 정산서 제출 | ⇨ | · 사업 결과분석<br>· 사업비 정산검사 |

## ▣ 예산현황

<일반 >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A) | '18예산 (B)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장애인기업물품 판매장 쇼핑몰홍보사업 | 10 | 10 | 1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영희 주무관 (☏ 064-710-2522)

## 7-5. 제주여성 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 ▣ 사업목적

◦ 제주여성 기업 CEO 포럼 및 경영연수를 통해 여성 기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경쟁력 강화 등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내용 : 제주 여성CEO 포럼 개최, 도외 여성기업인 연수 참가
◦ 사업 추진절차

| 제주도 | | 수행기관 | | 제주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배부 | ⇨ |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착수<br>· 사업비 지원<br>· 사업비 정산서 제출 | ⇨ | · 사업 결과분석<br>· 사업비 정산검사 |

### ▣ 예산현황

<일반 >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A) | '18예산 (B)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여성 CEO 경영프로그램 지원 | 15 | 40 | 36 | △4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영희 주무관 (☏ 064-710-2522)

## 7-6.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 ▣ 사업목적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에 관심있는 도내 기업, 단체 등
◦ 지원내용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요건 및 사회적기업전환을 위한 인증요건상담 등 컨설팅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컨설팅 지원계획수립 | ⇨ | · 사업수행<br>.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 ⇨ | · 보조금 정산 및 환류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 | 30 | 30 | 27 | △3 | △10 |

* 사업담당자 : 경제정책과 이순복 주무관 (☏ 064-710-2553)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김수철 주무관 (☏ 064-728-2812)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박은영 주무관 (☏ 064-760-2613)

# 8.
# 지식서비스분야

# 8 지 식 서 비 스 분 야

## 8-1. 벤처기업 육성사업

### ▣ 사업목적

◦ 고용창출과 성장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벤처기업의 기술·정보·네트워크 연계로 글로벌 유망 벤처기업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제주지역 벤처기업

◦ 지원내용

- 벤처기업 창의융합 R&BD 및 벤처인증, 해외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 기업의 요구와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협의회 운영

◦ 사 업 비 : 270백만원(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도 | | 대행기관 | | 대행기관/도 |
|---|---|---|---|---|
| ·기본계획 수립<br>·사업비 교부(1월 중) | ⇨ | ·모집공고(2월 중)<br>·사업대상자 선정<br>·사업시행 | ⇨ | ·사업 성과분석<br>·사업비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벤처기업 육성사업 | 300 | 300 | 270 | △30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현정 주무관 (☏ 064-710-4182)

## 8-2. 지역SW기업 성장지원

### ▣ 사업목적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우수기업 도외시장 진입과 수출 주도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 수출 주도형 IT/SW 선도기업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계속/14년 (매년 사업비 확보 추진)
※ 2019년도 사업비 : 358백만원(국비 179, 지방비 179)
◦ 지원형태 : 공기관위탁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
◦ 지원대상 : 제주지역 ICT/SW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역 맞춤형 중소 IT/SW기업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시회 참가 지원, 애로해소 및 네트워크 구축 활동 지원 등
◦ 재원구분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재)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사업비 교부<br>·사업관리 | | ·세부사업 수행 | |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지역SW성장 지원사업 | 500 | 448 | 358 | 90 | △20 |

* 사업담당자 : 디지털융합과 김병철 주무관 (☏ 064-710-2572)

## 8-3. 제주지역 ICT 신기술개발 지원

### ▣ 사업목적

◦ 지역 ICT 분야 우수 아이템 보유기업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 성장 기반 마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계속/14년 (매년 사업비 확보 추진)
※ 2019년도 사업비 : 90백만원(지방비 90)
◦ 지원형태 : 공기관위탁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
◦ 지원대상 : 제주지역 ICT/SW 창업초기 기업
◦ 지원내용 : 지역 ICT분야 창업초기 유망기업 기술개발 및 상품화 지원
◦ 재원구분 : 지방비 100%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재)제주테크노파크<br>(디지털융합센터)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사업비 교부<br>·사업관리 | | ·세부사업 수행 | |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br>(A) | '19예산<br>(B) | 증 감<br>(B-A) | % |
|---|---|---|---|---|---|
| 제주지역 ICT 신기술 개발 지원 | 100 | 100 | 90 | 10 | △10 |

* 사업담당자 : 디지털융합과 오민영 주무관 (☏ 064-710-2573)

## 8-4. IT제품 Step-up 지원

### ▣ 사업목적

◦ 지역 IT 기업제품 아이디어 발굴→R&D→상용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별 핵심 대표제품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6년~계속/4년 (매년 사업비 확보 추진)
※ 2019년도 사업비 : 90백만원(지방비 90)
◦ 지원형태 : 공기관위탁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
◦ 지원대상 : 제주지역 ICT/SW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품단계별 맞춤형 지원(R&D, 상용화, 마케팅, 컨설팅 등)
◦ 재원구분 : 지방비 100%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재)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사업비 교부<br>·사업관리 | | ·세부사업 수행 | |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 IT제품 Step-up 지원 | 100 | 100 | 90 | 10 | △ 10 |

* 사업담당자 : 디지털융합과 오민영 주무관 (☏ 064-710-2573)

## 8-5.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활성화사업

### ▣ 사업목적

◦ 제주화장품 인증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산 원료 및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수행 : (재)제주테크노파크(JTP)
◦ 지원대상 : 도내 화장품기업
◦ 지원내용 : 제주화장품 인증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홍보 지원 등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재)제주테크노파크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 | ⇨ |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운영 및 홍보 | ⇨ | · 사업환류 및 평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화장품 생산지원 및 판로개척 활성화사업 | 1,000 | 1,000 | 1,000 | - | - |

* 사업담당자 : 미래전략과 양석전 주무관 (☏ 064-710-2603)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김봉석 팀장 (☏ 064-720-2333)

## 8-6. 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도 운영 및 홍보마케팅

### ▣ 사업목적

◦ JQ인증* 제품과 기업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을 통해 제주제품의 소비촉진

*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주에서 생산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품질인증제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7년~계속

◦ 위탁기관 : 도 경제통상진흥원(위탁기관)

◦ 심사기준 : 원료 및 제품생산에서 유통 전 과정을 반영한 평가기준

- 품질평가기준 : 안전성, 신뢰성, 품질일관성
- 품질관리기준 : 경영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 지원내용 : JQ인증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 JQ인증 홍보(TV·라디오, 공항·버스, 극장, SNS, 온라인몰 등)
- 도내 판촉행사 개최, 도외 박람회·판촉행사 참가 지원(부스비 등)
- 품질개선 시설개선비 지원('19년 신규) : 선정기준 마련 후 실시
- 관세청 'FTA 간편인정제' 도입 : '18.12월말 고시(예정)
- 한국인삼공사 온라인몰(정관장몰) 입점 지원(인증기업 희망시)

◦ 재원구분 : 도비

◦ 사업 추진절차

| 경제통상진흥원(접수) | ⇨ | 경제통상진흥원(심사) | ⇨ | 도·경제통상진흥원(인증) |
|---|---|---|---|---|
| · 접수공고(매분기별) | | · 서류심사, 현장평가 | | · 인증심의위원회 심의<br>· 적합시 인증서 발급 |

※ 접수 : email 또는 방문(경제통상진흥원 1층 사무처)
온라인 접수(JQ홈페이지(www.jq.or.kr))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우수제품 품질인증(JQ)제도 운영 | 1,500 | 1,000 | 1,100 | 100 | 10 |

* 사업담당자 : 경제정책과 김현주 주무관 (☏ 064-710-2512)

# 9.
# 소상공인분야

# 9 소 상 공 인 분 야

## 9-1.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노령·폐업 대비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생활안정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2018 ~ 계속/2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수행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지원대상 : 2019.1.1. 이후 신규가입자 중 제주 소재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매월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추가 적립 (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12회)
◦ 사업 추진절차

| 사업비 지급 | ⇨ | 공제가입 신청 | ⇨ | 공제가입 업무처리 | ⇨ | 가입실적 보고 (분기별) |
|---|---|---|---|---|---|---|
| 도 → 중소기업중앙회 | | 소상공인 → 취급은행 | | 중소기업중앙회 | | 중소기업중앙회 → 도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 200 | 20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호진 주무관 (☏ 064-710-4183)

## 9-2.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 ▣ 사업목적

◦ 도내 사업체의 90%를 점유하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2015 ~ 계속/5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수행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도내 제조업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영컨설팅, 경영안정화 교육, 환경개선사업 및 마케팅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 | | 사업공고 | | 사업추진 | | 사업정산, 성과분석 |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제주특별자치도<br>경제통상진흥원 | ⇨ | 경제통상진흥원<br>- 사업접수 및 현장실사<br>- 평가 및 사업자 선정<br>- 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지원 | ⇨ | 제주특별자치도<br>경제통상진흥원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 200 | 200 | 180 | △20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요숙 주무관 (☏ 064-710-2637)

## 9-3.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지원

### ▣ 사업목적

◦ 도내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를 통한 판로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소상공인 경영의욕 고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2016 ~ 계속/4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수행 :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내용 : 우수상품 전시·판매, 제주장터 운영, 체험부스·문화공연 운영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대행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교부 | ⇨ | · 박람회 참가 신청·접수<br>(소상공인 우수상품 전시·판매, 체험 행사, 문화공연, 프리마켓 등)<br>· 홍보 추진 및 유관기관 협조<br>·박람회 개최 결과 분석 | ⇨ | · 사업 성과분석<br>· 사업비 정산검사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소상공인 우수상품 박람회 지원 | 130 | 130 | 135 | 5 | 3.8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현숙 주무관 (☏ 064-710-2527)

## 9-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 사업목적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시설개선,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쇼핑환경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시행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수행 : 행정시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 지원내용 : 17개 시장 41개 사업

- 노후 전가·소방 보수공사, 아케이드 시설, 장옥 보수, 화장실 개보수, 상하수도 시설 등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 | 행정시 |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br>- 예산 신청 | ⇨ | ·최종선정협의회 및 예산 신청(기재부)<br>.국회 의결 후 예산 확정 | ⇨ | ·사업추진 및 결과 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6,634 | 6,240 | 9,067 | 2,827 | 45.3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영길 주무관 (☏ 064-710-3074)

## 9-5.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 ▣ 사업목적

◦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추고 외국인이 꼭 가 봐야할 시장, 문화체험·관광이 어우러진 시장,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을 지닌 시장 육성
※ 사업시행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7월 ~ 2020년 6월
◦ 지원형태 : 공기관 대행(행정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업수행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 지원내용 : 지역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청년몰 등
- 1CT융합, 웹사이트 구축, 기반시설, 통합브랜드, 이벤트 행사 등
◦ 사업추진 절차

|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특성화시장육성사업단 |
|---|---|---|---|---|
| ·특성화시장육성사업 신청 접수 및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 ⇨ | ·선정협의회 및 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br>·공단 사업총괄 대행 | ⇨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 4,500 | 4,140 | 19년 공모 | 19년 공모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영길 주무관 (☏ 064-710-3074)

## 9-6.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 ▣ 사업목적

◦ 전통시장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매출증대 및 상권 활성화

※ 사업시행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19년 12월
◦ 지원형태 : 직접 수행
◦ 사업수행 : 행정시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 및 확충(복층화), 주차환경 개선 등
◦ 사업추진 절차

|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 | 행정시 |
|---|---|---|---|---|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실태조사<br>- 지원 신청 | ⇨ | ·최종선정협의회 및 예산확정 (중기부)<br>.국비 교부 | ⇨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 10,106 | - | 19년 공모 | 19년 공모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영길 주무관 (☏ 064-710-3074)

## 9-7.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지원

### ▣ 사업목적

◦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전통시장 홍보·마케팅 강화로 전통시장 방문고객 및 매출실적 증대

※ 사업시행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수행 :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 지원내용

-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 홍보·마케팅 활동비
- 여름성수기, 추석맞이 경품 이벤트 진행
-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비 지원 외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도상인연합회(보조사업자) | | 사업수행자 |
|---|---|---|---|---|
|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기본 운영방침 수립<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 ·전통시장 SNS 홍보마케팅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br>·사업수행자 선정 | ⇨ | ·전통시장 SNS 홍보 마케팅사업시행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전통시장 SNS 홍보 마케팅 지원 | 40 | 60 | 40 | △20 | △33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9-8.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

### ▣ 사업목적

◦ 쇼핑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주문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마케팅으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수행 :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 지원내용
  - 온라인쇼핑몰 운영비 지원
  -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도상인연합회(보조사업자)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운영 기본방침 수립<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 |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효과분석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전통시장 통합콜센터 쇼핑몰 운영 | 40 | 40 | 50 | 10 | 25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9-9.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 ▣ 사업목적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전통시장·골목상권의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 사업시행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조례 제50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수행 : 전국상인연합회제주지회
◦ 유통범위 : 28개 전통시장·상점가 및 동네슈퍼
◦ 취급 금융기관 : 제주은행 도내 전 지점(35개 점포)
◦ 지원내용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마케팅 외
* (인쇄비, 인지세, 봉투제작, 신용카드수수료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도상인연합회(보조사업자) | | 사업수행자 |
|---|---|---|---|---|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계획 수립<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 ·제주사랑상품권 조제 의뢰(조폐공사) 등 상품권 발행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 ⇨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시행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홍보 | 545 | 340 | 34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이가현 주무관 (☏ 064-710-2523)

# 9-10.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 ▣ 사업목적

◦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 등에게 제주 전통문화 위주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 및 방문 유도

※ 사업시행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조례 제50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수행 :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 지원내용

- 전통시장 순회 문화공연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국악협회제주지회 (보조사업자) | ⇨ | 국악협회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 |
|---|---|---|---|---|
| ·전통시장 문화공연 사업 계획 수립<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전통시장 순회 문화공연 시행 |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 16 | 16 | 16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9-11.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사업정리, 폐업, 사업재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2018 ~ 계속/2년)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수행 : 제주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창업, 사업정리, 폐업, 사업재기 등 종합컨설팅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대행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교부 | ⇨ | · 컨설팅 신청·접수<br>· 컨설턴트 매칭 등 컨설팅 시행<br>· 컨설팅 결과 분석 | ⇨ | · 사업 성과분석<br>· 사업비 정산검사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소상공인 상시-종합컨설팅 지원 | 30 | 60 | 30 | 10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요숙 주무관 (☏ 064-710-2637)

## 9-12.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홍보

### ▣ 사업목적

◦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여행패턴이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렌터카를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내비게이션 및 관광정보지 광고를 통해 도내 특화거리 홍보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2012 ~ 계속/8년)
◦ 광고시행 : 도내 광고업체
◦ 지원대상 : 도내 특화거리 9개소
◦ 지원내용
  - 도내 렌트카 내비게이션 인트로(부팅)광고 및 팝업광고, 관광정보지(2종) 지면광고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광고업체 | | 제주특별자치도 |
|---|---|---|---|---|
|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홍보사업 추진계획 수립 | ⇨ | ·특화거리 광고 시행 | ⇨ | ·사업추진사항 및 실적 점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특화거리 내비게이션 홍보 | 20 | 20 | 2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9-1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 ▣ 사업목적

◦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정기적인 문화공연을 지원함으로써 상권 활력 회복을 통한 골목상권 자립기반 마련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0월

◦ 사업수행 : 자체시행

◦ 공연장소 : 서귀포이중섭 거리, 시청대학로상점가 ※ 거리 공연 가능 상권

◦ 지원내용 : 대중가요 · 클래식 연주,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장르 공연(30회)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추진계획 수립 | ⇨ | ·문화공연 시행 및 추진 사항 점검 | ⇨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문화공연 지원 | - | 50 | 76 | 26 | 52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9-14.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 ▣ 사업목적

◦ 대형마트와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판매업 등에 대응하여 골목상권 이용 시 높은 포인트 적립과 우대혜택을 제공하는「제주통카드」의 포인트 적립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활성화 제고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2013 ~ 계속/7년)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수행 : 제주은행
◦ 지원대상 : 도내 골목상권
◦ 지원내용 : 골목상권 우대 제주通(통)카드 포인트 적립비용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포인트 적립비용 일부 부담(0.5% ~ 0.85%)
- 제주은행 : 포인트 적립 일부 부담(0.35~0.85%), 할인혜택 제공 및 프로모션, 홍보 지원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은행 | | 제주특별자치도 |
|---|---|---|---|---|
|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 ·사업시행<br>·통카드 홍보 및 프로모션<br>·정산 및 성과분석 | ⇨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 430 | 480 | 304 | △176 | △36.6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송상훈 주무관 (☏ 064-710-3076)

## 9-15.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 사업목적

◦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의식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급력이 큰 방송매체를 이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2012 ~ 계속/8년)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수행 : 지역민영방송사(KCTV, JIBS)
◦ 지원대상 : 도내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 지원방법 : 공모(정액지원)
◦ 지원내용
- 골목상권 우수경영사례 방송, 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방송 제작 등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역민영방송사 (KCTV, JIBS) | | 제주특별자치도 |
|---|---|---|---|---|
| ·추진계획 수립 및 공모<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 ·방송 프로그램 제작·송출 | ⇨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골목상권 홍보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 90 | 90 | 9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9-16.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 ▣ 사업목적

◦ 골목상권의 노후화된 영세점포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을 지원하여 골목상권의 자생력 확보 및 자립기반 마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2012 ~ 계속/8년)
◦ 지원형태 : 공기관대행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점포면적 165㎡이하 슈퍼, 세탁소, 음식점, 이·미용실, 떡집, 문구점, 목욕탕, 꽃집(총 43개소)* * 지원업종 추가 : 꽃집
※ 골목상권 내 가업승계 및 재창업 점포 포함
◦ 지원방법 : 희망점포 공모 → 서류평가→현장평가(전문가) → 지원점포 선정
◦ 지원내용
- 노후간판, 진열대, 바닥, 조명 등 시설개선비용 지원(점포별 7백만원 이내)
- 컨설팅 지원(경영진단, 상권분석, 고객관리, 인테리어 등 3회)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사업추진계획 수립<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 공모선정<br>·사업시행 | ⇨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 | 600 | 300 | 350 | 50 | 16.6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9-17.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 ▣ 사업목적

◦ 상권분석 및 경영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각종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 극대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2017 ~ 계속/3년)
◦ 지원형태 : 공기관대행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회
◦ 지원방법 : 공모
◦ 지원내용
  - 상권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상인회 역량강화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 ·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 상인회 공모선정<br>· 컨설턴트-상인회 매칭 및 사업시행 | ⇨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 | 50 | 50 | 45 | △5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9-18.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 ▣ 사업목적

◦ 대형마트, 대기업편의점 등의 진출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슈퍼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유통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2년~ 계속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사업수행 :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

◦ 지원대상 : 도내 골목슈퍼

◦ 지원내용

- 골목슈퍼용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운영 및 홍보마케팅, 공동배송서비스 지원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도 수퍼마켓조합(보조사업자) | | 제주특별자치도 |
|---|---|---|---|---|
| ·골목상권 자체브랜드상품 개발 및 공동물류 운영 계획 수립<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 ·골목슈퍼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서비스 | ⇨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유통 자체브랜드 상품 개발 및 유통구조 개선 지원 | 180 | 180 | 18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9-19.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 사업목적

◦ 특성화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상인회 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2012 ~ 계속/8년)
◦ 지원형태 : 공기관대행
◦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도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회
◦ 지원방법 : 공모 (보조율 90%)
◦ 지원내용
  - 주변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각종 홍보마케팅, 쇼핑환경 개선, 홍보물품 제작 등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사업계획 수립<br>·재정지원 및 추진사항 점검 | ⇨ |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 공모선정<br>·사업시행 | ⇨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240 | 250 | 320 | 70 | 28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효실 주무관 (☏ 064-710-3076)

# 9-20. 골목상권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 ▣ 사업목적

◦ 젊은 세대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조례 제12조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계속

◦ 지원형태 : 공기관대행

◦ 사업시행 주체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지원대상 : 도내 대학생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 지원내용

- 도내 대학생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 연계 ➜ 상권 홍보활동 실시
- 홍보활동 사례집 발간 및 우수사례 공유 등

◦ 사업추진 절차

| 지원신청 | | 지원대상자 선정 | | 홍보마케팅 활동 실시 |
|---|---|---|---|---|
| 대학생, 상인회→제주대 산학협력단<br>※ 지원신청서, 고유번호증 등 제출 | → | 제주대 산학협력단 | → | 활동팀(대학생, 상인회) |

| | 활동실적 발표 및 보고서 제출 | | 실적분석 및 평가 | | 정산 및 효과분석 |
|---|---|---|---|---|---|
| → | 활동팀→제주대산학협력단 | → | 도, 상권전문가,<br>제주대산학협력단 | → | 제주대산학협력단→도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골목상권 현장체험 아카데미 운영 | 30 | 30 | 27 | △3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아름 주무관 (☏ 064-710-3073)

# 10.
# 기타분야

# 10 기 타 분 야

## 10-1.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 ▣ 사업목적

◦ 제주이전 수도권 및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으로 초기 투자자금 부담 해소

◦ 기업이전 촉진을 통한 도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국비+ 도비)

◦ 사업시행 주체 : 지방투자기업 해당 기업체

◦ 지원대상 :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충족여건에 해당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등

◦ 지원내용 : 부지매입비의 40% 지원(중소기업 기준)

* 단, 이전前 부지면적의 5배이내

◦ 사업 추진절차

| 지방투자기업 | | 제주특별자치도 | | 산업통상자원부 |
|---|---|---|---|---|
|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 ⇨ | · 사업 타당성분석 및 보조금(국비) 지원 신청<br>. 보조금 교부(국비+지방비) | ⇨ | · 보조금 심의 결정 및 국비 교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지방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 1,636 | 1,700 | 1,400 | △300 | △17.6 |

* 사업담당자 : 투자유치과 오승배 주무관 (☏ 064-710-3372)

## 10-2. 도내 신·증설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 ▣ 사업목적

◦ 도내 기업 및 이전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으로 초기 투자자금 부담 해소

◦ 도내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도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국비+도비)

◦ 사업시행 주체 : 지방투자기업 해당 기업체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등,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 제외
- 신증설 투자사업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다만 **지식서비스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5억원 이상(중소기업 기준) 등

◦ 지원내용

| 기업분류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 대기업 | · 설비투자 금액의 11% 이내 | 기업당 최대 80억원 |
| 중견기업 | · 설비투자 금액의 19% 이내 | |
| **중소기업** | **· 설비투자 금액의 24% 이내** | |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2% 가산 지원

※ 근로환경개선시설(기숙사, 식당 등) 투자금액 : 건설투자·기계장비 구입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사업추진 절차

| 지방투자기업 | | 제주특별자치도 | | 산업통상자원부 |
|---|---|---|---|---|
| · 보조금 신청 | ⇨ | · 사업 타당성분석 및 보조금(국비)지원 신청<br>· 보조금 교부(국비+지방비) | ⇨ | · 보조금 심의 결정 및 국비 교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 6,572 | 7,000 | 2,741 | △4,259 | △60.8 |

* 사업담당자 : 투자유치과 오승배 주무관 (☏ 064-710-3372)

* 자세한 사항은 investkorea.co.kr(제주 투자지원제도 홈페이지) 참조

## 10-3. 중소기업 주간행사(미래전략포럼)

### ▣ 사업목적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거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의 주간으로 지정 운영함에 따라 제주중소 기업인들에게 지역경제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간 기업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행사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2008년 ~ 계속)
◦ 지원형태 : 민간경상 보조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제주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 중소기업 발전 성공사례 전문가 초청 특강, 제주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중소기업인 리더스 포럼 지원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교부 | ⇨ | · 세부사업계획 수립, 행사주관<br>· 주간행사 개최 및 사업정산 | ⇨ | · 사업정산 확인 및 평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 주간행사 및 미래전략 포럼 | 10 | 10 | 10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영희 주무관 (☏ 064-710-2522)

## 10-4.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 지원

### ▣ 사업목적

◦ 제주향토 강소기업을 제주경제를 선도할 혁신성과 기술력을 겸비한 강소기업으로 적극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2015 ~ 계속)
◦ 지원형태 : 대행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제주향토기업 20개사
◦ 지원내용
- '17, '18년 선정된 강소기업 자율프로그램 지원(10개사) : R&D 및 마케팅 지원
- 개방형 협업프로그램 지원(2팀) : 향토강소기업+협업기업 협업 프로젝트 지원(공동 R&D, 글로벌마케팅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테크노파크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교부<br>· 사업 공고 | ⇨ | · 향토강소기업(2~3년차) 자율프로그램 지원<br>· 개방형 협업프로그램 공모<br>- 매칭 수요조사 및 지원 대상자 평가&선정<br>- 공동 R&D, 마케팅 지원<br>· 사업추진결과 분석 등 | ⇨ | · 운영프로그램 지도.감독<br>· 사업비 정산 및 성과분석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 지원 | 1,950 | 1,850 | 1,635 | △215 | △11.6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영희 주무관 (☏ 064-710-2522)

## 10-5.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 사업목적

◦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2015 ~ 계속/4년)
◦ 지원형태 : 국가직접사업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업체 (‘16 ~ ’18년)
◦ 지원내용 : 4년 지원(선정업체)
  -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지원, R&D 지원, 지자체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등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역혁신기관 (제주테크노파크)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 공고<br>· 사업 협약 및 사업비 교부 | ⇨ | ·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br>·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br>· 자율프로그램 지원<br>· 사업 추진 및 결과 분석 | ⇨ | · 사업 지도감독<br>· 정산검사 및 성과분석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 180 | 180 | 140 | △40 | △22.2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영희 주무관 (☏ 064-710-2522)

# 10-6. 농공단지 입주기업 성장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지원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 마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2017년~계속/3년)
◦ 사 업 량 : 농공단지 입주업체 성장 발판마련 교육 및 교류회 1식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기업역량 강화(마케팅, 경영, 홍보)교육
  - 선진 산업단지 시찰 및 네트워크 교류
◦ 재원구분 : 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테크노파크 |
|---|---|---|
| . 업무협약 체결<br>. 보조금 교부<br>. 지도.감독 | ⇨ | . 사업 시행<br>. 사업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농공단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지원사업 | 15 | 15 | 15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문혁 주무관 (☏ 064-710-2633)

## 10-7.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 사업목적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2017년~계속/3년)
◦ 사 업 량 : 3개 농공단지(구좌·금능·대정)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노후시설개선(화장실, 오수관, 도로(인도), 사무실 누수, 배수지 등 보수보강)
◦ 재원구분 : 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사업수행기관 | | 제주특별자치도 |
|---|---|---|---|---|
| - 노후시설 개선<br>· 공사설계 발주 | ⇨ | - 노후시설 개선<br>· 공사시행 | ⇨ | - 공사 준공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노후단지 개보수 지원 | 300 | 300 | 424 | 124 | 41.3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문혁 주무관 (☏ 064-710-2633)

## 10-8. 금능농공단지 확장사업

### ▣ 사업목적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단지확장 추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2022년 12월 (2017년~계속/3년)
◦ 사 업 량 : 3개 농공단지(구좌·금능·대정)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단지 지정·고시), 공기업(실시설계~분양)
◦ 사업내용
  - 단지(변경)지정·고시
  -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승인
◦ 재원구분 : 6,073백만원(국비 667, 도비 368, 기타 5,038)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사업수행기관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단지확장<br>· 단지 지정·고시 | | - 단지확장<br>· 실시설계수립 | | - 실시계획승인 |

※ 전체 추진 로드맵

| 단지(변경)지정 | ➡ | 실시계획 수립 | ➡ | 단지확장사업 시행 및 준공 | ➡ | 분양 및 입주 |
|---|---|---|---|---|---|---|
| '19.2월 | | '19~'20년 | | '20년~'21년 | | '22년 |

* 단지확장사업은 공영개발방식으로써 단지지정 이후 공공기관 수행예정(공공기관 부담)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농공단지 시설개선 및 확장사업 | 710 | - | 6,073 | 6,073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문혁 주무관 (☏ 064-710-2633)

## 10-9.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 확보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11월 (2018년~계속/2년)
◦ 사 업 량 : 45개업체 시설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재)제주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작업환경개선지원 20개업체 , 환경오염방지시설지원 8개업체
◦ 재원구분 : 자체재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재)제주테크노파크 |
|---|---|---|
| · 업무협약 체결<br>· 보조금 교부<br>· 지도·감독 | ⇨ | · 사업 시행(공모)<br>· 사업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 - | 500 | 300 | △200 | △4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양문혁 주무관 (☏ 064-710-2633)

# 10-10.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도내 중소기업의 공인된 다양한 기업인증 획득으로 기술력 강화 및 경쟁력 확보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지원형태 : 공기관대행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컨설팅 및 인증획득 소용 비용의 일부지원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 기본계획 수립<br>· 사업비 교부 | ⇨ | · 사업홍보 및 업체선정<br>· 컨설팅 수행 | ⇨ | · 사업정산 및 평가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 70 | 70 | 80 | 10 | 14.2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고요숙 주무관 (☏ 064-710-2637)

## 10-11.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 ▣ 사업목적

◦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하고 경영실적이 뛰어난 업체중 근로자 복지 및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성장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국제박람회 참관을 지원하여 세계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할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기업 경영에 활용제공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계속
◦ 지원형태 : 공기관대행사업
◦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지원대상 : 도내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 지원내용
  - 해외박람회 참관을 통한 해외시장 조사 및 벤치마킹 연수 사업비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경제통상진흥원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 수립<br>·사업비 교부 | ⇨ | ·사업홍보 및 지원대상 공모선정<br>·사업시행 | ⇨ | ·사업효과 분석 및 정산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 박람회 참가지원 | 40 | 40 | 36 | △4 | △10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이정화 주무관 (☏ 064-710-2634)

## 10-12.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 ▣ 사업목적

◦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으로 제주 생산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및 제품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사전 대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12년
◦ 지원형태 : 직접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본사)을 둔 중소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가입한 제조물책임(PL)보험료의 80%지원(※ 업체당 100만원 한도)
◦ 재원구분 : 자체재원
◦ 사업추진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 사업계획 공고 (19.1월) | ⇨ | 신청・접수 (19.1-12월) | ⇨ | 서류접수 및 심사 | ⇨ | 결과통보 및 지원 (월1-2회) |

### ▣ 예산현황

<자체>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 | 24 | 24 | 24 | - | - |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강진희 주무관 (☏ 064-710-2635)

## 10-13.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온라인 발급절차(원칙)

| | |
|---|---|
| 1. 온라인 자료제출 | ◦ 제출자료<br>(법인기업)<br>(1) 최근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br>(2) 최근 1개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br>(3) 직전 연도말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전자신고파일<br>*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서류 제출<br>(개인기업)<br>(1) 최근 3개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br>(2) 최근 1개년 부가세 전자신고파일,<br>(3) 최근 1개년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
| 2. 회원가입 |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입력<br>* 회원가입은 신청기업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 |
| 3. 신청서 작성 | ◦ 신청기업 기본정보, 주주현황 및 출자회사정보, 자가진단서 등 정보 입력 |
| 4. 확인서 발급 완료 | ◦ 자료제출 및 확인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 확인서 출력가능 |

▣ 발급절차(예외)

◦ 합병/분할기업, 온라인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업 등은 오프라인으로 확인서 발급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신고서 미제출 대상기업은 자료 제출 생략

* 사업담당자 : 소상공인·기업과 김은정 주무관 (☏ 064-710-2525)

## 나.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 *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 ▣ 발급대상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 발급절차

| | | |
|---|---|---|
| 1. 장애인기업확인 신청<br>(신청기업) | ➡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br>-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및 자가 진단 체크<br>- 신청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
| ⬇ | | |
| 2. 장애인기업확인 접수<br>(전국 16개 센터) | ➡ | - 확인업무 담당자의 제출 서류 검토<br>(장애인기업 여부확인) |
| ⬇ | | |
| 3. 현장실사 일정 조율<br>(지역 확인업무 담당자) | ➡ | - 신청기업 대표자 및 전문평가위원의 현장실사 일정 조율 |
| ⬇ | | |
| 4. 현장실사 진행<br>(전문평가위원) | ➡ | - 전문평가위원의 현장실사 및 장애인기업 여부확인 |
| ⬇ | | |
| 5. 현장실사 결과보고<br>(전문평가위원) | ➡ | - 전문평가위원의 현장실사 결과보고 |
| ⬇ | | |
| 6. 검토 및 승인<br>(관리기관) | ➡ | - 관리기관의 승인 및 반려 처리 |

### ▣ 확인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지역센터(☏ 064-749-8234)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법인 사업자 | 1. 법인등록증명원(등록증 안됨)<br>2. 표준재무제표 직전 3개 사업연도<br>3. 대표자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안됨)<br>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br>5. 현재(최근) 주주명부(직인필수)<br>6. 직전년도말 기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직인필수) |
| 개인 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명원(등록증 안됨)<br>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직전 3개 사업연도<br>3. 대표자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안됨) |

### ▣ 확인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지역센터(☏ 064-749-8234)

## 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 ▣ 발급대상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 발급절차

| | |
|---|---|
| 1. 회원가입 | ◦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입력 |
| 2. 신청서 작성 | ◦ 온라인 신청<br>-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 3. 구비서류 제출 | ◦ 제출자료<br>- 사업자등록증 사본<br>-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br>- 주주명부(법인에 한함)<br>- 사원명부(법인에 한함)<br>- 주식 등 지분관계도(법인에 한함) |

### ▣ 확인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064-726-4467)

## 10-14.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 ▣ 사업목적

◦ 제주의 청정 농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식재료로 가공하기 위한 시설 현대화 기반 구축으로 FTA 대응, 생산비 절감과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 식품가공시설 장비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식품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5년~계속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법인)

- 단,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업체·식품제조업체 장비 현대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보조 70%, 자부담 30%)

◦ 재원구분 : 국비(50%), 지방비(20%), 자부담(30%)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보조사업자 |
|---|---|---|
| · 사업시행계획 수립<br>· 사업대상자 선정<br>·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 ⇨ | · 사업신청 및 시행<br>· 성과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식품가공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 | 420 | 700 | 420 | △280 | △40 |

* 사업담당자 : 식품원예과 김지희 주무관 (☏ 064-710-3175)

## 10-15.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 ▣ 사업목적

◦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HACCP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제주식품산업 발전 도모

※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단,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에 지원
-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위생설비 등 HACCP시설 구축 (보조 60%, 자부담 40%)
◦ 재원구분 : 지방비(60%), 자부담(40%)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보조사업자 |
|---|---|---|
| · 사업시행계획 수립<br>· 사업대상자 선정<br>·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 ⇨ | · 사업신청 및 시행<br>· 성과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지원 | 100 | 100 | 100 | - | - |

* 사업담당자 : 식품원예과 김지희 주무관 (☏ 064-710-3175)

## 10-16.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 ▣ 사업목적

◦ 청정농산물 가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후장비 교체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식재료 생산과 유통 안정화에 기여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1년~계속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단,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에 지원
-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내용 : 농산물을 이용한 고부가 식품 가공장비 및 노후장비 대체 구입비 (보조 60%, 자부담 40%)
◦ 재원구분 : 지방비(60%), 자부담(40%)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보조사업자 |
|---|---|---|
| · 사업시행계획 수립<br>· 사업대상자 선정<br>·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 ⇨ | · 사업신청 및 시행<br>· 성과보고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지원 | 100 | 100 | 100 | 0 | - |

* 사업담당자 : 식품원예과 김지희 주무관 (☏ 064-710-3175)

## 10-17. 착한 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 ▣ 사업목적

◦ 물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하여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시행 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대상 : 착한가격업소
◦ 지원내용
-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사용료 중 매월 최대 50톤 사용료 감면
-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방역 소독
-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업소 맞춤형 물품지원
-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이자보전 우대지원

◦ 재원구분 : 지방비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행 정 시 | | 제주특별자치도 (전문가 평가단) |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특별자치도 |
|---|---|---|---|---|---|---|---|---|
| · 착한가격업소 공고 | ⇨ | · 착한가격업소 신청(업소) 접수 및 서류 심사 | ⇨ | · 착한가격업소 현장평가<br>* 가격·품질·서비스 등 가성비 기준 | ⇨ | · 착한가격업소 선정 | ⇨ | · 인센티브 지원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7예산 | '18예산 (A) | '19예산 (B) | 증 감 (B-A) | % |
|---|---|---|---|---|---|
| 착한 가격 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 | 182 | 182 | 182 | - | - |

* 사업담당자 : 경제정책과 이지은 주무관 (☏ 064-710-2513)

# Ⅳ.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3129호**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융자지원규모 :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지원방법** : 자금별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사업별 지원내용**

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협동조합, 제주이전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사회적기업 등 9개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붙임)**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3억원~90억원(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투자 연계), 업종별 차등) 이하
- 대출기간

| 자금별 | 대출금액 | 융자기간 | 비 고 |
|---|---|---|---|
| 시설자금 | 50억원 이상 |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분할상환 (거치기간이후 매월/ 분기별) |
|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
| | 10억원 미만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 운전자금 |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
| | 5억원 미만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

- 수요자금리 : 대출금리(은행자율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50%, (신용담보) 2.3%

·우대기업 (보증서, 부동산 담보) 대출금리의 70%, (신용담보) 3.0%

❍ 우대기업(이차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단,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최초 우대받은 경우 재선정 시 최대 4년)
- 지원대상 : 여성경제인기업, 장애인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고용우수인증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농수축산 관련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 배우자가 기업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여성기업에게는 일반금리 적용

❍ 신청 및 처리절차

- 신청(제주신용보증재단) → 사업계획 평가(제주신용보증재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0억원 이상) 및 지원결정(도)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 2호 서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창업업체 제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공장설립허가증 사본이나 건축허가증 사본(해당업체에 한함)
- 설비견적서나 계약서 가본(수입할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 매매계약서나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 설계도면이나 안내서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문의처

- 제주신용보증재단(신청접수) : ☎ 064) 758-5740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5

## 2. 경영안정 지원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41개 업종

**※ 지원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4](붙임)**

* 재해·재난 피해기업 지원제외대상: 도박업, 사치향락업(유흥주점 등), 부동산업, 임대업, 금융업, 보험업, 골프장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주류 · 담배 도매업

○ 지원조건

- 지원한도 : 2천만원 ~ 5억원 이내(업종별 차등, 매출액이내)
- 대출기간 : 회차별 각 2년(총 3회차, 6년)

  * 3회차 이용 후 융자금 상환 시 1회차부터 융자지원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이차보전율은 1회차 기준에서 회차별 0.2%씩 차감)

| 담보별 | 협약최고 대출금리 (%) | 회차 | 수 요 자 (%) | | 이차보전율(%) | |
|---|---|---|---|---|---|---|
| | | | 일 반 | 우 대 | 일 반 | 우 대 |
| 보증서 | 3.8 이하 | 1회 | 1.7이하 | 0.8이하 | 2.1 | 3.0 |
| | | 2회 | 1.9이하 | 1.0이하 | 1.9 | 2.8 |
| | | 3회 | 2.1이하 | 1.2이하 | 1.7 | 2.6 |
| 부동산 | 4.1 이하 | 1회 | 2.0이하 | 1.1이하 | 2.1 | 3.0 |
| | | 2회 | 2.2이하 | 1.3이하 | 1.9 | 2.8 |
| | | 3회 | 2.4이하 | 1.5이하 | 1.7 | 2.6 |
| 신 용 | 은행 자율금리 | 1회 | 2.1차감 | 3.0차감 | 2.1 | 3.0 |
| | | 2회 | 1.9차감 | 2.8차감 | 1.9 | 2.8 |
| | | 3회 | 1.7차감 | 2.6차감 | 1.7 | 2.6 |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보증서·신용 담보 대출 시(부동산 담보 제외)**

○ 우대기업(이자차액보전 우대지원)

- 지원기간 : 2년**(단,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최초 우대받은 경우 재선정 시 최대 4년)**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성장유망중소기업(선정·재선정 각 2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재해·재난피해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창업기업*, 착한가격업소, 현장실습 선도기업

  *** 대표자 만39세 이하로 창업 후 3년 이내 지원업종 대상 기업**

○ 신청 및 처리절차(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신청 → 지원대상·한도(매출액) 및 결격사유 확인 → 융자추천서 발급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 5호 서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그 밖에 지원대상 업종별 증빙서류(영업신고증 등/해당업종에 한함)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 064) 805-3370~1

## □ 기타사항

○ 융자추천에 따른 대출실행은 업체가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아래 협약금융기관) 절차에 의하며, 보증기관의 보증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적서 제출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 받은 자는 사업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통보서 제출

-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자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융자지원 제외 대상(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추천)이나 대출을 받은 업체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 기금(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받은 업체가 같은 용도(시설/운전)의 자금을 융자신청한 경우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별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융자지원은 가능)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액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한
- 비영리 법인

○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타기금 및 중소벤처부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외 적용 배제

○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업체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융자지원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도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표자 변경 등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차보전이 중지됨

○ 변경사항의 통보 :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사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융자 추천권자에게 신고서 제출

- 대표자의 변경, 본사 또는 공장의 상호나 소재지의 변경, 주생산 업종의 변경, 휴업·폐업 등 경영상의 중요사항 등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 적용

○ 기 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제한

## □ **협약금융기관** : 16개 금융기관*의 제주지역본부 및 지점

(* NH농협은행, 제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KEB하나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제주시산림조합, 서귀포시산림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6.12.>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자금 지원기준(제2조 관련)

## 1.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세 부 지 원 대 상 |
|---|---|
| 제조업 | ◦ 창업업체<br>-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br>- 법원 또는 성업공사의 경매, 은행유입물건 매각을 통해 유휴공장을 매입한 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경락대금 완불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포함)<br>◦ 경쟁력강화업체<br>- 제조업 전업율이 30퍼센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br>- 공장 또는 제조업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기업으로 기존 영위업종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
| 협동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br>◦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협동조합 및 같은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
| 제주이전기업 | ◦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중 어느 하나를 제주로 이전하는 기업<br>※ 단, 대기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업종은 지원 배제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한 기업 |
|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하는 융자계획에 따른 업종 |
| ‘미래신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하는 융자계획에 따른 업종<br>※ 단, 태양광발전사업은 지원대상제외 |
| 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
|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략산업 업종 |

(비 고)

1. “전업율”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 2. 지원내용

### 가. 시설자금

| 지원업종 | 세 부 지 원 내 용 |
|---|---|
| 제조업 | ◦ 창업업체 및 경쟁력강화업체의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 항목의 자금<br>- 공장 및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용(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종은 제외)<br>- 부지 및 공장매입비(창업업체에 한하여 지원)<br>-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 개체 및 기존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br>- 자동화, 정보화 및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자금 |
| 협동조합 | ◦ 부지·공장매입 및 임차, 건축, 시설장비 구입, 공동창고·공동판매장 설치 소요자금 |
| 제주이전기업 | ◦ 부지·공장매입 및 임차, 건축, 시설장비 구입, 기반시설 설치 소요자금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공장 및 사업장 건축, 시설장비 구입, 기존 공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
|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
| ‘미래신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 |
| 사회적기업 | “ |
|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

### 나. 운전자금

| 지원업종 | 세 부 지 원 내 용 |
|---|---|
| 제조업 | ◦ 연구개발 및 원부자재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br>◦ 시설투자와 연계하여 소요되는 운전자금 |
| 협동조합 | “ |
| 제주이전기업 | ◦ 시설투자와 연계하여 소요되는 운전자금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
|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

(비 고)

1. 외국산 시설에 대한 환율은 사정 당일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 3. 융자조건 및 한도

### 가. 시설자금

| 지원업종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융자비율 | 지원한도<br>(대출금액) |
|---|---|---|---|---|
| 제조업 | 별도<br>공고 | 8년 이내<br>(거치기간 3년 포함) | 소요자금의 80퍼센트 이내(부지 및 공장매입비는 50퍼센트 이내) | 20억원(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업체: 25억원) |
| 협동조합 | “ | “ | “ | 15억원 |
| 제주이전기업 | “ | 10년 이내<br>(거치기간 3년 포함) | “ | 80억원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 8년 이내<br>(거치기간 3년 포함) | 소요자금의<br>80퍼센트 이내 | 20억원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 “ | “ | 20억원 |
|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 “ | “ | 10억원 |
| ‘미래신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 | “ | “ | 10억원 |
| 사회적기업 | “ | 5년 이내<br>(거치기간 2년 포함) | “ | 3억원 |
|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 8년 이내<br>(거치기간 3년 포함) | “ | 10억원 |

(비 고)

1. 지원대상업종별 대출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융자기간은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로 하고,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10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로 한다.

### 나. 운전자금

| 지원업종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융자비율 | 지원한도<br>(대출금액) |
|---|---|---|---|---|
| 제조업 | 별도<br>공고 | 5년 이내<br>(거치기간 2년 포함) | ·창업업체: 시설자금의 30퍼센트 이내<br>·경쟁력강화업체: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 | 5억원(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업체: 8억원) |

| 지원업종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융자비율 | 지원한도<br>(대출금액) |
|---|---|---|---|---|
| 협동조합 | “ | “ | “ | 5억원 |
| 제주이전기업 | “ | “ | “ | 10억원 |
| 고용우수인증기업 | “ | “ | “ | 5억원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 “ | “ | 5억원 |
|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 3년 이내<br>(거치기간 1년 포함) | “ | 1억원 |
| ‘미래신성장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 “ | “ | “ | 1억원 |
| 사회적기업 | “ | “ | “ | 50백만원 |
|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 | “ | “ | 1억원 |

(비 고)

1. 지원대상업종별 대출금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 융자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로 하고, 5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로 한다.

[별표 4]

# 경영안정 지원자금 지원기준(제13조 관련)

| 지원대상 | 용 도 | 지 원 한 도 | 융자기간 | 융자금리 | 증빙·확인서류 |
|---|---|---|---|---|---|
| 제조업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5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br>- 산정된 금액이 100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100백만원 한도)<br>- 전년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100백만원 한도로 직전분기 매출액 이내(단,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은 매출액 관계없이 100백만원 한도)<br>※ 제외대상: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2년 | 별도 공고 | 공장등록증(공장등록업체) |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 | 4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br>- 매출액이 없을 경우 200백만원 | 〃 | 〃 | 벤처기업 확인서 |
| 이노비즈(innobiz)기업, 경영혁신형기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정) | 〃 | 4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br>- 매출액이 없을 경우 200백만원 | 〃 | 〃 | 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확인서 |
| 성장유망중소기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 〃 | 4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 | “ | 〃 | 성장유망중소기업 인증서 |
| 고용우수인증기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 〃 | 4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br>- 매출액이 없을 경우 200백만원 | 〃 | 〃 | 고용우수기업인증서 |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인증) | 〃 | 4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br>- 매출액이 없을 경우 200백만원 | 〃 | 〃 | 가족친화기업인증서 |
| 가업승계기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증) | 〃 | 200백만원 이내<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가업승계기업인증서 |
| 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협동조합 및 같은조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 원·부자재의 공동구매사업 및 생산제품의 공동판매사업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500백만원<br>※ 자본금 합계의 3배 이내 | 〃 | 〃 | 조합설립인가증 |
| 도·소매업(도매업인 경우 - 담배, 주류, 도박기계 및 사행성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 2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실적에 따라<br>- 1,000백만원 이상: 200백만원 이내 | 〃 | 〃 | |

| 지원대상 | 용 도 | 지 원 한 도 | 융자기간 | 융자금리 | 증빙·확인서류 |
|---|---|---|---|---|---|
| 불건전 오락기구 제외, 소매업인 경우 - 주류,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판매점, 복권판매점, 다단계방문판매, 약국 제외) | 운전자금 | - 500백만원 이상 ~ 1,000백만원 미만: 150백만원 이내<br>- 1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미만: 100백만원 이내<br>- 10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내<br>(단, 전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미만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사회적기업 | 〃 | 5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사회적기업 인증서 |
| 시내·외버스 운송업체 | 〃 | 3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의 50퍼센트 이내<br>- 100백만원 이하에서는 산정된 금액과 전년도 매출액 중 높은 금액(100백만원 한도)<br>- 전년도 매출액이 없을 경우 직전분기 매출액 범위(100백만원 한도) | 〃 | 〃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증 |
| 전세버스업체 | 〃 |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 택시회사 | 〃 |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00백만원<br>·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50백만원<br>·개별, 용달(일반화물운송업내 위·수탁 차량 포함):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자동차등록증(영업용기재)/위수탁계약서 |
| 수상운송업 | 〃 | ·내항여객운송업: 400백만원<br>·그 밖에 수상운송업: 5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수상운송업 등록증 |
| 자동차임대업 | 〃 | 5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자동차정비업 (종합 및 소형) | 〃 | 3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br>- 700백만원 이상: 300백만원 이내<br>- 500백만원 이상 ~ 700백만원 미만: 200백만원 이내<br>- 1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미만: 150백만원 이내<br>- 100백만원 미만: 70백만원 이내<br>(단, 전년도매출액이 70백만원 미만일 경우 매출액 이내) | 〃 | 〃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
| 자동차부분정비업 및 세차업 | 〃 | 5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
| 석쇄, 쇄석 및 모래채취업 (법인사업자) | 〃 | 4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의 80퍼센트 이내<br>- 100백만원 이하에서는 산정된 금액과 전년도 매출액 중 높은 금액 (100백만원 한도) | 〃 | 〃 | 채취업 허가증 |

| 지원대상 | 용 도 | 지 원 한 도 | 융자 기간 | 융자 금리 | 증빙·확인 서류 |
|---|---|---|---|---|---|
| 일반건설업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2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br>- 3,000백만원 이상: 200백만원 이내<br>- 1,000백만원 이상 ~ 3,000백만원 미만 : 150백만원 이내<br>- 1,000백만원 미만: 100백만원 이내<br>(단, 전년도 매출액이 100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매출액 이내) | 〃 | 〃 | 건설업 등록증 |
| 전문건설업<br>통신공사업<br>소방공사업 | 〃 | ·등록업체: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br>- 3,00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br>- 1,000백만원 이상 ~ 3,000백만원 미만 : 70백만원 이내<br>- 1,00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내<br>(단, 전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매출액 이내)<br>·자영업체: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전문건설업 등록증/통신공사업등록증/소방공사업 등록증 |
| 전기공사업체<br>(1, 2종) | 〃 |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실적에 따라<br>- 50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내<br>- 100백만원 이상 ~ 500백만원 미만: 70백만원 이내<br>- 100백만원 미만: 50백만원 이내<br>(단, 전년도 매출액이 50백만원 미만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전기공사업 등록증 |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대여업 | 〃 | ·법인(종합): 50백만원<br>·일반(개별, 위·수탁):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건설기계 등록증 |
| 제과점업 | 〃 |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사진촬영 및 처리업 | 〃 | 5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건물 및 기타 사업장 청소업 | 〃 |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창고업 | 〃 |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일반숙박업(단, 생계형만 지원) | 〃 | 5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영업신고증/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
| 노래연습장운영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해당업체. 단, 생계형만 지원) | 〃 |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 지원대상 | 용 도 | 지 원 한 도 | 융자기간 | 융자금리 | 증빙·확인서류 |
|---|---|---|---|---|---|
|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업체. 단, 생계형만 지원) |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 일반음식점업(건축연면적 330평방미터 초과하는 영업장 제외) | 〃 |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영업신고증 |
| 휴게음식점 | 〃 |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가정용 세탁업 | 〃 |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산업용 세탁업 | 〃 |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세탁물 공급업 | 〃 |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목욕업 | 〃 |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이·미용업 | 〃 | 3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분뇨 및 축산폐기물 포함) | 〃 |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폐기물처리업허가증 |
| 지식서비스산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 | ·법인: 100백만원<br>·개인: 5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 | 〃 | 〃 | |
| 미래신성장분야산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 | 100백만원<br>※ 전년도 매출액 이내<br>(단, 태양광발전사업은 지원대상제외) | 〃 | 〃 | 미래신성장분야산업 인증서 |
| 재해·재난 등 피해기업(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름) | 재해·재난 등 피해복구 및 운전자금 | 200백만원<br>※ 피해금액 이내<br>- 이 규칙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도 해당(단, 지원대상 업종인 경우 지원한도 외 별도로 지원 가능) | 〃 | 〃 | 재해·재난 기업확인서 |

비 고

1. 생계형 지원기준은 융자신청일 전 3개월 평균 지역건강보험료가 110,318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장기요양보험료 별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교육(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이수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50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 제조업
나. 지식서비스산업
다. 미래신성장분야산업
라. 사회적 기업
마. 장애인기업

<공통사항>

가. 지원대상 업종 중 매출액이 지원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는 2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20백만원까지 지원한다.
다. 지원대상은 일반·간이·면세사업자로 3개월 이상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한다.
라. 지원대상 업종 중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및 전년도 매출액보다 당해 연도 매출액이 클 경우는 당해 연도 매출액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전년도 매출액으로 지원한도까지 융자추천 할 수 없고, 신청기업이 매출관련자료(재무제표 등)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2개년 또는 3개년 매출액을 산술평균한 매출액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마. 동일기업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바. 금리는 재정자금의 예탁금리나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등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Ⅴ. 2019 유관기관별 지원사업

# - 목 차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207

2.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239

3.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243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 249

5. 제주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 255

6. 제주상공회의소 ····· 259

7.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267

8.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 271

9.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287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297

11. KOTRA 제주사무소 ····· 337

1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345

# 1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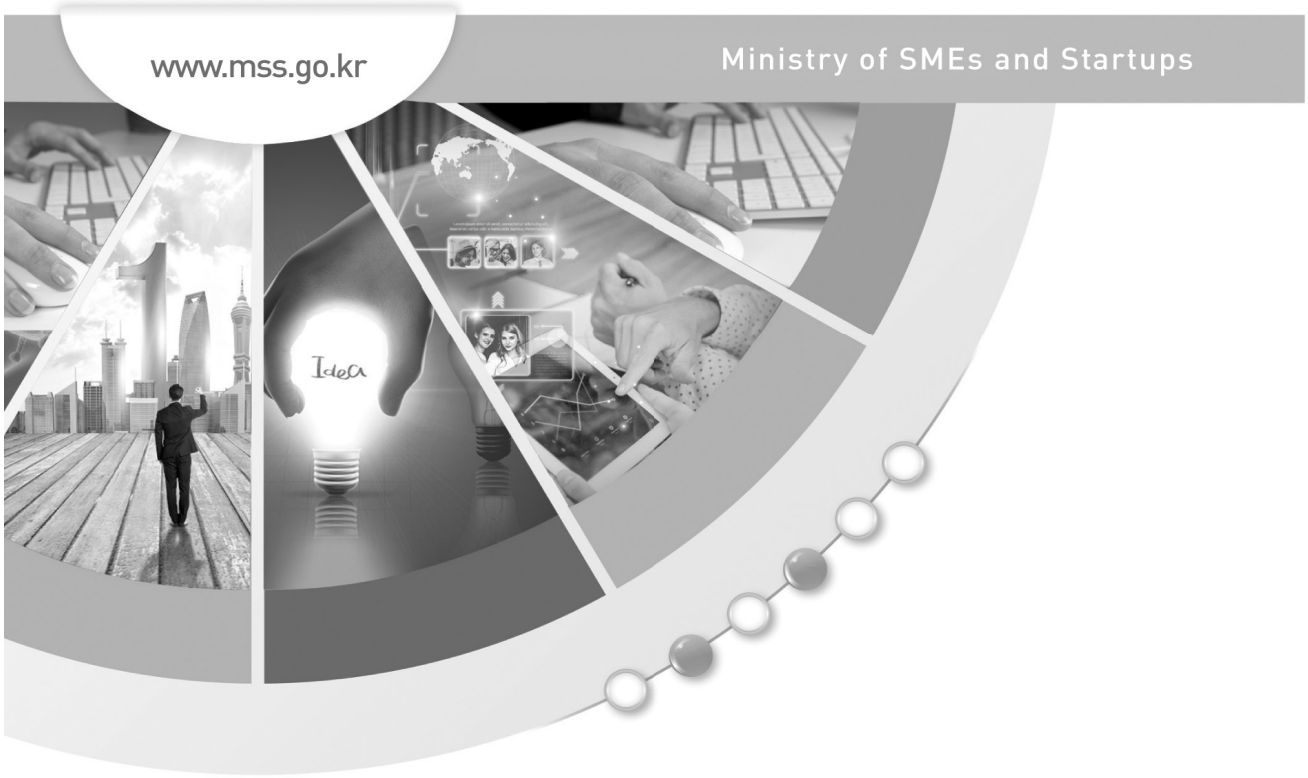


# 2019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소기업진흥공단)

# 1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 자금지원 공통사항**

**창업기업지원자금 등 6개 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기업, 융자시기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지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 3조 6,700억원

* 창업기업자금(2조 8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자금(2,0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8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8,8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3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 전략산업 : 혁신성장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 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대출 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2%p(최대 2%p) 이자환급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성과 창출기업(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은 1년간 0.3%p 이자환급
  -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대출월 제외한 직전 12개월 직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이 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 달성
  -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 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이자환급(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자가진단)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 (사전상담)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고용창출, 일자리안정, 성과공유, 수출 및 시설투자기업 등은 우선지원)
  - * (온라인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 대상여부를 결정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 등급(Rating)을 산정

*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대상자금 : 창업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사업장 임대 등)으로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 유가증권시장(코넥스 제외),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액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지원 가능

- 자본시장법에 의산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신성장기반자금 중 협동화 및 협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u><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 예외></u>

- 업력 5년 미만 기업, 사업전환자금 신청기업 중 무역조정지원기업
-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기업 중 일시적경영애로기업, 재해중소기업
-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및 재창업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청기업 중 국내 복귀기업
- 최근 결산년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기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단, 제조업 또는 전략산업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융자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 예외)
-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 전용),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재해자금)은 신청가능

*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 심의위원회 및 중소기업 일관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예외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적용 제외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글로벌진출지원), 신성장기반자금(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성장공유형)은 산정 예외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처리 절차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용어설명

**업종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해당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을 말함

**융자잔액**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상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말함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는 기금

**대출금리와 국고채 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을 말하며, 국고채 금리는 정부가 장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의 이자율을 말함

**변동금리** :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대출금리가 변하는 금리

**대위변제**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대지급** : 은행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통하여 특정업자의 지급신용을 책임진 후 그 특정업자가 기일내에 지급을 불이행하였을 때 지급보증은행 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화의** : 기업이 파산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것

**기업회생신청** :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과거 법정관리)

**청산절차** : 회사가 합병·파산 이외의 원인으로 해산한 경우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등과 각종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절차

**융자제한 부채비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서 최근년도의 업종별 부채비율을 가중 평균한 2~3배의 값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공단이 직접 대출하는 방식. 대리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책자금을 신청·접수 및 평가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하고 은행이 대출하는 방식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시설자금은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사업장 건축·확보 등의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함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지침), 자활기업(국민기초생활보정법) 등임

**수출향상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한 기업

# 1-① 창업기업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지원 규모** 20,800억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 창업제외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 혁신창업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창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창업사업연계자금>
▪ 창업투자 : 민간 VC 등 투자유치,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
▪ 창업R&D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
▪ 창업양성 : 청년창업사관학교, TIPS팀,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
▪ 창업BI : 정부 및 지자체, 대학 BI 입주 및 졸업(3년 이내) 기업
▪ 경영·기술혁신형 창업 : 이노비즈, 메인비즈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체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인재 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등

▪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②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최근 3년 이내 신시장진출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은 횟수 제한 적용 예외)

*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 외부 연구용역(디자인, 앱 개발 등)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투자자금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2% 고정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1.자금지원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약속어음 폐지 · 감축기업, 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기업당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1억원 이내

**융자 방식**

◦ 혁신창업지원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 처리 절차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1-②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2,000억원

**지원 대상**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스케일업금융으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력 7년 미만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
  - * 스케일업금융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 성장공유형(스케일업금융)의 융자대상, 융자조건, 융자방식 및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 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로 구성, 대출기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와 성과배분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은 대출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 고정이자 : 0.5%, 성과배분이자 : 3개년 영업이익 합계액의 4%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성장공유형 대출

▪ 대출금리 : 표면금리 0.5%, 만기보장금리 3%로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중진공이 인수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

* 대출기간 내에 기업의 상장(IPO)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식전환 여부를 중진공이 결정

*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1.자금지원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스케일업금융**

✔ (융자조건) 대출기간 : 3년 이내 (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

✔ (융자방식)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유동화 후 자금지원

※ 융자조건, 신청·접수, 처리절차 등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 참고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전상담 필수)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양식 작성 및 온라인 신청(동시 업로드)

**처리 절차**

◦ 이익공유형 대출

| | | |
|---|---|---|
| 사업계획수립/공고<br>(중기부, 중진공)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br>(중소기업→ 중진공) | 서류 및 현장실사<br>(중진공 → 중소기업) |
| | | ↓ |
| 융자 실행<br>(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결정통보<br>(중진공 → 중소기업) | 평가 및 승인<br>(중진공 → 중소기업) |

◦ 성장공유형 대출

| | | |
|---|---|---|
| 사업계획수립/공고<br>(중기부, 중진공) |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br>(중소기업 → 중진공) | 서류 및 현장실사<br>(중진공 → 중소기업) |
| | | ↓ |
| 융자 실행<br>(중진공 → 중소기업) | 지원결정통보<br>(중진공 → 중소기업) | 투자심의위원회<br>(내부 위원회) |

**문 의 처**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용어설명**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

# 1-③ 신성장기반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지원 규모** 8,800억원

**지원 대상** 혁신성장유망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유망)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중 ① 스마트공장 등 보급사업 참여기업,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③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50%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 중소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단, '산업경쟁력강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단,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1.자금지원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협동화(협업화) 승인기업,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 처리 절차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1-④ 재도약지원자금

**| 사업전환·무역조정,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

**사업전환, 구조개선,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2,300억원

**지원 대상** 사업전환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으로 구분 지원

(사업전환자금)

◦ 다음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현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전환 또는 업종 추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재창업자금)

◦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아래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의 경우,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 이하 기업이 신청대상임

③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기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5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① 재창업한 기업으로 정부의 R&D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기업)
②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또는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참여자(기업)
③ 재도전 Fund 지원기업
④ 특허·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기업)
⑤ 혁신성장분야 영위 기업

(구조개선전용자금)

◦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융자제한기업중 ①항, ②항, ⑨항 적용에서 제외(단, ①항은 세금체납 체납 유예에 한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② 중진공 및 신·기보 지정 경영애로 기업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중소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인가 기업 (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
⑥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생산 및 기업경영 소요 비용
 *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5년이내,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이내(재창업,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4년 이내))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단, 운전자금 중 재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1-1.자금지원 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기업당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 재창업자금은 융자결정 후 별도 지정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출

*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

**신청·접수**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 자금종류에 따라 신청서 구분

## 처리 절차

* 사업계획 승인 등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는 사전 상담 필수

## 문 의 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및 본사 : 055-751-9624, 9625, 9633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1-⑤ 긴급경영안정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

**지원 규모** 1,000억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단, 수출향상 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금회 포함), AI 피해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의 행위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횟수제한 적용 예외

**융자 범위**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1.자금지원 공통사항의 바, 융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은 ①,⑥항 추가 예외(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 신청 요건 >

•(경영애로 사유) ① 환율피해, 대형사고,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대기업 구조조정,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보호무역피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 한·중 FTA 피해(별표 15), 경기부진 또는 서비스개선에 따른 애로(병·의원), 고용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 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 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자동차 관련 업종, 한국GM(군산·창원공장) 협력기업, 보호무역 피해기업(중국 수출피해, 중국관광객 감소 피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 보호무역피해를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애로 판단기준 적용 예외

•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 이내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신청 가능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 가산

* 재해중소기업은 연 2.1%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 단, 재해자금은 전용신청서 작성

**접수 시기**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1-⑥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규모** 1,800억원

**지원 대상**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자금과 수출기업의 글로벌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수출 10만불 미만)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내수기업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이내,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포함),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이내)으로 한정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수출 10만불 이상) 중 생산품(용역, 서비스 포함)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융자 범위**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건축 및 사업장 구입자금 제외)

**융자 조건**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는 운전자금만 가능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는 5억원 이내

**융자 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신청·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기** 2019.1 ~ 자금 소진시까지

**처리 절차**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2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무역보험료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 사업목적

○ 제주도내 수출(예비)기업에게 무역보험 가입비용을 지원, 해외대금미결제 및 환변동 위험에 대비하고, 수출이행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영안정 및 수출활성화에 기여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현재
○ 지원형태 : 무역보험(증)료 지원
○ 운영기관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지원대상 : 도내 수출(예비) 중소기업 (중견기업포함)
○ 지원내용 : ①단기수출보험 ②수출신용보증 ③환변동보험 가입비용 전액 지원(환변동보험 옵션형은 90% 지원)
○ 재원구분 : 지방비

## ▣ 사업추진 절차

제주특별 자치도청 ⇨ 보험(증)료지원 → 한국무역 보험공사 ⇨ 금융지원 (보험/보증) → 도내 수출 (예비)기업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6예산 | '17예산(A) | '18예산(B) | 증감(B-A) |
|---|---|---|---|---|
|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180백만원 | 180백만원 | 180백만원 | - |

※ 사업담당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과장 윤장원 (☏ 064-751-6601)

# 3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1. 제주 글로벌 바이어 초청 상담회 (Jeju Sourcing Fair)

## ▣ 사업목적

◦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 거래선 확보 및 해외진출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하반기 1회
◦ 지원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내용
  -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략시장 글로벌 바이어 초청 상담회 개최
  - 1:1 상담회 진행 및 현장방문, 네트워킹 오찬 진행
◦ 사업추진 절차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 회원사 · 바이어 |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
| 참가 모집 공고 | ⇨ | 참가기업 선정/매칭 | ⇨ | 글로벌 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

# 2. 무역 현장 자문 컨설팅 서비스

## ▣ 사업목적

◦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실무 상담 및 애로 해소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내용
  - 무역실무, 해외마케팅 등 무역 절차간에 발생하는 애로 및 문의 사항에 대해 제주지역 상주 자문위원이 방문하여 컨설팅
◦ 사업추진 절차

| 무역협회 회원사 |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 무역현장 자문위원 |
|---|---|---|---|---|
| 현장자문 신청 | ⇨ | 자문위원 방문 안내 | ⇨ | 현장 방문 컨설팅 시행 |

# 3.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

## ▣ 사업목적

◦ 중소 수출기업 대상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자금 융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3월~11월
◦ 지원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내용
  - 수출마케팅에 필요한 저리 자금 융자 (한도 2억원)
조건 : 융자기간 3년 (거치기간 2년)
◦ 사업추진 절차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 무역협회 회원사 | | 금융기관 |
|---|---|---|---|---|
| 융자 신청 공고 | ⇨ | 융자 신청(온라인) | ⇨ | 자금 융자 |

# 4.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 ▣ 사업목적

◦ 수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준비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 지원내용
  - 수출 준비에 필요한 활동(외국어 통번역, 외국어 카탈로그·동영상 제작, 무역아카데미 수강료, 바이어 신용조사, 글로벌 B2B 사이트 이용료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매년 40~100만원 지원)
◦ 사업추진 절차

| 한국무역협회 | | 무역협회 회원사 | | 한국무역협회 |
|---|---|---|---|---|
| 사업 시행 공고 | ⇨ | 사업 신청(온라인) | ⇨ | 승인 통보/비용지원 |

# 5. 무역의날 포상 추천

## ▣ 사업목적

◦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업체와 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

## ▣ 사업내용

◦ 신청기간 : 7월~8월(예정)

◦ 신청대상

- 수출의탑 : 전년도 7월~당해년도 6월까지 1년간 수출실적이 각 탑 해당 금액 이상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무역업체
- 개인포상 : 수출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 포상내용

- 수출의탑
  · 백만불 : 1, 3, 5백만불
  · 천만불 : 1, 2, 3, 5, 7천만불
  · 억불 : 1~9억불, 10~90억불, 100~800억불
- 개인포상 : 산업훈장, 산업포장, 표창장(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 사업추진 절차

| 한국무역협회 | | 무역업체 | | 한국무역협회 |
|---|---|---|---|---|
| 포상 시행 공고(7월) | ⇨ | 포상 신청 | ⇨ | 포상 결과 안내/<br>무역의날 시상식 개최 |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한영수 부장 (☏ 064-757-2811)

#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 제주 중소기업 생산기술실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 전담 기술실용화 지원 추진

◦ 제주지역 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기술력 향상 및 국내외 경쟁력 확보

◦ 기술개발 과제발굴·기획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제품개발 확산 및 정부R&D과제 발굴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계속

◦ 지원형태 : 기술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핵심기술지원
- 공정기술지원
- 시제품/시작품 기술지원

◦ 재원구분 : 지방비, 대행기관 자부담

◦ 사업추진 절차

| 기업 | | 생기원 | | 생기원 | | 생기원 | | 생기원/지자체 |
|---|---|---|---|---|---|---|---|---|
| 애로기술신청 | ▸ | 기술진단 및 수요분석 | ▸ |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 |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수행 | ▸ | 결과분석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6예산 | '17예산 (A) | '18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 600 | 600 | 600 | - | - |

* 사업담당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 황지민 (☏ 064-759-9297)

# 제주 중소기업 R&D상시발굴 지원사업

## ▣ 사업목적

◦ 기술개발 과제발굴·기획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제품개발 확산 및 정부R&D과제 발굴

◦ 제주지역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유망기술 교류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및 연구개발 지원

◦ 제주지역 주력·신성장산업에 적합한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기획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계속

◦ 지원형태 : 사업발굴, 기술컨설팅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산업 및 기술선행조사
- 맞춤형 기술개발 컨설팅
- 국가 연구개발사업 도출(기획보고서 및 RFP도출)

◦ 재원구분 : 지방비

◦ 사업추진 절차

| 기업 | | 생기원 | | 생기원 | | 생기원 | | 생기원/지자체 |
|---|---|---|---|---|---|---|---|---|
| 애로기술 신청 | ▸ | 기술진단 및 수요분석 | ▸ |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 |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수행 | ▸ | 결과분석 |

## ▣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6예산 | '17예산 (A) | '18예산 (B) | 증 감 (B-A) | % |
|---|---|---|---|---|---|
|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 17 | 67 | 67 | - | - |

* 사업담당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 황지민 (☏ 064-759-9297)

# 파트너기업 수요대응공동기술지원사업

## ▣ 사업목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접수받아 우리 원 인력 및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적 문제 해결 및 문제 해결 역량 강화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속
◦ 지원형태 : 기술지원
◦ 사업시행 주체 : 직접수행
◦ 지원대상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기업 대상
◦ 지원내용 : 지원과제당 최대 50백만원/최대6개월 지원

|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
| 단기1 | 25백만원 | 정부지원금의 10% 이상(현금부담)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현금) | 4개월 이내 |
| 단기2 | 50백만원 | | | 6개월 이내 |

* 애로기술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하며, 시제품 제작비는 기업의 현금부담금 미만 편성

◦ 재원구분 : 국비
◦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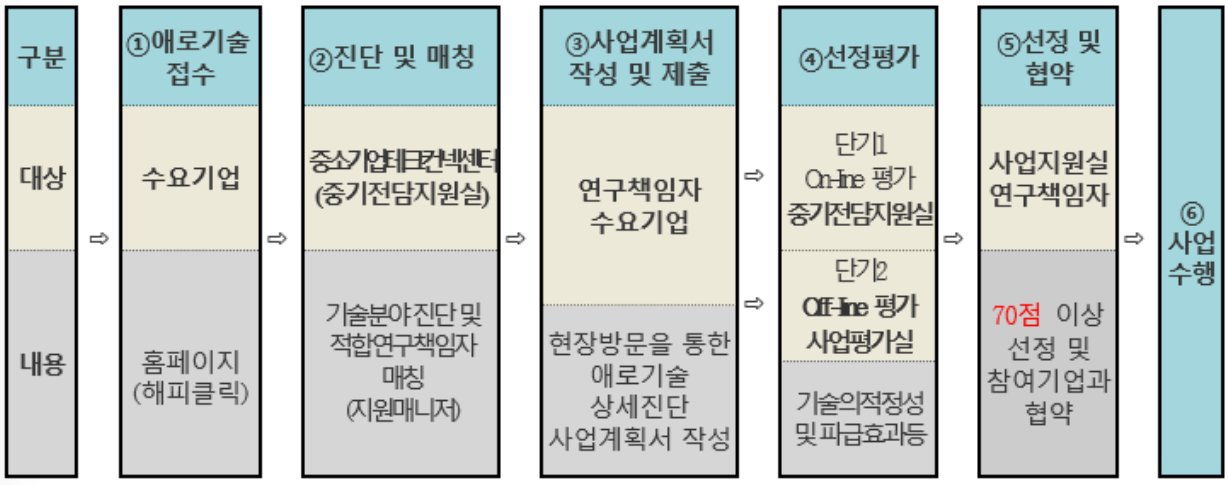


* 사업담당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 황지민 (☏ 064-759-9297)

# 5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 사업목적

◦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계획'에 따라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예정)자에 대한 효과적인 생애경력설계·전직 서비스 제공

##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기업지원사업

◦ 찾아가는 기업 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 기업 현장방문단 운영
- 기업설명회 및 기업특강 개최

◦ 경력/신입 구인·구직 알선 서비스
-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우수 중장년 인재 맞춤형 알선

◦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 만 40대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운영
· 40+ 경력전성프로그램(40대 재직자 대상)
· 50+ 경력확장프로그램(50대 재직자 대상)
· 60+ 경력공유프로그램(60대 재직자 대상)

◦ 전직스쿨 프로그램
- 만 40대 이상 퇴직예정자 대상 변화관리를 통한 성공적 전직을 지원
· 대상 : 만 40세 이상 동일기업 퇴직(예정)자(구조조정 경우 나이제한 없음)
· 운영 : 기업 희망프로그램 조율 후 탄력적 운영
· 직업체험과정 : 퇴직 전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 설정에 결정 지원

사업담당자: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양훈석 컨설턴트(064-710-4505)

# 6 제주상공회의소

# 지식재산창출지원

## ▣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집중지원을 통해 지역 지식재산 대표기업으로 육성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 지원대상
- 글로벌IP기업육성 : 2019년 신규선정업체 및 2018/2017년도 기 선정업체 대상
-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 도내 중소기업 대상
- IP창출인프라구축 : 제주특별자치도민 및 도내 중소기업 대상
- IP나래 프로그램 :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7년이내 기업 대상
- 국내 권리화 지원 : 도내 중소기업 대상

◦ 지원내용
- 글로벌IP기업육성 사업 : 해외 출원비용지원, 특허/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비영어권브랜드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등 종합지원
- 중소기업IP바로지원서비스 사업 : 특허/디자인맵,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등 종합지원(기업당 2건 이내)
- IP창출인프라구축 사업: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지식재산재능나눔사업, IP경영인클럽운영, 무료변리상담 운영, IP페스티벌 등
-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IP 기술·경영의 융·복합 컨설팅 지원
- 국내 권리화 지원사업 : 국내권리화 비용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 제주상공회의소<br>제주지식재산센터 |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 수립<br>·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사업비 교부 | |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br>·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 ·사업환류 및 평가 |

* 사업담당자 : 제주지식재산센터 현창헌 컨설턴트 (☏1661-1900)

#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 사업목적

○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했으나 자금력이 취약하여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초기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과 실용화 가능성 확인 등 사업화 지원

○ 등록된 우수 특허기술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지원형태 : 보조

◦ 사업시행 주체 :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 지원대상 :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등(개인발명가 제외)

※반드시 등록특허를 보유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등록 특허기술에 대한 초기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상공회의소<br>제주지식재산센터 | | 제주특별자치도 |
|---|---|---|---|---|
| ·기본계획 수립<br>·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에 사업비 교부 | ⇨ |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br>·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 | ·사업환류 및 평가 |

* 사업담당자 :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석훈 컨설턴트 (☏1661-1900)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운영사업

## ▣ 사업목적

◦ 제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이 FTA를 제주경제 실정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통해 지원

◦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촉진

## ▣ 사업내용

◦ 명 칭 : 제주FTA활용지원센터

◦ 위 치 : 제주상공회의소 1층(제주상공회의소 사무실 內)

◦ 운영기관 : 제주상공회의소

◦ 사업기간 : 2019.1.1 ~ 12.31

◦ 주요사업

- FTA현장방문 컨설팅 제공
- 수출·무역 분야별 전문가 초청 컨설팅
- 원산지인증수출자 획득 지원 컨설팅
- FTA관련 교육/설명회
-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지원
- 홍보자료 배부, FTA책자 제작, 언론보도
- FTA 관련 애로해소 등

* 사업담당자 : FTA활용지원센터 유종민 관세사 (☏ 064-759-2577)

#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부담 완화 및 원산지판정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FTA활용지원센터에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발급 지원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1 ~ 12.15

◦ 지원대상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원재료(부품)공급 협력사
※제주지역 소재 또는 제주지역 기업에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백만원 한도

◦ 사업내용
- HS코드 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소명자료의 적정성 검토
- 정확한 서류발급 지원, 역내산 전환 전략방안 등 컨설팅 지원

◦ 기대효과
- 제주지역 FTA활용률 증대 (간접 수출업체의 FTA활용능력 제고)
- 제주기업의 대내외적 신뢰도 제고
- 무역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업무애로 해소

* 사업담당자 : FTA활용지원센터 최준 원산지관리사 (☏ 064-759-2577)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 ▣ 사업목적

◦ 제주지역 내 기업 훈련수요 및 공급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산업계 수요기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개발 및 우수훈련기관 발굴·지원
◦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를 구축
◦ 제주지역 인력양성계획 수립
◦ 제주지역 내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고용시장 안정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 교육훈련 지원계획

◦ 향상과정(재직자 대상) : 30개 과정, 1,776명
→ 기업재직자 직무능력향상
◦ 양성과정(구직자 대상) : 4개 과정, 91명
→ 구직자와 지역기업 채용연계
◦ 교육훈련기관

| 구 분 | 개설과정/훈련인원 | 훈련과정 문의 |
|---|---|---|
| 제주한라대학교 | 10개 과정, 616명 | 064-741-6725 |
| 제주관광대학교 | 8개 과정, 635명 | 064-754-5860 |
|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 16개 과정, 616명 | 064-754-7158 |

※ 10인 이상 공통 교육훈련과정 개설 요청 시 신규개설(전액무료)

* 사업담당자 :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송진우 책임연구원 (☏ 064-757-2164)

# 7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 추천

## ▣ 사업목적

○ 제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제주지역 은행이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금)에게 은행 대출시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가 추천하여 이자부담 경감

## ▣ 사업내용

○ 지원(추천) 대상 : 제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제주지역 은행이 취급한 일반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대상업체)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이내(은행 대출취급기준 20억원)

○ 지원기간 : 1년(시설자금은 5년), 심사를 통해 매년 연장가능 최장 5년

○ 사업추진 절차

| ①대출신청 및 상담 | → | ②자금추천신청 | → | ③추천 심사 및 발급 | → | ④대출 심사 및 집행 |
|---|---|---|---|---|---|---|
| 대상기업, 은행 | | 대상 기업 | | 중소기업중앙회 | | 은행 |

## ▣ 지원효과

○ 금리 인하 : 한국은행이 대출취급액의 일부(50% 이내)에 대해 낮은 금리로 해당 은행을 지원하므로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낮아짐

○ 대출한도 증액 : 대출한도액 산정은 은행의 기준에 의하지만 총대출액의 50%만 은행의 대출액으로 산정되므로 기업의 대출한도 증액

## ▣ 문의 및 연락처

| 구 분 | 기 관 명 | 연 락 처 |
|---|---|---|
| 자금 및 대출 문의 | 해당 은행(제1금융권) | 해당 은행 |
| 추천서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064-758-8580 |

# 8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 1. 일학습병행 사업

기업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활용하기 위해 청년 취업희망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여 일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론교육과 현장훈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취업희망자와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서 일과 학습(현장훈련 등)을 통해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기업 중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자체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

※ 공동훈련센터형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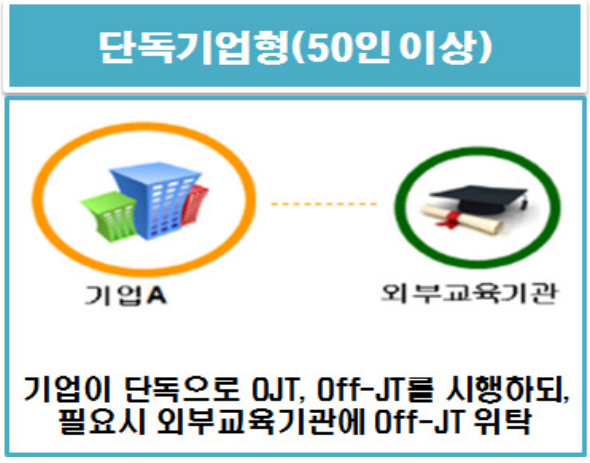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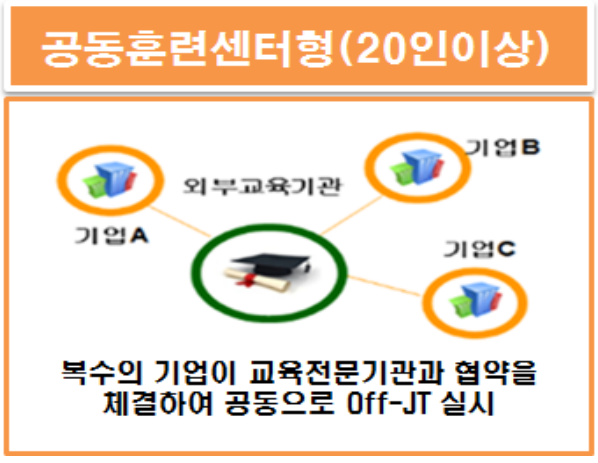


## ▣ 훈련대상: 1년이내 신규 입직자

## ▣ 훈련기간: 1년 이상(연 300시간~1,000시간) ※ 단, 총 훈련시간은 600시간 이상

## ▣ 지원사항

○ 프로그램 개발 : 기업별 460만원(1직무 기준)
○ 학습도구 지원 컨설팅 : 130만원~390만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 연간 400만원~1,600만원 한도
○ HRD 담당자 수당 : 연간 300만원 한도
○ 전담인력양성 : 100만원 내외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 최대 월 40만원
○ 식비·숙식비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재원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 ▣ 참여유형

**자체훈련**

사업주가 자체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실시

**위탁훈련**

사업주가 인증된 훈련기관에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훈련실시

## ▣ 지원대상

○ 실시주체 : 사업주(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 실시대상 : 15세 이상의 근로자(재직자, 채용 예정자, 구직자)

## ▣ 훈련기간 : 2일 16시간 이상(우선지원대상 기업은 1일 8시간 이상)

## ▣ 지원규모

○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
- 다만, 비용지원 한도 최소금액(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지원

## ▣ 지원사항

○ 훈련비 : 직종별 기준단가×훈련시간×수료인원×사업장규모별 훈련비 지원율
○ 훈련수당 : 구직자 및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양성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유급휴가 집체훈련과정에 한함)
○ 숙식비 : 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 (식비 : 1일 3,300원, 숙식비 : 1일 14,000원까지/1개월 330,000원 한도)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3.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체계적이고 자율적으로 축적·확산하도록 학습활동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

##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방송 및 통신업 300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등 2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 100인 이하

## ▣ 지원기간 : 1년(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 ▣ 지원사항

| 유 형 | 지 원 내 용 |
|---|---|
| 학습조 활동 | ▹ 기업당 2,400만원 한도<br>- 학습조활동 운영비, 교육비, 학습리더수당<br>※ 학습리더 수당 비용의 70% 지원, 30% 기업부담(필수) |
| 우수학습 활동 | ▹ 기업당 600만원 한도(학습활동 경진대회)<br>※ 총 소요 비용의 70% 지원, 30% 기업부담(필수) |
| 학습 네트워크 | ▹ 기업당 100만원 한도(벤치마킹, 우수기관 현장방문 등) |
| 외부 전문가 | ▹ 기업당 300만원 한도(학습조직 구축, 컨설팅지원)<br>※ 총 소요 비용의 70% 지원, 30% 기업부담(필수) |
| 학습 인프라 구축 | ▹ 기업당 최대 2,000만원(성과평가를 거쳐 대상기업 선정)<br>※ 총 소요 비용의 70% 지원, 30% 기업부담(필수)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4. HRD우수기관 인증사업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에 대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달성한 우수 기업에 Best HRD **인증서**를 수여하여 **인적자원개발** 투자·촉진 지원하는 사업

## ▣ 지원대상

❍ 고용보험가입 사업장(공공부문 제외한 전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 공공부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문의

- 인증취득 기준 : 총 1,000점(인적자원관리:400점, 인적자원개발:6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취득한 기관을 인증심의 대상으로 선정

※ 단, 부문별 HRM 240점 미만, HRD 360점 미만 기관은 인증심의 대상에서 제외

## ▣ 시행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심사 결과보고 ➡ 인증결정 ➡ 인증수여

## ▣ 인증수여

❍ 인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동명의(名義)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서 수여

## ▣ 인증기관 지원정책

❍ 연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 지원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인증기업 정기근로감독 면제(단,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사실이 없어야 함)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지역 · 산업계 중심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C)를 설치하고 지역별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 『**인력수요·공급조사 → 공동훈련센터 훈련 → 인력채용**』 등에 이르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 지원 대상

❍ 양성훈련(채용 예정자) : 관련분야 취업희망자

※ 단,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을 2회 이상 수강한 자 및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은 교육훈련을 수강중인 자 제외

❍ 향상훈련(재직자) : 교육과정 협약이 체결된 도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고용보험을 납입하는 자

## ▣ 사업 수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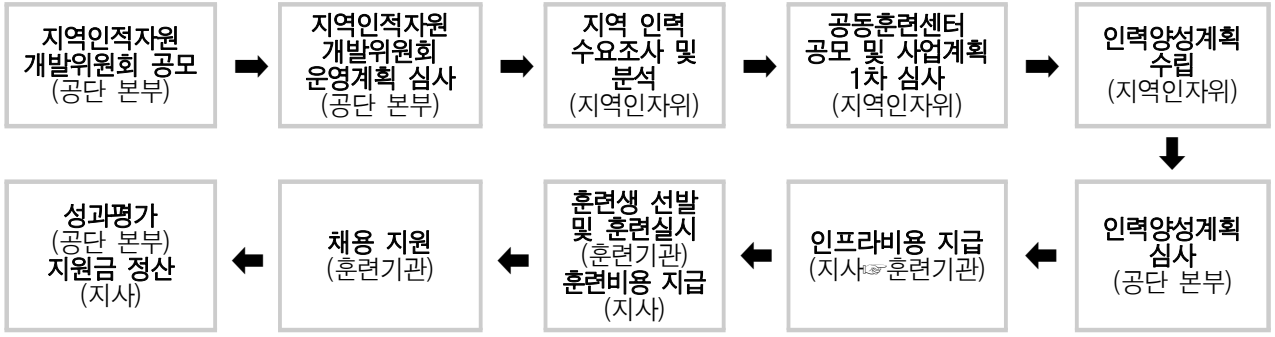


## ▣ 지원내용

❍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인건비 : 2억 2,000만원
- 운영비 : 3억 8,000만원(70%범위 내 지원)
- 선임위원 수당 : 연간 1,800만원
- 수요조사비 : 2억원

❍ 공동훈련센터

- 운영비 : 연간 3억원(인건비 최대 2억원 한도, 80% 범위 내 지원)
- 시설비 및 장비비 : 연간 15억원(80%범위내 지원)
- 훈련프로그램 개발비 : 연간 2억원 한도
- 훈련비용(훈련비+숙박비 등) : 실비(심사 단가) 지원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6. 중소기업 CEO 및 HRD담당자 연수사업

중소기업의 CEO 및 HRD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역량제고 연수, 중소기업 지원정책 홍보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

## ▣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 ▣ 연수 운영

○ 연수기간 : 3월~11월중 실시

○ 연수내용 : 중소기업 인적자원 활용 전략 및 중소기업 HRD 우수사례 공유

## ▣ 프로그램 구성

| 구분 | CEO 연수/조찬포럼 | HRD담당자 연수 |
|---|---|---|
| 시간 | ▹ 1일 2시간 이상 | ▹ 1일 4시간 이상 |
| 대상 | ▹ 중소기업 CEO | ▹ 중소기업 HRD담당자 |
| 주요 내용 | ▹ 중소기업 인재육성 방안 및 지속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HRD전략<br>▹ 성공CEO 특강<br>▹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인재 경영기법 등 | ▹ 중소기업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br>-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프로세스<br>- 중소기업 HRD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7. 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오랜 경험과 지식·기술을 축적한 우수 기술·기능 인력이 국가 핵심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 원 대 상 | | 지 원 내 용 |
|---|---|---|
| 기 업 |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기술 및 HRD 진단·컨설팅, 적합훈련 설계, 현장훈련지도, 기술특강 등 활동 지원 등 |
| 학 교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 현장 실습지도, 특강 운영, 현장실습 기업 발굴 등 활동지원 |

## ▣ 지원절차

신 청 ⇨ 협약체결 ⇨ 지원활동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은 공단, 산업현장교수, 기업/학교 3자간 체결

## ▣ 산업현장교수

❍ 해당분야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산업현장교수로 위촉된 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기능장
- 우수한 기술·기능을 보유한 현장 경력자 등

※ 산업현장교수 신청은 마이스터넷 홈페이지【산업현장교수-산업현장교수선정-신청하기】에서 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meister.hrdkorea.or.kr |
|---|---|

# 8.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장비자금 대부사업

사업주, 훈련기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훈련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

## ▣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려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 로자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

## ▣ 지원내용

○ 대부범위

- 훈련시설 신축(증축) 및 구입, 훈련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

※ 단,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 운영할 훈련직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시설 장비에 한함

○ 대부금액

- 대부 신청 금액의 적정성 검토 후 소요자금의 90% 범위내 지원

○ 대부 금리(2018년 기준)

| 대 상 | 대부금리 | 대부기간 |
|---|---|---|
| ▹ 중소기업 사업주· 사업주단체 | 1.0% | ▹ 시설 : 10년이내 (5년거치 5년상환) ※시설 + 장비 : 10년 ▹ 장비 : 평균내용연수 (최대 10년이내이며, 거치기간은 내용연수의 1/2) |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참여 사업주 · 사업주단체 | | |
| ▹ 우수훈련기관* | | |
| ▹ 일학습 병행 참여 기업·공동훈련센터 | | |
| ▹ 고용노동부 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1.5% | |
|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시설 | 2.0% | |
| ▹ 대기업 사업주·사업주단체(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포함) | | |
| ▹ 그 밖의 사업주·사업주단체(비영리 및 교육서비스 · 직업훈련 사업주 등) | | |
| ▹ 근로자단체 | |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9.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기능인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기능인력의 저변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산업발전을 촉진을 위해 기능경기대회를 개최

## ▣ 지방기능경기대회

○ 기　　간 : 매년 4월

○ 경기직종 : 50개 직종 중 참가자가 있는 직종

○ 참가자격 :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이 지방대회 개최일 현재 14세 이상인 자로서 국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자

○ 접 수

- 마이스터넷(https://meister.hrdkorea.or.kr:1443/)에서 접수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준비사항: 스캔사진(파일) 1매(3cm×4cm)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기능경기위원회(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입상자 우대

- 입상자 별 소정의 상금 지급(200천원 ~ 500천원)
- 전국대회 참가자격 부여,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시험면제 등

## ▣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

○ 기　간 : 매년 9월 또는 10월 중

○ 개최지 : 2018년(전라남도), 2019년(부산광역시)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meister.hrdkorea.or.kr |
|---|---|

# 10. 기능한국인 선정

숙련기술 및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성공한 숙련기술인의 사례를 발굴하여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하는 사업

## ▣ 선정개요

○ 선정인원 : 매월 1명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자격요건 : 전문계고 등을 졸업하고 10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기업체 CEO, 임원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

○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기능한국인 증서 및 상패 수여
- 성공사례 동영상, 수기집 배포, 언론홍보
- “기능한국인” 강소기업 지정(단,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 직업진로지도, 산업체 현장강사 활동

○ 제출서류 : 추천서, 졸업증명서, 공적내용서, 개인정보이용조회동의서 각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11.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체류지원 사업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 지원 및 사업장 애로해소를 위한 통역지원 등 체류를 지원하는 사업

## ▣ 인력 도입 국가 : 16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 ▣ 도입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일부 제외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 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내륙 위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어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 ▣ 세부 사업내용

❍ 고용허가서 발급 및 도입위탁 업무

-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공단에 도입위탁 신청 (신청서류 : 도입위탁신청서)
- 도입위탁 신청을 접수한 공단 지부지사는 해당 사용자에게 수수료 입금액 및 입금계좌(가상계좌)를 발급

※ 도입수수료 : 60,000원+취업교육비(약 23만원 내외), 성실재입국: 119,000원

❍ 근로계약 체결 대행 : 근로계약서를 송출기관에 전송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원 : 사용자의 사증발급인증 신청을 위한 행정지원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도

- 인천공항에 도착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수속 지원 및 취업교육기관 인계

※ 취업교육기관은 건강검진 및 취업교육 실시 후 사용자에게 인도

##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항목 | 지 원 내 용 |
|---|---|---|
| 입국지원 | 입국업무지원 | ▹ 입국대행관련 수납 및 진행사항 안내<br>▹ 사증발급신청 관련 행정지원<br>▹ 근로계약 체결, 입국진행사항 안내 |
| 교육지원 |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 ▹ 동포취업 교육 접수<br>▹ 사업주 교육<br>▹ 재직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 |
| 고용체류 지원 서비스 | 상담 및 편의 제공 (통역지원) | ▹ 입국초 취업적응 모니터링<br>▹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br>- 사업내 애로갈등조정, 사업장변경 애로, 일상생활고충, 질병/부상/사망자 지원, 귀국관련고충지원, 언어소통, 행정신고 업무 등 |
|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운영 지원 | ▹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 운영지원<br>- 보험제도 및 보험가입·보험금청구 등 안내 |
| | 출국지원 | ▹ 출국예정자(출국자) 현지 한국기업 취업알선<br>▹ 귀국준비실태 모니터링 |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12.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접수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에는 일반 취업교육과 건설업 취업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

## ▣ 취업교육 접수대상

○ 일반 취업교육 : 외국국적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자

○ 건설업 취업교육 : 취업교육 이수자 중 건설업 취업희망자

## ▣ 취업교육 접수방법

○ 취업교육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http://eps.hrdkorea.or.kr/h2
- 신청절차 : 외국국적동포 취업교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취업교육비(수수료)

- 일반 : 합숙(148,000원), 비합숙(신규 102,000원, 재교육 65,500원)
- 건설업 : 60,000원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직업능력개발팀<br>☎ (064)729-0703,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

# 13.국가자격시험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능력평가체계 확립 및 기술(전문)인력의 역량 증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자격시험 운영

## ▣ 국가기술자격 시행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으로, 주로 국가기간산업과 관련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 시행

※ 국가기술자격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5개 등급으로 구분, 건축시공기술사 등 총 467개 종목 시행

○ 산업 환경 및 수요에 맞추어 신설 자격 종목 도입

| 등 급 | 종 목 명 | 주 요 내 용 |
|---|---|---|
| 기 능 장 | 잠수기능장 | ▹ 해양 건설 및 플랜트 현장에서 잠수 인력을 지도 감독하기 위한 고급인력 양성 자격 |
| 기 사 | 식육가공기사 | ▹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육류 가공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 |
| | 농작업안전 보건기사 | ▹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 요인 제거 및 관련 교육 수행 자격 |
| 산업기사 | 3D프린터개발 산업기사 | ▹ 3D프린터 제어회로, 기계장치, 제어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하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 |
| 기 능 사 | 3D프린터 운용사 | ▹ 제품 출력, 가공 등 3D프린터 운용을 통한 제품 생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 |

## ▣ 국가전문자격 시행

○ 전문 서비스분야의 필요에 의해 신설 및 운영되는 자격으로, 상담, 법률 등 면허적 성격의 자격 시행

○ 공인노무사 등 총 37개 자격 종목 시행

※ 제주지역은 행정사 등 13개 종목 시행

## ▣ 과정평가형 자격 시행

○ 산업현장 및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 훈련기관의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시 합격

|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자격시험팀<br>☎ (064)729-0702, 홈페이지 : www.Q-net.or.kr |
|---|---|

# 9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작성서식2 : 유관기관 주요시책

□ 유관기관 * 아래 목록은 2018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기준임

| 기 관 별 | 사 업 별 | 비고 |
|---|---|---|
|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 정책자금 지원 체계 및 중진공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 등 총 17개 사업 | |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 글로벌 바이어 초청 상담회, KITA 무역현장 진흥자금 융자 등 수출기업 지원시책 5개사업 | |
| 제주상공회의소 |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등 6개사업 | |
|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중소기업 신용공제 지원제도(공제사업기금) 참든든한 동행 노란우산공제사업 등 | |
| 한국산업인력공단제주지사 | 한국인력산업공단 주요사업 13개사업 | |
| 제주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주요지원사업 8개사업 | |
| KOTRA 제주사무소 | 수출기업 지원시책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aT사업(수출지원 시책 등) | |
|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퇴직(예정)근로자 전직지원 서비스외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 |
|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 | 무역보험료 지원 사업 |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제주지역본부 | 파트너기업제도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 |

※ **작성시 참고자료 확인**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경제/투자 → 기업지원 → 지원시책 (2018 중소기업지원시책)

**별첨 : 작성서식(예시)** **또는 자율서식**

※ 페이지 여백 꼭 준수 : 좌·우 20 / 위쪽·아래쪽 15 / 머리말·꼬리말 10

# 수출바우처사업

□ **(목적)** 내수기업을 포함한 수출실적 500만달러 미만기업 및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에 대해 수출 준비활동 및 해외 시장 진출 마케팅을 지원하여 수출액 확대 및 글로벌 역량강화

□ **(지원규모)** 총 985억원 2,662개사

□ **(지원내용)** 무역교육, 현지시장조사, 디자인 개발 등 해외진출 준비 활동 및 온·오프라인 해외진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 **(지원조건)** 최대 지원금 한도內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구 분 | 정부 지원금한도 | 지원비율* |
|---|---|---|
| 내수기업 | 30백만원 | ·매출액 100억원 미만 : 70%<br>·매출액 100~300억원 미만 : 60%<br>·매출액 300억원 이상 : 50% |
| 수출초보 | 30백만원 | |
| 수출유망 | 50백만원 | |
| 수출성장 | 80백만원 | |
| 글로벌강소 | 100백만원 | |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동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세부내역명 | 신 청 대 상 |
|---|---|
| 내수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0'인 내수 중소기업 |
| 수출초보 |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 수출유망 | 전년도 수출실적 '10~1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 수출성장 | 전년도 수출실적 '100~50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 |
| 글로벌강소 |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유효한 기업 |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접수 | | 평가·선정 | | 협약체결 | | 사업수행 | 정산 |
|---|---|---|---|---|---|---|---|
| 홈페이지 접수 (exportvoucher.com) | ➡ | 서류심사 및 서면/발표 평가 | ➡ |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 ➡ | 세부사업 승인 바우처 발급 |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
| '18.12월~1월 | | '19.2월말~3월 | | ~'19.3월말 | | '19.3월 ~ '19.2월말 | |
| 참여기업 | | (서류) 운영기관 (평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 | 운영기관/참여기업 | | 참여기업/수행기관 | |

□ **(문의처)**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64-753-8757,8

| 구 분 | 전 화 | 관할지역 |
|---|---|---|
|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 055-752-8580 | 전국 |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02-3460-3426~8 | 전국 |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 **(지원내용)**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

①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 중기부, 중진공, 무역협회, 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6개 기관
②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 기보, 신보, 무보, 수은 등 4개 기관
③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미만인 기업

□ **(신청방법)**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19. 4월, 10월) | → | 신청·접수 | → | 평가 | → | 선정 및 지정서 교부 ('19. 5월, 11월) |
|---|---|---|---|---|---|---|

□ **(문의처)**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64-753-8757,8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목적)**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약 100억원

* 지방중소기업 육성, 신청기업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선정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 구분에 따라 차등(30억원 초과: 50%, 30억원 이하: 70%) 지원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신청방법)**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접수

□ **(추진절차)**

| | | | | |
|---|---|---|---|---|
| **사업 공고**<br>(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br>(중소기업) | ➡ | **평가**<br>(지방중기청) |
| | | | | ➡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br>(선정위원회, 관리기관) |
| | | | | ⬇ |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br>(관리기관) | ⬅ | **완료보고서 확인**<br>(관리기관) | ⬅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br>(참여기업) |
| | | | | ⬅ **중간보고**<br>(관리기관↔참여기업) |

□ **(문의처)**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64-753-8757,8

# 수출컨소시엄

□ (**목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업종별 또는 지역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시장 파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 도모

| 사전준비(1단계) | | 현지파견(2단계) | | 사후관리(3단계) |
|---|---|---|---|---|
| 현지시장조사 및 홍보, 바이어 사전 발굴 등 | ⇒ |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부스·상담장 임차, 장치, 차량, 통역 등) 등 | ⇒ | 바이어 국내초청 상담회, 국내 업체방문 등 |

□ (**사업기간**) 2019. 3월 ~ 2020. 2월

□ (**지원규모**) 155.5억원

□ (**추진절차**)

| 계획수립 및 공고 | | 주관단체 모집·선정 | | 참여기업 모집 | | 사업수행 | | 평가 및 사후관리 |
|---|---|---|---|---|---|---|---|---|
| 중소벤처기업부 | ⇨ | 중기중앙회·외부 선정평가위원회 | ⇨ | 주관단체 | ⇨ | 주관단체 | ⇨ | 중기중앙회 |

□ (**지원 대상 및 선정규모**) 약 180개 컨소시엄 내외

| 구분 | | 현지파견(2단계) 수행방식 | 규모 |
|---|---|---|---|
| 참여기업 구성 | 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 | 업종별 단체 및 해외마케팅 전문기업이 주관하여 현지 파견(상담회 또는 전시회) 운영 | 160개 |
| | (온라인 수출컨소시엄) | 중소벤처기업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연계 구성 | (5개) |
| | 프랜차이즈 수출컨소시엄 | 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며, 현지 파견(상담회 또는 전시회) 운영 | 5개 |
| |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별 전략품목 선정, 지역 주관단체를 중심으로 현지파견(상담회 또는 전시회) 운영 | 15개 |

□ (**지원내용**) 사전교육 비용, 현지 파견시 부스·상담장 임차료 및 마케팅 비용, 국내상담회의 경우 바이어 초청 비용 및 일비 등 지원

□ (**문의처**) 제주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064-753-8757,8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

□ **(목적)**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홈쇼핑 한류,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 **(지원규모)** 115억원 1,300여개사 (한류예산 24억→ 60억 증가)

□ **(지원내용)** 대기업 해외거점, 협단체 공동진출, 홈쇼핑 해외 플랫폼, 한류 문화행사 등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및 수출활동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업 : 중소기업(5개이상)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동반진출 사업 신청 주체

◦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함께 동반진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

□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과제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접수방법 : http://www.win-win.or.kr 접속 → 재단소식/공지사항→첨부서식(신청서) 작성(기명날인 必)→이메일(gw@win-win.or.kr) 접수→접수 확인

□ **(추진절차)**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 ⇨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공고 | ⇨ | 주관기업 신청 사업 심의·선정 | ⇨ | 참여기업 모집·선정 | ⇨ | 사업수행 및 정산 |
|---|---|---|---|---|---|---|---|---|
| 중기부 | | 협력재단 | | 심의조정위원회 | | 협력재단 /주관기업 | | 주관기업 참여기업 |

□ **(문의처)**

| 관리기관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이메일 |
|---|---|---|---|
|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 해외거점 | 02-368-8758 | gw@win-win.or.kr |
| | 해외홈쇼핑 | 02-368-8755 | |
| | 한류연계 | 02-368-8725 | |

#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 **(목적)**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촉진

□ **(지원규모)** 381억원

□ **(지원내용)**

○ (저변확대) 큐텐, 카페24 등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내수 전자상거래 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추진(`19, 80억, 3,000명)

* (협업모델) 후보기업 추천(큐텐) → 지원대상 확정 및 수행사 선발(중기부) → 온라인수출 실습(큐텐/수행사) → 우수기업에 MD 1:1 매칭 서비스 제공(큐텐)

○ (성장지원) 판매대행을 통한 간접수출 단계를 거쳐 자사몰 보유기업으로 성장지원 (‘19, 100억원)

* ‘19년 지원계획 : (전문몰) 50개사, 최대 4천만원, (판매대행) 2,500개사, (인센티브) 상위 10% 기업 인센티브 최대 5천만원

○ (공동물류) 온라인 수출물량(개별·소량 배송) 집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현지 반품·교환·반송 지원(‘19, 128억, 1,200개사)

○ (B2B) 시공간 제약, 일회성 등 오프라인 전시회의 한계 극복을 위한 품목별 온라인 전시회* 개최(‘19, 50억, 600개사) 및 환불보증 상품** 개발

* 온라인을 통해 해외 구매자(바이어)를 상시 유치하고, 원격· 오프라인 수출 상담과 연계하여 실질적 계약 체결 지원

* 해외 바이어가 중기제품 온라인 구매시 환불보증(‘19.상, 2만달러 한도)

□ **(신청방법)**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를 통해 사업 신청 및 접수

□ **(문의처)**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 1.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table>
<tr><td>개 요</td><td>○ 국내 유일의 농림수산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농어민,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등 모든 농수산물 수출정보 수요자</td></tr>
<tr><td>지원분야</td><td>○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td></tr>
<tr><td>지원내용</td><td>○ 기본이용 카테고리
<table>
<tr><th>구 분</th><th>서 비 스 내 용</th></tr>
<tr><td>뉴스</td><td>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전성 정보</td></tr>
<tr><td>품목</td><td>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td></tr>
<tr><td>국가</td><td>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td></tr>
<tr><td>제도</td><td>비관세장벽, 인증, 첨가물 등</td></tr>
<tr><td>자료</td><td>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카드뉴스 등</td></tr>
<tr><td>통계</td><td>월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정보</td></tr>
</table>
○ 해외시장맞춤조사 : 개별업체 희망정보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td></tr>
<tr><td>이용방법</td><td>○ 농수산식품수출정보 KATI<br>-홈페이지 및 모바일: www.kati.net<br>-SNS 채널: (페이스북)www.facebook.com/2017KATI, (카카오톡 ID)kati<br>○ 해외시장맞춤조사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최신 수출 정보 One-stop 제공<br>○ 통관문제사례 DB구축 및 비관세장벽 이슈 제공<br>○ 국가 및 품목 정보 제공</td></tr>
<tr><td>담당부서</td><td>○ KATI 이용<br>- aT 수출정보부 조민지 사원(061-931-0879)<br>○ 해외시장맞춤조사<br>- aT 수출애로상담실(02-6300-1119)</td></tr>
</table>

# 2. 수출확대지원 컨설팅

<table>
<tr><td>개 요</td><td>○ 국내 농식품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 기업은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기수출업체는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확대 도모</td></tr>
<tr><td>지원대상</td><td>○ 중소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기업 제외)<br>○ AG·HS코드로 분류되는 농축산물 대상</td></tr>
<tr><td>지원분야<br>및<br>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지원분야</th><th>지원내용</th></tr>
<tr><td>심층컨설팅</td><td>▸ 컨설턴트 그룹-개별기업간 장기간 컨설팅 수행<br>① 수출첫걸음(초보기업) : 무역실무 능력배양, 통관·검역,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취득 등 수출 필요조건 충족 등 국내 수출인프라 구축, 마켓테스트<br>② 신시장개척(기수출업체) : 신규 해외 바이어 발굴, 거래알선·체결, 유통망입점, 샘플수출, 해외 통관·검역 등 시장개척</td><td>[장기 6개월 이내]<br>① 수출첫걸음 분야 : 컨설팅 비용의 80% 정부지원<br>② 신시장개척 분야 : 컨설팅 비용의 80% 정부지원</td></tr>
<tr><td>현장코칭</td><td>▸ 개별 전문위원-개별기업간 단기간 컨설팅 수행<br>① 수출실무: 금융/보험, 라벨링/포장, 통관검역, 물류효율화, 해외마케팅, 생산·품질관리, 신상품 개발/상품화, 법률상담 등<br>② 수출FTA활용 : 원산지 판정/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등록, 원산지 사후검증 지원, 원산지 관리시스템 설치보급</td><td>[단기 5일 방문 코칭]<br>o 방문컨설팅 비용정액 지원<br>o 업체 자부담금 : 10만원<br>*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무료</td></tr>
</table>
</td></tr>
<tr><td>추진절차</td><td>○ 심층컨설팅<br>공고 ▶ 접수 ▶ 무료 기업 현장방문 진단 ▶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서 작성 ▶ 수행계획서 심의 ▶ 자부담금 납입 ▶ 협약체결 ▶ 컨설팅 착수 ▶ 중간점검 ▶ 컨설팅 완료 ▶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br>○ 현장코칭<br>공고 ▶ 지원업체 신청 ▶ 상담 ▶ 업체 선정 ▶ 전문위원 매칭 ▶ 자부담금 입금 ▶ 컨설팅 수행 ▶ 만족도조사 및 완료점검</td></tr>
<tr><td>신청방법</td><td>○ http://global.at.or.kr 또는 http://www.foodbiz.or.kr</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수출기업육성부 전명희 과장(061-931-0862)</td></tr>
</table>

* 위 사업 지원내용은 향후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 변동가능

# 3. 현지화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시장확대를 위한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 및 상품 분석·홍보</td></tr>
<tr><td>지원대상</td><td>○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td></tr>
<tr><td>지원분야 및 지원내용</td><td>○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19국<br>- (동아시아) 중국(홍콩 포함), 대만, 일본<br>-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등<br>- (기타) 미주(미국, 캐나다), EU(프랑스, 독일 등), 중동(UAE)<br>○ 지원방법 : 변호사, 통관 전문가 등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 활용 지원 추진<br>○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주요 내용</th></tr>
<tr><td>비관세 장벽해소</td><td>· 현지법률· 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table>
<tr><th>지원분야</th><th>지원(자문) 내용</th></tr>
<tr><td>법률일반</td><td>-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무법률 등</td></tr>
<tr><td>통 관</td><td>-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td></tr>
<tr><td>SPS</td><td>-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td></tr>
<tr><td>기 타</td><td>- 기타 현지 비즈니스</td></tr>
</table></td></tr>
<tr><td>성분 검사</td><td>· 현지 규정, 표준단위에 적합한 제품 영양성분 분석 및 검사 지원</td></tr>
<tr><td>라벨링 지원</td><td>·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등록) 지원</td></tr>
<tr><td>상표권 지원</td><td>·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표권 사전상표검색 및 출원 대행 지원<br>* (신규) 마드리드 상표권 지원</td></tr>
<tr><td>중국 시험수출 One-stop 지원</td><td>· 대중국 시험수출물량「통관 사전준비·물류·보관·마케팅」단계적 시범지원</td></tr>
<tr><td>포장패키지 현지화</td><td>· 현지감각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td></tr>
<tr><td>바이어 특화지원</td><td>· 바이어 경영진단, 코칭 및 컨설팅<br>· 식품 위생검사비(사전검역 포함),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지원</td></tr>
</table>
*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br>*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br>* 포장패키지 및 바이어 특화지원 사업은 수출업체가 아닌 해외 바이어만을 대상으로 함</td></tr>
<tr><td>이용방법</td><td>◦지원기간 : 연중 수시<br>◦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전산 신청<br>◦신청서류 : 현지화사업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br>◦모집공고 : www.at.or.kr, www.kati.net, global.at.or.kr 홈페이지 게시</td></tr>
<tr><td>담당부서</td><td>◦(농식품) aT 수출정보부 (hjh@at.or.kr)<br>◦(수 산) aT 수산수출부 진경훈 사원(061-931-0854)</td></tr>
</table>

## 2 수출품목육성 · 발굴

# 4. 수출통합조직 육성

| | |
|---|---|
| 개 요 | ○ 신선농산물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단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단계적 수출통합조직 육성 지원 |
| 지원대상 | ○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전문 통합마케팅조직<br>- 현행 수출선도조직 구성 품목은 수출통합조직화 추진, 미구성 품목은 생산자 중심 조직화 후 지원 |
| 신청요건 | ○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전문 통합마케팅조직<br>- 해당품목별 생산자비율 75%,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이 90%이상이며, 수출물량 및 가격, 품질 등을 수출통합조직내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 가능 조직 |
| 지원내용 |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전체<br>○ 지원내용 : 현행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 지원(수출통합조직화 육성 지원)<br>- 기반조성 인센티브 지원 : 국가전체 수출 점유율 및 운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4천만원~5억원 지원(총사업비 80% 이내)<br>-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br>- 생산출자 인센티브 지원 : 생산 출자 비율 평가결과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 |
| 진행절차 | ○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br>-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현행 수출선도조직 세부추진계획 준용 |
| 문의처 | ○ aT 농산수출부 장정호 차장(061-931-0822)<br>박세정 대리(061-931-0829) |

# 5.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 | |
|---|---|
| 개 요 | ○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지원 |
| 지원대상 | ○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등 수출선도조직 선정업체 |
| 신청요건 | ○ 생산자 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마케팅 법인<br>○ 수출전문단지, 생산자 단체와의 출하약정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
| 지원내용 |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br>('17년 지정품목 :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양배추, 배, 사과, 감귤, 키위,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절화류, 백합, 포도, 당조고추)<br>○ 지원내용<br>- 기반조성 인센티브 지원 : 국가전체 수출 점유율 · 수출규모 및 운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4천만원~5억원 지원(총사업비 80% 이내)<br>- 수출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br>- 생산출자 인센티브 지원 : 생산 출자 비율평가결과 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3~5% 지원<br>* 수출활성화 및 생산출자 인센티브는 수출통합조직 육성을 위해 조직화 단계별 1～2% 감축 |
| 진행절차 | 운영계획 수립 (연초) ▶ 모집공고 ▶ 사업자 선정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
| 신청방법 |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알림마당〉공지사항) → 신청서작성·제출(본사)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지원업체 선정 → 약정체결(관할지사) → 사업추진 |
| 문의처 | ○ aT 농산수출부 장정호 차장(061-931-0822)<br>박세정 대리(061-931-0829) |

# 6. 수출상품화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수출유망 고부가상품 발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기여</td></tr>
<tr><td>지원대상</td><td>○ 신선 농산물 및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br>○ 지원내용
<table>
<tr><th>구분</th><th>지원내역</th><th>비고</th></tr>
<tr><td>1단계</td><td>· 상품개발·개선 및 마켓테스트비용<br>-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50백만원</td><td>-</td></tr>
<tr><td>2단계</td><td>·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마케팅비용<br>-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50백만원</td><td>※ 2017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td></tr>
</table>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제외</td></tr>
<tr><td>선정기준</td><td>○ 서류전형 → 계량평가(1.5배수) → 해외aT추천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br>○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br>○ 계량평가(100점)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공개발표평가 대상업체 선정<br>○ 공개발표평가(10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1월) ▶ 사업 약정체결 (1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 (12월)</td></tr>
<tr><td>모집시기</td><td>○ 2018.1.17.(수) 18:00까지</td></tr>
<tr><td>신청방법</td><td>○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지원사업신청 → 해외시장개척 사업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신청</td></tr>
<tr><td>문의처</td><td>○ 식품수출부 이상길 차장 (061-931-0842)<br>강지혜 대리 (061-931-0843)<br>김채은 대리 (061-931-0848)</td></tr>
</table>

# 7.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table>
<tr><td>개 요</td><td>○ 국내 우수 농식품 브랜드 대상 마케팅 집중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 도모</td></tr>
<tr><td>지원대상</td><td>○ 신선농산물, 정부인증*보유, 주원료를 국산원료로 사용하는 업체<br>*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나’형), 6차산업화인증, 지리적표시인증(GI)</td></tr>
<tr><td>지원내용</td><td><table>
<tr><th>구 분</th><th>세부사항</th></tr>
<tr><td>지원내용</td><td>○ 목표국가 진출을 위한 브랜드 등록·홍보 마케팅, 브랜드 컨설팅 비용 등</td></tr>
<tr><td>지원한도</td><td>○ 총 사업비의 80%이내 (업체당 최대 2억원)<br>○ 지원비율 : 1~3년차(80%), 4~5년차(50%)<br>* 약정서에 기재한 총사업비의 80% 이상 집행 시 정산 가능</td></tr>
<tr><td>지원업체</td><td>○ 12업체 내외</td></tr>
</tabl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td></tr>
<tr><td>선정기준</td><td>○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br>-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br>- 평가구성(100점)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br>- 계량평가(30점) : 수출실적,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등 계량실적 평가<br>- 발표평가(7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 및 심사<br>- 최종선정 :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정<br>* ‘17~18년 연속지원 업체 : 계량·비계량 합산 70점 이상 획득 업체<br>* ‘18년 신규 지원업체 : 계량·비계량 합산 60점 이상 획득 업체</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선정 (1월) ▶ 약정체결 (2월) ▶ 사업추진 (2~11월) ▶ 정산 및 평가 (12월)<br>* 사업추진 기간 내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2018.1.19.(금) 18:00까지<br>○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r><td>문의처</td><td>○ aT 식품수출부 이상길 차장(061-931-0842)<br>정재열 과장(061-931-0845)<br>박은정 대리(061-931-0849)</td></tr>
</table>

# 8. 농식품 스타콜라보 마케팅

<table>
<tr><td>개 요</td><td>○ 정부인증 농식품 등 우리 우수 농식품 수출업체와 한류스타와 매칭을 통한 제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td></tr>
<tr><td>지원대상</td><td>○ 신선농산물, 정부인증*보유, 주원료를 국산원료로 사용하는 업체<br>*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나'형), 6차산업화인증, 지리적표시인증(GI) 등</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table>
<tr><th>구 분</th><th>농식품 스타 콜라보 마케팅</th></tr>
<tr><td>지원내용</td><td>○ 한류스타와 연계한 홍보 콘텐츠 제작비용, 상품 온/오프라인 해외 판촉홍보 등</td></tr>
<tr><td>사업비 지원한도</td><td>○ 총 사업비의 80%이내 (업체별 50백만원 한도)</td></tr>
<tr><td>선정방법</td><td>○ (대행업체) 연예기획사 등 업계에서 참여의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서 접수 및 내·외부 평가위원회 구성<br>○ (지원업체) 희망 수출업체(수출상품) 모집 및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선정</td></tr>
<tr><td>사업량</td><td>○ 8업체 내외</td></tr>
</table>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td></tr>
<tr><td>선정기준</td><td>○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발표평가(선정위원회) → 사업자 선정<br>- 평가대상 : 업체별 사업 계획서<br>-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br>- 평가구성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면접심사)<br>- 최종선정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시 추가선정 가능)<br>* 비계량평가 시 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4인 이상)을 통해 객관성 제고<br>* 대행업체 선정은 별도 평가방법으로 추진</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3월) ▶ 업체선정 (3월) ▶ 약정체결 (3월) ▶ 사업추진 (4~11월) ▶ 정산 및 평가 (12월)</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3월 중<br>○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r><td>문의처</td><td>○ aT 식품수출부 성국경 차장(061-931-0841)<br>고현미 대리(061-931-0844)<br>한다솔 대리(061-931-0847)</td></tr>
</table>

# 9.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

<table>
<tr><td>개 요</td><td>○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별 필요 서비스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육성</td></tr>
<tr><td>지원대상</td><td>○ 최근 3년간(연속)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 · 중견기업<br>* 대기업 및 수산물 수출업체는 제외</td></tr>
<tr><td>지원내용</td><td>○ 상품개발에서 해외시장개척까지 수출 중소 · 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수출 전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8개 사업) 지원
<table>
<tr><th>단계</th><th>사업명</th><th>주요 지원 내용</th></tr>
<tr><td rowspan="3">1<br>수출<br>준비</td><td>수출<br>컨설팅</td><td>▪(심층컨설팅) 무역실무, 제품개발 등, (현장코칭) 수출실무 등</td></tr>
<tr><td>수출<br>상품화</td><td>▪(기술개발) 레시피, 연구용역 등, (전문가초청) 상품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청비, (포장디자인)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시장조사) 해외 시장조사, 자료 외국어 번역비 등, (샘플 운송통관) 샘플 운송 통관비 및 수입국 검사비, (지적재산권 출원) 특허, 디자인 등록</td></tr>
<tr><td>해외인증</td><td>▪해외 인증 획득 및 인증 비용 심사</td></tr>
<tr><td rowspan="3">2<br>해외<br>진출</td><td>개별박람회</td><td>▪해외 전시회 참가 비용(부스임차비, 장치비 등)</td></tr>
<tr><td>개별바이어</td><td>▪해외 바이어 초청 비용(항공료, 체재비 등)</td></tr>
<tr><td>해외판촉</td><td>▪온·오프라인 유통매장 판촉비(임차비, 장치비 등)</td></tr>
<tr><td rowspan="2">3<br>경쟁력<br>강화</td><td>FTA특혜관세</td><td>▪수출업체 원산지 관리 컨설팅 및 증명서 발급 대행</td></tr>
<tr><td>글로벌<br>브랜드육성</td><td>▪(브랜드 등록) 해외 상표출원 및 등록비용, (브랜드 홍보) 매스미디어, 인터넷, 옥외 광고 제작광고비, (소비자 체험) 시음·시식 등 소비자 체험 마케팅비,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컨설팅, (홍보물 제작) 카탈로그, 포스터 등 제작비용</td></tr>
</table>
* 지원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 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추진절차</td><td>신청 및 접수 (‘18.2.7 ~ ‘18.2.28) ➡ 평가 및 선정 (‘18.3월 중) ➡ 협약 체결 (‘18.3월 중) ➡ 바우처 발급 (‘18.3월 중) ➡ 수출 지원 (‘18.3 ~ 12월) ➡ 바우처 정산 (~ ‘18.12월)</td></tr>
<tr><td>지원한도</td><td>○ 집행 사업비의 80%(270백만원 한도)<br>* 1개 사업 비중이 전체 바우처 사용 포인트의 50% 초과할 수 없으며, 수출컨설팅 사업은 업체당 바우처 사용한도 35백만원 제한</td></tr>
<tr><td>선정방법</td><td>◦ 사업공모 → 1차 서류심사(계량) → 2차 선정위원회 심사(면접평가)<br>- (1차 계량)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여부, 재무건전도 등<br>* 1차 서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업체의 2배수 선발<br>- (2차 비계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과목표 도전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18.2.7~2.28<br>○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r><td>문의처</td><td>◦ aT 수출기업육성부 박정만 차장(061-931-0861)<br>◦ aT 수출기업육성부 조대성 과장(061-931-0863)</td></tr>
</table>

##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 10. 수출전문단지 조직화 교육

<table>
<tr><td>개 요</td><td>○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td></tr>
<tr><td>지원대상</td><td>◦지원대상 : 농식품부 훈령 제221호에 의한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td></tr>
<tr><td>지원품목</td><td>○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td></tr>
<tr><td>신청요건</td><td>◦ 동일품목 및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 단지 연합신청 및 수출업체 참여형태 우선지원 및 사업추진 최소단위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1개소<br>◦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침상, 안전성전담관리인력 고용여부 신청 필수요건(참여단지별)</td></tr>
<tr><td>지원내용</td><td>○ 농가인식개선, 시스템구축, 인력양성 등 3대 부문의 소요예산의 90%지원 (지원한도 : 소속농가수 50인이상 20백만원, 20인이상 15백만원, 20인미만 12백만원))
<table>
<tr><th>부문</th><th>세부지원내역</th></tr>
<tr><td>농가인식 개선</td><td>- 소속농가안전성교육, 생산기술품질관리교육, 수출국가별 검역(방제)교육을 위한 회의관련비용 및 농약사용매뉴얼·책자·품질품위 기준 포스터 제작<br>- 컨설팅비, 회의실 임차, 책자 및 인쇄물 제작 등 인쇄비</td></tr>
<tr><td>안전성시스템 구축</td><td>- 농약·병해충 기록 전산시스템구축, ERP시스템 구축, 농약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등 IT관련 시스템 개발 및 농약 보관박스 제작 등</td></tr>
<tr><td>전문인력 양성</td><td>- 안전성 전담관리인력 워크샵(식비포함)·선진농업사례 현장조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등 자격 취득 비용, 전문서적 구입비용</td></tr>
</table></td></tr>
<tr><td>담당부서</td><td>○ aT 농산수출부 이주용 과장(061-931-0831)<br>이나래 대리(061-931-0832)</td></tr>
</table>

# 11. 안전성조사

| | |
|---|---|
| 개 요 | ○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
| 지원내용 |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br>-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br>-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br>*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br>- 지원내용 :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br><br>◦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br>-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br>-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br>*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br>- 지원내용 :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br><br>◦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br>- 지원품목 : 가공식품 전반<br>- 지원내용 : 對 일본 수출 시 수입식품 의무검사주기 완화 및 수입시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서비스 지원 |
| 추진절차 및 이용방법 |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br>운영계획 수립 (본사) ▶ 모집공고 (본사, 연중) ▶ 검사비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업체) ▶ 신청서류 검토 (지역본부) ▶ 검사비 지원 (지역본부)<br><br>○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br>운영계획 수립 (본사) ▶ 모집공고 (본사, 연중) ▶ 신청서류 제출 (수출업체→본사) ▶ 서류 검토 및 일본후생노동성 등록 (aT→한일대사관→일본후생노동성) |
| 담당부서 | ○ (잔류농약, 식품위생)<br>- 김시아 대리(061-931-0823), 한유진 대리(061-931-0826)<br>- aT 각 관할지역본부<br>○ (대일수출가공식품사전등록) 정재열 과장(061-931-0845), 박은정 대리(061-931-0849) |

# 12. 선도유지제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사업</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산물 생산자 조직<b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br><br>○ 지원 한도 : 업체당 연간 40백만원<br>*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br>*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br>* 선도조직 연합법인에 대해서는 연합법인 참여업체별 지원한도 인정<br><br>○ 지원 기준<br><table><tr><th>선도유지제명</th><th>지원부류(품목)</th></tr><tr><td>전처리제</td><td>화훼류</td></tr><tr><td>이산화탄소 흡수제</td><td>김치류</td></tr><tr><td>이산화탄소 처리제</td><td>딸기, 버섯</td></tr><tr><td>훈증살균제</td><td>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키위</td></tr><tr><td>선도유지팩/패드</td><td>과실류, 채소류</td></tr></table>*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atess.at.or.kr 참조</td></tr>
<tr><td>신청방법</td><td>○ 신청 방법 :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전산신청 후 aT 관할지역본부에 선도유지제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연중)<br><br>○ 제출 서류 :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및 세부사용내역서<br>*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제출 필수<br>* 수출신고필증, 선도유지제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td></tr>
<tr><td>담당부서</td><td>○ aT 농산수출부 김시아 대리(061-931-0823)<br>○ aT 지역본부 담당자</td></tr>
</table>

# 4 통관 및 물류지원

## 13. 수출물류비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10만$ 이상인 업체<br>- 단, 〈일본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에 따른 ID 대상품목(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참외, 배추)은 ID 보유 수출 건 및 사전등록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td></tr>
<tr><td>지원품목</td><td>○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br>* 지원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td></tr>
<tr><td>지원내용</td><td><table>
<tr><td>지원한도</td><td>· 표준물류비의 29%를 한도로 매월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9% 이내/수출업체)와 지자체(20% 이내/수출업체+농가분) 분담하여 지원</td></tr>
<tr><td>내 용</td><td>· '18.1.1~12.31 수출물량 지원(B/L상의 수출선적일 기준)<br>*'18.1.1~2.28까지 수출선적분은 2017년 지원지침, '18.3.1~12.31까지 수출선적분은 2018년 지원지침에 따름<br>· 중앙정부 매월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td></tr>
<tr><td>지원액</td><td>· 수출물량 × 품목별·국가별 지원단가(표준물류비의 29% 이내)</td></tr>
</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지원업체 사전등록 ▶ 신청접수 (매월 초)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매월 말)</td></tr>
<tr><td>신청방법</td><td>○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지원신청서(전산출력) 및 수출증빙자료 제출(관할aT지역본부)</td></tr>
<tr><td>담당부서</td><td>○ aT 농산수출부<br>- 담당자 : 이보령 대리(061-931-0825)<br><br>○ aT 지역본부별 담당자
<table>
<tr><th>시도</th><th>지사</th><th>담당자</th><th>연락처</th><th>시도</th><th>지사</th><th>담당자</th><th>연락처</th></tr>
<tr><td>경기</td><td>서울경기지역본부</td><td>박지화</td><td>031)8060-6052</td><td>전남</td><td>광주전남지역본부</td><td>김주식</td><td>062)940-7015</td></tr>
<tr><td>인천</td><td>인천지역본부</td><td>장재완</td><td>032)272-3012</td><td>경북</td><td>대구경북지역본부</td><td>이수진</td><td>053)218-4907</td></tr>
<tr><td>강원</td><td>강원지역본부</td><td>이해민</td><td>033)920-1545</td><td>부산</td><td>부산울산지역본부</td><td>장지희</td><td>051)947-1086</td></tr>
<tr><td>충북</td><td>충북지역본부</td><td>권덕중</td><td>043)902-9526</td><td>경남</td><td>경남지역본부</td><td>안보람</td><td>055)274-4813</td></tr>
<tr><td>충남</td><td>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td><td>이현정</td><td>042)389-5023</td><td>제주</td><td>제주지역본부</td><td>강주미</td><td>064)748-9479</td></tr>
<tr><td>전북</td><td>전북지역본부</td><td>김기현</td><td>063)904-5873</td><td>-</td><td>-</td><td>-</td><td>-</td></tr>
</table>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협상결과에 따라 2023년까지 수출물류비를 철폐할 예정으로, 이에 대비해 2018년부터 수출물류비 단계적 감축 계획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td></tr>
</table>

# 14. 항공공동물류활성화

| | |
|---|---|
| 개 요 | ○ 항공공동물류 규모화, 공동화를 통해 신선농산물 수출 운송비 절감 유도 및 물류 경쟁력 제고 |
| 지원대상 | ○ 신선농산물 농식품 수출업체(화주)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br>- 공사와 MOU체결 공동물류노선 이용 수출물량에 대해 할인된 운임 제공<br>- 공동물류 참여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br><br>○ 인센티브<br>- (항공) 유류할증료의 50% 지원<br>- 지원한도 : 업체당 3천만원<br>* 수산·임산물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물량은 인센티브 지원 제외 |
| 진행절차 | ○ 수출업체<br>모집 및 신청(수시) ▶ 이용실적 보고 및 인센티브 신청(매월) ▶ 인센티브 지원(매월) |
| 신청방법 | ○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온라인 신청 → 공동물류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 지원신청서 작성 |
| 문의처 | ○ aT 중국수출부 이승훈 차장(061-931-0981)<br>김지원 사원(061-931-0983) |

# 15. 해외공동물류센터

<table>
<tr><td>개 요</td><td>○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냉장·냉동 물류서비스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의 80% 이내<br>- 업체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상이(5백만원~5천만원)
<table>
<tr><th>구분</th><th>지원대상</th><th>지원내용</th></tr>
<tr><td rowspan="2">해외공동물류센터</td><td>냉동·냉장창고</td><td>(신선) 이용료의 90%<br>(가공) 이용료의 70%</td></tr>
<tr><td>상온창고<br>(칭다오물류센터)</td><td>이용료의 50%</td></tr>
<tr><td>도쿄소포장센터</td><td>소포장센터</td><td>임차료의 60~80%</td></tr>
</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추진계획 수립 ▶ 모집 및 선정(상·하반기) ▶ 사업집행 및 정산(매월) (1~11월)</td></tr>
<tr><td>이용방법</td><td>aT해외지사<br>관리감독 ↓ ⑤ 비용정산<br>수출업체 ② 선적 → 위탁 물류업체 (창고) ④ 운송 → 유통업체<br>① 오더 및 계약체결 ↓ ④ 물품인도<br>③ 대금결제 ↖ 바이어</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 황 : 16개국 55개소<br>○ 계 획 : 17개국 58개소('18년)</td></tr>
<tr><td>문의처</td><td>○ aT 중국수출부 이승훈 차장(061-931-0981)<br>김지원 사원(061-931-0983)</td></tr>
</table>

# 16. 중국 콜드체인 구축사업

<table>
<tr><td>개 요</td><td>○ 농식품 냉장·냉동 물류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중국 내륙지역 콜드체인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 냉동·냉장식품 내륙시장 개척 강화</td></tr>
<tr><td>지원대상</td><td>○ 중국의 한국 농식품 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td></tr>
<tr><td>지원내용</td><td>○ 지원내용<br>– 칭다오물류센터→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80% 지원<br>- 주요 물류거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등) 공동물류센터에서 거점지역 내 근거리 배송 지원<br>- 냉장식품 및 신속운송이 필요한 소량 냉동식품 항공운송료 80% 지원<br><br>○ 지원한도 : 정기노선 및 비정기노선 업체별 10~50백만원<br>– ‘18년 이용업체 모집 및 기존업체 평가를 통해 업체당 한도 설정
<table>
<tr><th>구분</th><th>출발지역</th><th>도착지역</th><th>지원내용</th></tr>
<tr><td>정기선</td><td>칭다오<br>물류센터</td><td>·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br>–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td><td rowspan="2">냉동·냉장<br>운송료의<br>80%</td></tr>
<tr><td>정기선<br>(거점지역<br>내 배송)</td><td>거점지역<br>공동물류센터<br>(베이징, 상하이,<br>광저우, 청두)</td><td>· 거점지역 소비처<br>– 유통매장, 경소상 창고 등</td></tr>
<tr><td>비정기선</td><td>칭다오 물류센터</td><td>· 중국 내륙지역<br>–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td><td rowspan="2">냉동·냉장<br>운송료의<br>80%</td></tr>
<tr><td>비정기선<br>(항공운송)</td><td>칭다오<br>물류센터</td><td>· 중국 내륙지역<br>– 업체 항공운송 희망지역</td></tr>
</table></td></tr>
<tr><td>선정기준</td><td>○ ‘18년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table>
<tr><th>지원내용</th><th>지원방법</th><th>이용업체 선정</th></tr>
<tr><td>중국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80%)</td><td>운영실적에 의한 실비 정산<br>(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td><td>– 이용업체는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가 모집 및 선정하고, 업체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td></tr>
</table></td></tr>
<tr><td>진행절차</td><td>모집공고 (1월) ▶ 업체평가, 선정 (1월) ▶ 사업 약정체결 (2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연중) ▶ 정산 및 종합평가 (12월)</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18.1월 중~1월 말<br>○ 참가신청 :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및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td></tr>
<tr><td>문의처</td><td>○ aT 중국수출부 이승훈 차장(061-931-0981)<br>김지원 사원(061-931-0983)</td></tr>
</table>

# 17. FTA특혜관세 활용지원

| | |
|---|---|
| 개 요 | ○ FTA특혜관세 활용을 통한 수출업체 가격경쟁력 확보 및 수출확대 기회 활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애로사항 컨설팅 및 교육 |
| 지원대상 | ○ 수출 농산물 생산자단체/조직, 농식품 수출업체 |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br>[ 생산자조직·단체 ]<br>-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작성·관리 프로세스 구축<br>-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유통단계별 원산지 관리 전략 수립<br>-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 및 생산자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적용<br>[ 수출업체 ]<br>- FTA 관련 기본 교육 및 거래 현황 분석<br>- 거래 단계별 생산 및 공급 입증서류 확인방법(가이드라인) 교육<br>-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및 시스템 활용방법 교육<br>- 원산지 증명서 · 확인서 실제 발급 대행<br>※ 1:1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수출업체의 FTA 활용 및 통관 무역실무능력 제고 |
| 추진절차 | 2월: 사업공고 및 지원업체 모집 ▶ 3월: 지원대상 선정(생산자조직, 수출업체) ▶ 3~10월: 사업시행 ▶ 11월: 최종점검 및 결과보고 ▶ 12월: 정산 및 평가 |
| 이용방법 | ○ aT 홈페이지에서 전산 신청(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신청)<br>○ 모집공고 : www.at.or.kr, global.at.or.kr 웹사이트에 게시 |
| 추진현황 및 계획 | ○ 신청 기간 : 2018. 2월(예정)<br>○ 사업 시행 : 2018. 3~11월 |
| 담당부서 | ○ aT 수출정보부 (hjh@at.or.kr) |

# 18.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 지원을 통해 해외 신규바이어 발굴 및 잠재적 수출시장개척 도모</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b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td></tr>
<tr><td>지원품목<br>및<br>지원내용</td><td><table>
<tr><th>지원품목</th><th>지원내용</th></tr>
<tr><td>수출농식품 전반<br>(수산물, 임산물,<br>연초류 제외)</td><td>· 지원비율 : 바이어대상 샘플제공 국내외 통관·운송비의 90% 지원<br>· 지원한도 : 업체당 5백만원 이내<br>* 단, 정상 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 수출한 경우에 한함<br>*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 50kg 한도 내에서 지원<br>*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최대 4회 인정</td></tr>
</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수출지원시스템<br>(global.at.or.kr)<br>지원 신청 ▶ 관련 증빙검토 후<br>사업비 정산결과 보고<br>(월1회) ▶ 본사는 지사별 결과<br>취합후 정산지급</td></tr>
<tr><td>추진현황<br>및 계획</td><td>○ 샘플통관운송비지원사업 공고(1월)<br>○ 매월1회 사업비 정산 지급<br>○ 사업예산 : 100백만원<br>- 신선농산물 : 20백만원(20업체)<br>- 가공식품 : 80백만원(60업체)</td></tr>
<tr><td>이용방법</td><td>○『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지원 신청<br>→ 관련 증빙서류(통관·운송비 영수증, 마켓테스트 결과) 관할지역본부에 제출</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시장다변화T/F팀<br>- 담당자 : 송미정 차장(061-931-0884)</td></tr>
</table>

# 19. 수출보험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br>*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지원항목</th><th>환변동보험</th><th>단기수출보험</th></tr>
<tr><td>지원대상</td><td>일반형, 범위선물환,<br>옵션형(부분보장/완전보장) 가입비</td><td>선적후 및 농수산물패키지,<br>중소기업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td></tr>
<tr><td>지원비율</td><td>가입보험료의 95%</td><td>가입보험료의 90%<br>* 단, 단체보험은 100%</td></tr>
<tr><td>지원한도</td><td>30백만원 한도</td><td>30백만원 한도</td></tr>
</table>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br>*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td></tr>
<tr><td>진행절차</td><td>○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br>○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가입보험료의 5~10%)에 한하여 가입비 납부<br>- 단, 단체보험의 경우 aT에서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업체 자부담 없음<br>- 단체보험 가입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td></tr>
<tr><td>문의처</td><td>○ aT 농산수출부<br>- 담당자 : 김서연 대리(061-931-0827)<br>○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연락처
<table>
<tr><th>영업점</th><th>연락처</th><th>영업점</th><th>연락처</th><th>영업점</th><th>연락처</th></tr>
<tr><td>중앙지사</td><td>02-399-6964</td><td>대전세종<br>충남지사</td><td>042-526-3291</td><td>경남지사</td><td>055-286-9394</td></tr>
<tr><td>강남지사</td><td>02-551-0481</td><td>충북지사</td><td>043-236-1301</td><td>전북지사</td><td>063-276-2363</td></tr>
<tr><td>구로디지털지사</td><td>02-6300-6300</td><td>강원지사</td><td>033-765-1061</td><td>광주전남지사</td><td>062-226-4823</td></tr>
<tr><td>경기남부지사</td><td>031-259-7600</td><td>부산지사</td><td>051-245-3981</td><td>제주지사</td><td>064-751-6602</td></tr>
<tr><td>경기북부지사</td><td>031-932-3501</td><td>대구경북<br>지사</td><td>053-252-4932</td><td>시화출장소</td><td>031-499-5590</td></tr>
<tr><td>인천지사</td><td>032-422-2713</td><td>울산지사</td><td>052-261-1833</td><td>천안출장소</td><td>041-622-7516</td></tr>
</table></td></tr>
</table>

〈참고〉

## ▌환변동보험 종류▐

| 구 분 | | 내 용 | 특 징 |
|---|---|---|---|
| 일반선물환 (Forward) | | 환율하락시 보험공사에서 환차손(보험금) 지급하고, 환율상승시 업체에서 환차익(환수금) 납부<br>- 보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br>- 환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율하락시 보장탁월 하나, 환율 상승시 업체에서 부담 |
| 옵션형 | 범위제한 선물환 (Collar) | 일정구간에서는 보험금과 환수금 납부가 면제되는 상품<br>- 보험금 : 보장환율 -50원〉결제환율<br>- 환수금 : 보장환율 +50원〈결제환율 | ○ ±50원, ±100원, ±200원 구간에서 환차익, 환손실 인정<br>○ 보험요율 : 1 ~ 3%로 수시변동 |
| | 부분보장 옵션형 (Put Spread Option) |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최대 달러당 20 ~ 80원 한도 범위내)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 환율하락시에는 일정부분만 보장(최대 달러당 20 ~ 80원 한도 범위내)받고, 환율상승시 업체부담 없음 |
| | 완전보장 옵션형 (Put Option) | 환율하락시에는 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락분 전액 지급)하고, 환율 상승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 환율하락시 하락분 전액 보장 받고, 환율상승시 업체부담 없음 |

* 지원비율은 모두 가입보험료의 95%로 동일하며, 지원한도는 일반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부분보장형옵션을 합산하여 30백만원 한도임
*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문의 요망

##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eic.or.kr/) 영업점 연락처▐

| 영업점 | 연락처 | 영업점 | 연락처 | 영업점 | 연락처 |
|---|---|---|---|---|---|
| 중앙지사 | 02-399-6964 | 대전세종 충남지사 | 042-526-3291 | 경남지사 | 055-286-9394 |
| 강남지사 | 02-551-0481 | 충북지사 | 043-236-1301 | 전북지사 | 063-276-2363 |
| 구로디지털지사 | 02-6300-6300 | 강원지사 | 033-765-1061 | 광주전남지사 | 062-226-4823 |
| 경기남부지사 | 031-259-7600 | 부산지사 | 051-245-3981 | 제주지사 | 064-751-6602 |
| 경기북부지사 | 031-932-3501 | 대구경북지사 | 053-252-4932 | 시화출장소 | 031-499-5590 |
| 인천지사 | 032-422-2713 | 울산지사 | 052-261-1833 | 천안출장소 | 041-622-7516 |

〈참고〉

#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 ■ 상품개요

- 구　　성 : 기본위험과 선택위험
- 계약기간 : 1년
- 가입대상 : 농수산물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보상금액 : 책임금액 범위 내
- 가입방법 : 기본위험(대금미회수 위험) 가입 필수, 나머지 위험은 선택

## ■ 상품별 설명

| 구 분 | 기본계약 | 선 택 계 약 | |
|---|---|---|---|
| | 대금미회수위험 | 수입국 검역위험 | 클레임발생 위험 |
| 책임금액 | 1억원 ~ 3억원 | 1백만원 ~ 1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원 |
| 보상요건 |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 폐기 명령 | 바이어의 클레임 제기 |
| 보상내용 | 계약기간 중 모든 수출거래 | 훈증 및 폐기 비용 보상 | 클레임 처리비용 (조사, 소송 등) |
| 계 약 액 | 천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천만원 단위 |
| 보험요율 무신용장 | 신용장거래 0.3%<br>무신용장 2.0% | 4% | 0.7% |
| 보상거절 | 물품에 하자 또는 법령 위반 수출시 | | 본지사간 수출거래, 법령위반 및 수출대금 결제 만기일 경과후 발생한 클레임 |
| 보상시기 |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 | |
| 보 상 액 | 보험계약 범위내에서 보상 | 소독 및 폐기 비용 | 품질조사비 및 중재, 소송비100%, 재수입 또는 전매시 운송비 및 현지 창고 보관비 50% |

* 보험요율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와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차이점▐

| 구 분 | |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일반 단기수출보험 (선적후) |
|---|---|---|---|
| 품 목 | | 농·수·축·임산물 | 제한 없음 |
| 우대내용 | 담보위험 | 수입국의 행정규제조치 또는 검역기준 변경에 따른 통관불능 위험 포함 | - |
| | 보험료율 | 결제방법 및 기간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의 35% ~ 55% 수준 | - |

# 20. 해외인증 등록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br>*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br>*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td></tr>
<tr><td>대 상<br>인증제도</td><td>○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br>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농인증, ISO22000 등<br>* 단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특정 인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td></tr>
<tr><td>지원내용</td><td><table><tr><th>지원기준</th><th>지원범위</th><th>지원한도</th></tr><tr><td>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td><td>관납료(심사비, 등록비), 제품 시험비용 등</td><td>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td></tr></table></td></tr>
<tr><td>추진절차</td><td>지원신청서 제출 (‘18년 2월) ▶ 신청서 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 ▶ 인증 취득 후 관련증빙 제출 ▶ 증빙 검토 후 비용지원</td></tr>
<tr><td>추진현황<br>및 계획</td><td>○ 지원대상 선정업체가 인증 획득 완료 후 aT지사에 정산 요청</td></tr>
<tr><td>이용방법</td><td>○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사업 신청<br>○ aT본사에서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관할지사에 통보 / aT관할지사는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br>○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 지사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증빙서 제출<br>○ aT지사는 증빙서 검토 후 정산지원 결과를 본사 보고</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아태수출부<br>- 담당자 : 조유강 사원(061-931-0965)</td></tr>
</table>

## ① 할랄식품(Halal Food) 인증 소개

<table>
<tr><td>개 요</td><td>○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식품(Halal Food)’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식품을 의미<br>- 철저하게 할랄이 아닌 음식과 분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청결한 음식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요구<br>- 비할랄식품 :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저장·판매·처리·보존 과정상 돼지고기와 접촉한 식품, 모든 생물의 피 및 배설물, 주류성분이나 중독성분 함유제품 등</td></tr>
<tr><td>보급현황</td><td>○ 할랄의 시장규모는 ’12년 1조 88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world halal forum 자료)<br>- 2012년 전세계 인구의 18억 명, 2020년 전세계 인구의 30%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br>○ 할랄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비무슬림인 사이에서도 인기 상승<br>- 네덜란드의 할랄 쿠키·초콜릿 제조업체 마르하바 소비자의 25%는 비무슬림인</td></tr>
<tr><td>인 증<br>취득절차</td><td>○ 현재 한국이슬람교중앙회(KFM)가 할랄증명서 발급<br>- ’13년 7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 개발부)가 동등성을 인정하는 할랄 인증기관이 됨<br>○ 인도네시아 : MUI 부속기관인 LPPOM-MUI에서 발급<br>-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 인증은 협상 추진 중<br>- 품목별 100만 ~ 500만 루피아 및 약 1 ~ 2개월 소요<br>- 인도네시아에서 현행 할랄 인증은 권고사항이나 5년 후에는 의무사항으로 변경<br>○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인 MS1500:2009는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에 의해 개발된 할랄 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인증이며, GMP와 GHP와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br>
<table>
<tr><th>인증 절차</th><th>인증 로고와 인증서</th></tr>
<tr><td>Document Approval<br>↓<br>Premise Inspection/Audit<br>↓<br>Report Writing<br>↓<br>Panel Committee<br>↓<br>Issuance of Halal Certificate<br>↓<br>Monitoring and Enforcement</td><td>
</td></tr>
</table></td></tr>
<tr><td>해 외<br>발급기관</td><td>
<table>
<tr><th>국 가</th><th>발급기관</th></tr>
<tr><td>인도네시아</td><td>The Assesment Institute for Foods, Drugs and Cosmetics Council of Ulama(LPPOM-MUI)</td></tr>
<tr><td>말레이시아</td><td>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td></tr>
</table></td></tr>
<tr><td>소요비용</td><td>○ (국내) 품목당 약 100만원, (해외) 품목당 약 30백만원</td></tr>
</table>

## ② 코셔(Kosher) 인증 소개

<table>
<tr><td>개 요</td><td>○ ‘코셔(Kosher)’란 히브루어로 ‘적합한’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유대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란 의미로 사용됨<br>- 코셔에 해당하는 육류와 가금류는 반드시 규정된 방식대로 도살하여야 하며, 육류와 유제품은 함께 생산 또는 섭취 불가<br>○ 코셔 인증이란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통해 특정 식품의 코셔 기준에 부합 여부를 가리 는 제도</td></tr>
<tr><td>보급현황</td><td>○ 세계 코셔 시장 규모는 약 2,500억$<br>○ 미국의 코셔 시장규모는 ’13년 기준 13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되며 코셔 식품시장은 연평균 12.5%의 성장율을 보임<br>- 미국 수퍼마켓에서 판매된 식료품의 40%가 코셔 인증마크를 부착<br>- 무슬림 또한 코셔 식품을 먹을 수 있어 20억 무슬림 인구가 잠재시장으로 추정</td></tr>
<tr><td>인 증<br>취득절차</td><td>○ 인증기관 : 수백 개의 코셔 인증기관 중 OU, Star-K, KosherQuest 등이 가장 알려져 있으며 이 중 OU마크가 전체 코셔 제품의 70 ~ 80% 차지<br>* ADM, Cargill, Campbell, Coca Cola, Heinz, Nestle 등 세계적 식품기업 OU마크 선택<br>○ 인증종류 : 제품 종류에 따라 OU(우유, 육류 비포함), OU-D(유제품), OU-M (육류) 등으로 구분<br>○ 인증 절차 및 마크<br><table><tr><th>인증 절차</th><th>인증 로고</th></tr><tr><td>신청서 제출 → 생산 시설 검사 (OU 실현 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 시설 재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td><td>ORTHODOX UNION</td></tr></table>○ 소요기간 : 평균 3개월 소요</td></tr>
<tr><td>소요비용</td><td>○ 품목당 연간 $5,000 ~ $7,000</td></tr>
</table>

# 5 현지 유통망 개척

## 21.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① 종합박람회 참가

<table>
<tr><td>개 요</td><td>○ 주요 해외식품박람회별로 국내 수출업체를 모집하여 국가관 형태로 참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지원 대상</th><th>지원 비율</th><th>지원 한도</th><th>비 고</th></tr>
<tr><td rowspan="2">· 부스임차비</td><td>중소기업</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한국관 내 1부스 무상제공</td></tr>
<tr><td>대기업</td><td>50%</td></tr>
<tr><td rowspan="2">· 장치비</td><td>중소기업</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한국관 내 1부스 무상제공</td></tr>
<tr><td>대기업</td><td>50%</td></tr>
<tr><td rowspan="2">· 기본비품임차비</td><td>중소기업</td><td>100%</td><td rowspan="2">1부스</td><td rowspan="2">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td></tr>
<tr><td>대기업</td><td>50%</td></tr>
<tr><td>· 운송통관비 / 전기료<br>냉장(냉동)비품임차비</td><td>신선농산물<br>수출업체</td><td>100%</td><td>300만원</td><td>신선농산물에 한함</td></tr>
</table>
</td></tr>
<tr><td>추진절차</td><td>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2개월 전) ▶ 박람회 참가</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 : 연간 31회 참가<br>○ 계획 : ‘18년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 ’19년 참가계획 확정(’18.10월)</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연 2회, 상반기(4월, 10월)<br>○ 참가신청 : aT홈페이지(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br>○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td></tr>
<tr><td>담당부서</td><td>○ aT 구미수출부 유정림 차장(061-931-0971)</td></tr>
</table>

〈참고〉 '18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 구 분 | 주최국/도시 | 개최일정 |
|---|---|---|
| <종합박람회 > | | 31회 |
| 1. 두바이(Gulfood) | UAE / 두바이 | 2.18-22 |
| 2. 멕시코(Alimentaria) | 멕시코 / 과달라하라 | 3.6-8 |
| 3. 도쿄(FoodexJapan) | 일본 / 도쿄 | 3.6-9 |
| 4. 애너하임(NPEW) | 미국 / 애너하임 | 3.8-11 |
| 5. 북경 유아용품박람회(MICF) | 중국 / 베이징 | 4.14-16 |
| 6. 바르셀로나(Barcelona) | 스페인 / 바르셀로나 | 4.16-19 |
| 7. 싱가포르(F&H Asia) | 싱가포르 | 4.24-27 |
| 8. 캐나다(SIAL) | 캐나다 / 몬트리올 | 5.2-4 |
| 9. 아프리카(F&H Africa) | 남아공 / 요하네스 | 5.6-8 |
| 10. 브라질(APAS) | 브라질 / 상파울로 | 5.7-10 |
| 11. 스위스(Vitafoods) | 스위스 / 제네바 | 5.15-17 |
| 12. 상하이(SIAL China) | 중국 / 상하이 | 5.16-18 |
| 13. 방콕(Thaifex) | 태국 / 방콕 | 5.29-6.2 |
| 14. 미얀마(F&H Myanmar) | 미얀마 / 양곤 | 6.6-6.8 |
| 15. 광저우(China IFE) | 중국/ 광저우 | 6.28-30 |
| 16. 타이베이(Food Taipei) | 대만 / 타이베이 | 6.27-30 |
| 17. 말레이시아(MIFB)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 6.27-29 |
| 18. 뉴욕(Fancy Food Show) | 미국 / 뉴욕 | 6.30-7.2 |
| 19. 필리핀(Wofex) | 필리핀 / 마닐라 | 8.1-4 |
| 20. 홍콩(HKTDC) | 홍콩 | 8.16-18 |
| 21. 홍콩신선(Fruit Logistica) | 홍콩 | 9.5-7 |
| 22. 이스탄불(WFI) | 터키 / 이스탄불 | 9.6-9 |
| 23. 모스크바(WFM) | 러시아 / 모스크바 | 9.10-13 |
| 24. 호주(Fine Food Australia) | 호주 / 멜버른 | 9.10-13 |
| 25. 인도(World of Food India) | 인도 / 뭄바이 | 9.27-29 |
| 26. 파리(Sial Paris) | 프랑스 / 파리 | 10.21-25 |
| 27. 카자흐스탄(WFK) | 카자흐스탄 / 알마티 | 11.7-9 |
| 28. 시베리아(Inter Food Siberia) | 러시아 / 노보시비르 | 11.14-16 |
| 29. 호치민(Food Expo Vietnam) | 베트남 / 호치민 | 11.14-17 |
| 30. 자카르타(Sial Interfood)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11.21-24 |
| 31. 베이징(Anufood China) | 중국 / 베이징 | 11.21-23 |

### ② 개별박람회 참가

<table>
<tr><td>개 요</td><td>○ aT 또는 유관기관이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5대 시장</th><th>동남아 시장</th><th>기타 시장</th></tr>
<tr><td>지원한도</td><td colspan="2">5,000천원 / 1회</td><td>7,000천원 / 1회</td></tr>
<tr><td>해당지역</td><td colspan="2">· 5대 시장 : 일본, 미국, 중국(홍콩), 러시아, 대만<br>· 동남아 시장</td><td>· 5대 시장과 동남아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td></tr>
<tr><td>지원항목</td><td colspan="3">·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br>· 전시품 운송통관비(운송사를 통한 운송통관비만 지급)</td></tr>
</table>
* 대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의 50% 범위 내 지원
</td></tr>
<tr><td>추진절차</td><td>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 전년 12월 하반기 : 당년 5월) ▶ 박람회참가 (연중) ▶ 참가비지원 (30일 이내)</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연 2회(4월, 11월)<br>○ 참가신청 :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개별참가박람회 모집공고 → 개별참가박람회 참가 신청<br>○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 정부정책 호응도,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여건 등</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 : 연간 150회<br>○ 계획 : ’18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td></tr>
<tr><td>담당부서</td><td>○ aT 구미수출부 문정호 대리(061-931-0973)</td></tr>
</table>

# 22. 바이어 거래알선

## ① 대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table>
<tr><td>개 요</td><td>○ 해외aT 및 재외공관 추천 우수바이어 초청을 통한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로 새로운 수출거래선 창출</td></tr>
<tr><td>지원대상</td><td>○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br>○ 국내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해외바이어 한국 출장 및 상담기회 제공<br>- 왕복 항공료(Economy), 체재비, 통역, 기타 교통편의 등<br>- 상담회장 내 상담부스 제공, 사전 매칭된 수출업체와 1:1 상담<br>○ 국내수출업체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br>- 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진행</td></tr>
<tr><td>지원절차</td><td>모집공고 ▶ 국내업체 바이어 매칭 신청 ▶ 상담주선 ▶ 상담회 개최<br>* ‘상담주선’은 바이어가 상담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하여 매칭</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미정<br>○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온라인 신청(bms.at.or.kr)<br>→ 상담 스케줄 확인(bms.at.or.kr)</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2017)
<table>
<tr><th>행사명</th><th>실시일</th><th>초청 바이어</th><th>참가 수출업체</th><th>상담금액 (천불)</th></tr>
<tr><td>상반기 Buy Korean Food 2017</td><td>6.13</td><td>97명</td><td>314개</td><td>237,703</td></tr>
<tr><td>하반기 Buy Korean Food 2017</td><td>11.29</td><td>111명</td><td>255개</td><td>163,004</td></tr>
<tr><td>평창 동계 올림픽 연계 BKF 2018</td><td>‘18.02.22</td><td>73명</td><td>209개</td><td>105,157</td></tr>
</table>
○ 계획(2018)<br>- Buy Korean Food 2018 하반기 개최(미정)</td></tr>
<tr><td>담당부서</td><td>○ aT 구미수출부 조명희 과장 (061-931-0972)</td></tr>
</table>

## ②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 지원

| | |
|---|---|
| 개 요 | ○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계약 수주를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 |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
| 지원내용 | ○ 수출업체 당 1명의 바이어 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br>-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왕복 기준<br>- 숙박비 : 40만원 이내 |
| 추진절차 | 모집공고 및 신청 ▶ 업체 선정 및 사업 실행 ▶ 결과보고 제출 ▶ 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
| 이용방법 | ○ 모집시기 : 연 1회(상반기)<br>○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관할 지역본부로 신청서 제출<br>○ 선정심사기준 : 초청바이어 국가의 시장성, 상담품목의 수입확대 가능성 및 현지시장 진출 용이성 등 |
| 추진현황 및 계획 | ○ 현황(2017) : 58명<br>○ 계획(2018) : 80명 |
| 담당부서 | ○ aT 구미수출부 김혜진 사원(061-931-0975) |

# 23.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숍인숍 등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td></tr>
<tr><td>지원대상</td><td>○ 한국농식품 취급 해외 벤더 및 수입상 또는 국내 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사업기간</td><td>2018. 1월 ~ 11월말(3~10개월 내외)</td></tr>
<tr><td>사업내용</td><td>숍인숍 등 현지 여건에 맞는 안테나숍을 설치하여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음·시식 등 마켓테스트 실시, 소비자 반응 조사를 통해 현지 유통매장 신규 입점 추진 등</td></tr>
<tr><td>지원국가</td><td>중국 2, 동남아 2, 서남아 1, 중동 1, 유럽 1, 중앙아 1, 중남미 1<br>*기존 안테나숍 운영국가 및 지역은 선정 제외<br>** 지원국가는 사업 수요 등에 따라 변경 가능</td></tr>
<tr><td>지원내용</td><td>안테나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식비 등 마케팅비용</td></tr>
<tr><td>지원기준</td><td>국비 80%, 자부담 20%</td></tr>
<tr><td>지원<br>한도액</td><td>운영기간 및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 차등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1년차</th><th>2년차</th><th>3년차</th></tr>
<tr><td rowspan="3">지원<br>한도<br>(백만원)</td><td>3개월 이상 운영</td><td>150</td><td>-</td><td>-</td></tr>
<tr><td>6개월 이상 운영</td><td>200</td><td>140</td><td>85</td></tr>
<tr><td>9개월 이상 운영</td><td>290</td><td>210</td><td>125</td></tr>
</table></td></tr>
</table>
</td></tr>
<tr><td>지원절차</td><td>
<table>
<tr><td>세부실행계획 수립</td><td></td><td>운영주체 선정</td><td></td><td>업무위탁 및 준비</td><td></td><td>안테나숍 운영</td></tr>
<tr><td>· 세부실행계획 수립(aT)<br>· 농식품부 승인</td><td>▶</td><td>· 운영주체 모집공고<br>· 운영주체 선정</td><td>▶</td><td>· 운영주체 업무약정 체결(본사,해외)<br>· 물품전시준비 등<br>· 기타 현장업무</td><td>▶</td><td>· 운영<br>· 정산<br>·사후관리(성과)</td></tr>
</table>
</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연초<br>○ 참가신청 : 관할해외지사 or 본사(관할지사가 없는 지역)에 신청<br>- 본사 : 수출업체정보 종합관리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신청 입력<br>•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는 JPG, PDF 파일 등으로 등록<br>-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br>○ 선정평가<br>-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 비계량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td></tr>
<tr><td>추진현황<br>및 계획</td><td>○ ’18년도 신규사업자 모집공고(1월초, 모집종료)<br>○ 최종사업자 선정 통보(1월말)<br>○ 선정된 운영주체의 현지 매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및 현지실사 추진(2월)<br>○ 현지실사 후 약정체결(2월)<br>○ 운영(오픈이후~11월말)<br>○ 안테나숍 운영주체 초청 우수신상품 홍보설명회(5월경)<br>○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12월)</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시장다변화부 황명환 과장(brightly.hwang@at.or.kr)<br>이혜원 대리(hwe120121@at.or.kr)</td></tr>
</table>

# 24.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안정적 수출여건 확보</td></tr>
<tr><td>지원대상</td><td>○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대상 전략국가 5개 권역 20개국에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table>
<tr><th>권 역</th><th>최우선 전략국가(6)</th><th>차순위 전략국가(14)</th></tr>
<tr><td>아세안</td><td>대 만, 말레이시아</td><td>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td></tr>
<tr><td>중남미</td><td>브 라 질</td><td>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td></tr>
<tr><td>중동&중앙아</td><td>카자흐스탄</td><td>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td></tr>
<tr><td>유 럽</td><td>폴 란 드</td><td>이탈리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체코</td></tr>
<tr><td>아프리카</td><td>남 아 공</td><td>-</td></tr>
</table></td></tr>
<tr><td>지원내용</td><td>○ 선정규모 : 100개사<br>○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패키지 지원
<table>
<tr><th>구분</th><th>지원 사항</th></tr>
<tr><td>시장개척육성비</td><td>◦ 지원내용 : 제품개발, 판촉, 상품화, 브랜딩, 시장조사, 마케팅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내에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 선택<br>◦ 지원한도 : 30백만원<br>* 집행액의 70% / 성과별 지원비중 차등 / 대기업 지원제외</td></tr>
<tr><td>시장개척로드쇼</td><td>◦ 지원내용 : 시장개척비(항공, 숙박, 바이어초청상담회, 시장조사 등) 지원<br>* 참가비 60만원, 프런티어 인큐베이팅사업비와 별도임</td></tr>
<tr><td>수출업체 파일럿</td><td>◦ 지원내용 : 수출업체에서 장기(1~3개월) 해외 파견 시 항공 및 숙박 (지원한도 10백만원,3개월 기준) aT사무소 공간 지원<br>* 프런티어 인큐베이팅사업비와 별도 지원</td></tr>
<tr><td>청년인턴</td><td>◦ 지원내용 : 청년 해외개척단 매칭 1명 현지 시장개척 지원 (aT에서 선발 지원 후 수출업체에서 OJT교육 실시)<br>-언어 능력 등이 우수한 청년 개척단의 현지 지원으로 수출효과 증대</td></tr>
</table>
* 특이사항 : 프런티어로 선정되면 시장다변화사업(바이어초청상담회, 월드서포터즈 품평회 등) 전반에 공통 참여 또는 우선권 부여</td></tr>
<tr><td>선정기준</td><td>○ 1차평가 : 목표국가 수출액, 수출실적 증가율, 농어업연계성 등<br>○ 2차평가 : 역량진단(수출조직, 제품, 재무관리 등 방문진단) *수출첫걸음기업<br>○ 3차평가 : 시장다변화사업 계획, 역량, 전망 등 종합평가<br>* '17년 시장다변화사업 참여/기여도/성실도(중도포기자) 등 평가하여 감점 또는 가점 적용</td></tr>
<tr><td>진행절차</td><td>당해년도 사업자모집 (1월) ▶ 당해연도 사업자선정 (2월) ▶ 사업이행 약정서 제출 ▶ 중간점검 (추가 사업자 선정 등 실시/5월) ▶ 최종결과보고 (결과평가, 정산/10월)</td></tr>
<tr><td>모집시기</td><td>○ '18. 2월 중</td></tr>
<tr><td>신청방법</td><td>○ 모집시기 : 연초<br>○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td></tr>
<tr><td>문의처</td><td>○ aT 시장다변화부 황명환 과장(brightly.hwang@at.or.kr )<br>이혜원 대리(hwe120121@at.or.kr)</td></tr>
</table>

# 25. Global K-Food Fair 통합마케팅을 통한 시장개척 지원

<table>
<tr><td>개 요</td><td>○ 해외 주요시장의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국농식품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한 거래알선 및 수출확대 견인<br>○ 수출시장별 미성숙시장 및 개척시장은 현지 소비자 대상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체험행사를 통해 한국 농식품의 시식체험, 판매 및 홍보 등의 통합마케팅을 통한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붐 조성</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수출업체</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d>개최계획</td><td colspan="2">7개국 7회(미국, 일본,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프랑스)</td></tr>
<tr><td rowspan="2">지원내용</td><td>수출업체</td><td>- 수출상담회(수출상담액 및 현장계약 제고) : 행사장 임차 및 장치, 바이어 모집 · 수출상담(통역포함) 지원<br>- 소비자체험행사(소비자 반응조사 및 제품개선을 위한 테스트 등) : 참가품목 마켓테스트 등을 위한 장소 임차 및 부스장치, 통역 지원 등<br>- 운송비 : 업체당 100만원~ 200만원(권역별 차등)한도 내 지원</td></tr>
<tr><td>바이어</td><td>- 수출상담회(수출상담액 및 현장계약 제고) : 항공 및 숙박비용 지원<br>- 소비자체험행사 : 한국농식품 홍보 판촉 등 성과중심 행사<br>· 한국농식품 판매 및 홍보 부스 지원</td></tr>
</table>
</td></tr>
<tr><td>지원절차</td><td>수출업체 모집공고 ▶ 참가업체 신청 ▶ 바이어 모집·매칭 ▶ 수출 상담회 개최<br>* 소비자체험행사는 수출업체 또는 현지 한국식품 바이어 참가가능토록 지원</td></tr>
<tr><td>이용방법</td><td>○ 모집시기 : 2~3월중에 모집 공고<br>○ 참가신청 : 공사홈페이지(http://www.at.or.kr)를 통한 지원신청(추후 공고)<br>○ 선정기준 : 개최국별 수출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확대 가능성 고려</td></tr>
<tr><td>추진현황 및 계획</td><td>○ 현황 : 2018년 7개국 7회 개최<br>- 해외 수출국 현지에서 직접적인 수출상담회 개최로 수출확대 추진<br>○ 계획<br>- 개최국별 30~50여개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개최국가 및 인근국가 바이어 초청 상담 개최<br>* 세부추진계획 확정 후 사업진행 예정</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아태수출부 이태희 과장(061-931-0967)</td></tr>
</table>

# 26. 해외판촉행사 지원

| | |
|---|---|
| 개 요 | ○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 지원대상 | ○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br>*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 |
| 지원내용 | ○ 해외 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br>- 임차비, 입점수수료,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br>-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등 판촉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관련 집행 비용<br>-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br>※ 새로운 유통채널 특성상 상기 이외 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 aT와 사전 협의<br>◦ 판촉사업 지원신청시 제출한 수출목표액을 사업의무액으로 부여<br>- 사업의무액을 미달성 할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
| 지원기준 | ○ 지원한도이내 행사관련 실제집행비용의 80% 지원<br>- 행사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br>- 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는 자부담 10%, 100백만원 한도 적용 가능<br>- 단,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발생비용의 50%만 지원 가능<br>※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및 신선부류 등 수출전략 품목은 지원한도이내 행사관련 실제집행비용의 90% 지원 |
| 선정기준 | ○ 계량평가(50점) : 수출목표액, 수출추이, 관련서류(카탈로그, 인증서 보유여부) 등<br>○ 비계량평가(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국가별 수출확대 가능성, 수입업체(바이어) 규모 등 종합평가<br>* 전년도 aT 판촉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 적용 |
| 진행절차 |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모집 (11월) ▶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선정 (12월)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 당해년도 하반기 사업자 모집 (5월) ▶ 당해년도 하반기 사업자 선정(6월) ▶ 사업이행 확약서 제출 (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
| 모집시기 | ○ '18년도 하반기 국내공모 판촉 사업자 공고 및 선정 예정(5~6월 중) |
| 신청방법 | ○ 모집시기 : 매년 5월, 11월<br>○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
| 문의처 | ○ aT 식품수출부 성국경 차장(061-931-0841)<br>홍장우 대리(061-931-0846)<br>한다솔 대리(061-931-0847) |

# 27.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 | |
|---|---|
| 개 요 | ○ 농가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농식품을 대상으로 품목별 맞춤형 마케팅 개발을 통한 대중국 수출 대표품목으로 육성<br>○ 중국 내륙 시장 집중 개척을 통한 수출 규모화 |
| 지원대상 | ○ 대중국 수출전략품목(10개) 수출업체, 수입바이어 등<br>* 10개 품목 : 인삼, 화훼, 유자차, 유제품, 쌀·쌀가공품, 삼계탕, 포도, 김치, 장류, 국산가공식품(면류, 전통주) |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 ◦ (인 삼) 인삼 신수요 창출을 위한 뉴미디어 활용 인삼 홍보<br>◦ (화 훼) 수출 가능 화훼 품목 인지도 제고 마케팅<br>◦ (유자차) 중국 음료 프랜차이즈 연계 메뉴 판촉, 품질인증마크 획득 유자차 수출업체 지원<br>◦ (유제품) 국산 조제분유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사이트 연계 판촉<br>◦ (쌀, 쌀 가공품) 수출상품화 패키지 지원, 쌀·쌀가공품 홍보 판촉<br>◦ (삼계탕) 고급 유통매장 연계 삼계탕 홍보, 현지 기업체 연계 마케팅<br>◦ (포 도) 프리미엄 포도 매장 연계 판촉, 신선식품 온라인 전용몰 홍보판촉<br>◦ (김 치) 고유문화 접목 홍보 마케팅, 대형유통매장연계 홍보판촉<br>◦ (장 류) 농가소득 연계성이 높은 국산가공식품 홍보판촉<br>◦ (면류, 전통주) 팝업스토어 운영 및 브랜드별 마케팅<br>◦ (신비즈니스) 민간 주도적 농식품 수출분야 새로운 수출모델 발굴 및 지원 대중국 수출용 신상품 개발, 현지 네트워크 연계 시장개척 등 |
| 사업별 추진 계획 | 품목별 추진계획 수립 ⇒ 업체 선정 ⇒ 사업 실행 ⇒ 정 산 |
| 선정방법 | ◦ 신비즈니스 사업 선정절차<br>: 사업공모 → 1차 평가(계량+ 비계량) → 2차 평가(PT발표) → 최종선정 및 사업수행<br>- 제출서류 : 참가지원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br>- 선정기준 : 최종 득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br>* 상기 모집방식은 사업공고시 변동가능 |
| 신청방법 | ◦ 공모사업 진행시 www.at.or.kr, www.kati.net, global.at.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 담당부서 | ◦ aT 중국수출부 이승훈 차장(061-931-0981),<br>박상현 사원(061-931-0985) |

# 28.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운영

| | |
|---|---|
| 개 요 | ○ 해외 수입바이어 및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MD에게 신규·유망 한국농식품 상품정보 실시간 제공 |
| 지원대상 | ○ 국내 수출업체 |
| 지원내용 | ○ 기업 및 상품정보 중·영문 번역<br>○ 중·영문 상품페이지 제작<br>○ 상품페이지 업로드 및 콘텐츠 관리 |
| 추진절차 | 수출지원시스템 지원 신청 ▶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상품 업로드 |
| 지원한도 | ○ 업체당 최대 3개 품목 |
| 선정기준 | ○ (일 반 업 체) 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일자가 '16.1.1이후인 상품<br>○ (6차산업인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보유 업체<br>○ 해당 국가에 수출된 적 없는 신규상품 |
| 신청기간 | ○ 연중 수시 |
| 신청방법 |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br>○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상품세부정보표, 사업자등록증,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등<br>○ 기타사항 : 상품별 사진 최소 5장 제출 |
| 문의처 | ◦aT 중국수출부 곽정화 차장(061-931-0982),<br>박민희 사원(061-931-0986) |

# 6 수출 지원 자금융자

## 29.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table>
<tr><td>개 요</td><td>○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td></tr>
<tr><td>지원대상</td><td>○ 농식품 수출사업자<br>-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br>(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재 원</td><td>농산물가격안정기금</td></tr>
<tr><td>용 도</td><td>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td></tr>
<tr><td>지원금리</td><td>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br>•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br>-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br>•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br>*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td></tr>
<tr><td>지원비율</td><td>총사업액의 90% 이내(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80% 이내)</td></tr>
<tr><td>대출기간</td><td>1년</td></tr>
<tr><td>사업의무</td><td>(중소·중견기업)대출액의 50% 이상 수출이행 (상호출자제한기업) 100%</td></tr>
<tr><td>지원한도</td><td>업체당 200억원 이내(상호출자제한, 중견기업은 150억원)</td></tr>
<tr><td>자금배정</td><td>- 업체별 배정한도<br>·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br>·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br>- 업체별 배정금액은 최근 2개년간 수출실적과 지원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한 평점을 산출하여 산정<br>· 수출실적(FOB 기준) : 직전년도 실적 70%, 전전년도 실적 30%를 합산<br>-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배정업체중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금액은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의 수출실적의 3배<br>· L/C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70%</td></tr>
</table>
</td></tr>
<tr><td>예산규모</td><td>○ ‘18년 : 333,842백만원</td></tr>
<tr><td>추진절차</td><td>○ 자금지원 절차도<br>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3월) ⇒ 대출 (지원희망시기) ⇒ 정 산<br>○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 또는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br>※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br>(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정책금융부 한승희 차장(061-931-1142)</td></tr>
</table>

# 30.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시설)

<table>
<tr><td>개 요</td><td>○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단, 부지매입비 제외)</td></tr>
<tr><td>지원대상</td><td>○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을 위해 기존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시설투자하려는 수출업체<br>* 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LC로 입증 또는 수출계약서)이 150천$이상인 업체(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td></tr>
<tr><td>지원내용</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재원</td><td>농산물가격안정기금</td></tr>
<tr><td>용도</td><td>가공식품 및 신선농산물 가공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td></tr>
<tr><td>지원금리</td><td>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br>•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br>•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br>*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td></tr>
<tr><td>지원비율</td><td>총사업액의 80% 이내</td></tr>
<tr><td>대출기간</td><td>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td></tr>
<tr><td>사업의무</td><td>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수출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td></tr>
<tr><td>지원한도</td><td>업체당 20억 원 이내</td></tr>
<tr><td>선정기준</td><td>- 최근 2개년 결산서 기준 적격심사결과 5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br>· 재무구조(30점),영업실적(30점), 사업타당성(40점)</td></tr>
</table>
</td></tr>
<tr><td>예산규모</td><td>○ ‘18년 : 4,800백만 원</td></tr>
<tr><td>추진절차</td><td>○ 자금지원 절차도<br>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5월) ⇒ 기성고 확인 ⇒ 대 출 ⇒ 사후관리 (해외인증서 제출)<br>○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 또는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L/C, 수출계약서 사본(신규업체), KED신용평가서, 최근 2개년 재무제표<br>※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br>(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td></tr>
<tr><td>담당부서</td><td>○ aT 정책금융부 한승희 차장(061-931-1142)</td></tr>
</table>

# 11 KOTRA 제주사무소

# Contents

1 무역투자 상담

2 글로벌경쟁력진단

3 해외바이어 찾기

4 해외시장정보 수집

5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6 일반 마케팅 지원사업

7 기타 지원사업

# 무역투자 상담

## 01

### 전화상담 : ☎ 1600-7119

해외 지역별 수출 및 해외투자 전문위원(14명)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근무시간] 월~금 9:00~18:00 (점심시간 : 12:00~13:00)/ 공휴일 제외

### 온라인상담 : http://tradedoctor.kotra.or.kr

86개국 128개 해외무역관에서 기업의 궁금증을 48시간 이내 해결에 드립니다.
☞ 현지 근무일 기준(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질문은 답변이 제한 될 수 있음)

### 내방상담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지방지원단 및 사무소)

KOTRA 본사를 방문하면 수출전문위원과 심층적인 면담이 가능합니다.
☞ 전문상담을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권장되며, 변호사(중국, 베트남) 상담도 가능

### 찾아가는 상담 : 이동 KOTRA

수출애로가 있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종합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 지방기업도 방문가능 / 전국 11개 KOTRA 지방지원단에서 직접 방문

# 글로벌경쟁력진단

## 02

### 글로벌역량진단+빅봇 : 모든기업 대상/무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별 글로벌 역량 평가와 품목 분석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역량분석 | 유망시장 추천 | 맞춤형지원사업 안내 |
|---|---|---|
| | | |
| GCL(글로벌 역량 진단을 통해 성장단계/단계) 확인 및 기업별 글로벌 역량 강/약점 분석 | 국가별 유망시장 수출업 동향 안내 |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성장단계에 따라 안내 |

**[진행절차]**

KOTRA 홈페이지 → GCL신청 → GCL Test 설문답변 → MyKOTRA상 결과확인(역량, 유망시장, 지원사업) → 유선컨설팅(02-3460-7325) → (필요시) 이동 KOTRA 방문컨설팅

# 해외바이어찾기

03

## 사업파트너 연결지원 : KOTRA홈페이지

KOTRA 127개 무역관이 해외 잠재 바이어(2~3개)를 맞춤형으로 찾아 드립니다.
☞ (수수료) 30만원 / (A/S) 바이어 발급 후 2개월간 교신 지원

## 해외세일즈 출장지원 : KOTRA홈페이지

해외 무역관이 현지 바이어 발급+상담 주선+현지 활동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 | 내용 | 수수료 |
|---|---|---|
| 일반 | 해외 바이어 상담주선 (3~4개사)+ 사후 교신지원 (2개월) | 50~70만원 |
| 프리미엄 | 바이어 상담주선 (3~4개사)+ 사후교신지원 (2개월)<br>+ 상담지원 (통역, 차량 지원) | 100~140만원 |

## BuyKorea : B2B 이마켓플레이스 [www.buyKOREA.org]

바이어 인콰이어리 발급, 제품 홍보, 해외배송까지 클릭 한번으로 가능합니다.

| 지원사항 | 내용 |
|---|---|
| 제품홍보 | 바이코리아 내 무료 상품등록 (50개까지 가능) |
| 바이어중개 | 바잉오퍼 조회, 인콰이어리 발송 및 수신 |
| 바이어미팅 | 바이어-국내기업간 온라인 화상 상담회 개최 |
| 대금결제 | KOPS 라는 지체 대금결제 시스템 운영 (신용카드 결제가능) |
| 배송 | 우체국 EMS와 연계한 배송 (최대 16%할인) |

# 해외시장정보 수집

04

## 해외시장뉴스(글로벌윈도우) : http://news.kotra.or.kr

해외무역관에서 수집한 생생한 해외뉴스,트랜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유형 | 내용 |
|---|---|
| 뉴스 | 산업별 트렌드 이슈, 통상 규제, 현장인터뷰, 교역 동향 등 |
| 국가정보 | 국가별 주요 경제지표, 현지 출장자료, 비즈니스 관행 등 |
| 분석보고서 | 이슈 현안에 대한 심층보고서, 국별 진출전략 등 제공 |
| 비즈니스 정보 | 상품 및산업 DB, 성공사례, 무역사기 사례, 해외인증제도 |
| 포토/동영상 | 포토뉴스, 온라인 설명회 서비스, 국가별 강좌 등 |

http://me2.do/xX3MHXh4 facebook.com/kotraoverseasnews twitter.com/kotraosn

## 해외시장조사(개별기업 맞춤형) : KOTRA홈페이지

해외무역관에서 기업별 요구에 따른 맞춤형 시장 조사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 유형 | 내용 | 수수료 |
|---|---|---|
| 항목별 시장조사 | 제품별 수요동향, 현지 경쟁동향, 유통구조 등 기업별 맞춤형 조사 | 15만원/항목당 |
| 원부자재 공급선 발굴 | 수출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업체 발굴(2~3개사) | 30만원 |

#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05

## 스타트업 해외진출지원 : KOTRA홈페이지

신생 스타트업들의 해외 투자유치, 파트너쉽 구축, 해외진출을 지원합니다.
☞ **성장 단계별 지원** : 초기(해외자금조달), 생산(수출시장개척), 확장(글로벌기술수요 활용)

## 신규수출기업화 : KOTRA홈페이지

수출전문인력과 내수기업을 1:1 멘토-멘티로 연결, **수출 全 과정**을 지원합니다.
☞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0기업**(관세청기준/ 단 전년도 참가기업에 한해 5만불 미만 가능)

## 지사화사업 : KOTRA홈페이지

KOTRA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합니다.
☞ 수행기관 :
OKTA(진입/50만불)–KOTRA(발전/250~350만불)–민간네트워크(확장/350만불이상)

## 월드챔프 : KOTRA홈페이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 정부와 기업이 매칭펀드로 최대 1억 5천만원 사업비를 조성, 로드맵 수립 및 마케팅 시행

# 일반 마케팅 지원사업

06

## 수출상담회 : 무료

한국상품 수입을 희망하는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1:1 상담기회를 제공합니다.
☞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도 세계 바이어와 1:1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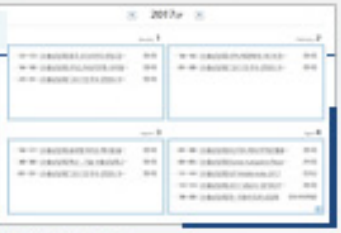

## 무역사절단 : 개인경비(항공임, 숙박비)는 참가기업 부담

지자체, 유관기관이 세일즈단을 구성, **해외 현장에서 1:1 상담기회를 제공**합니다.
☞ 주관기관에서 기업을 1차 모집하고, 해외무역관에서 시장성 평가를 통해 최종 기업 선정

## 해외전시회 참가 : 단체참가 / 개별참가

해외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참가를** 지원하거나, 기업이 원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참가 후** 참가비용(5백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단체참가) : 연 2회 한국관 참가신청 가능(110회/2,000개사)
(개별참가) : 500만원 한도내 연 2회(1,900여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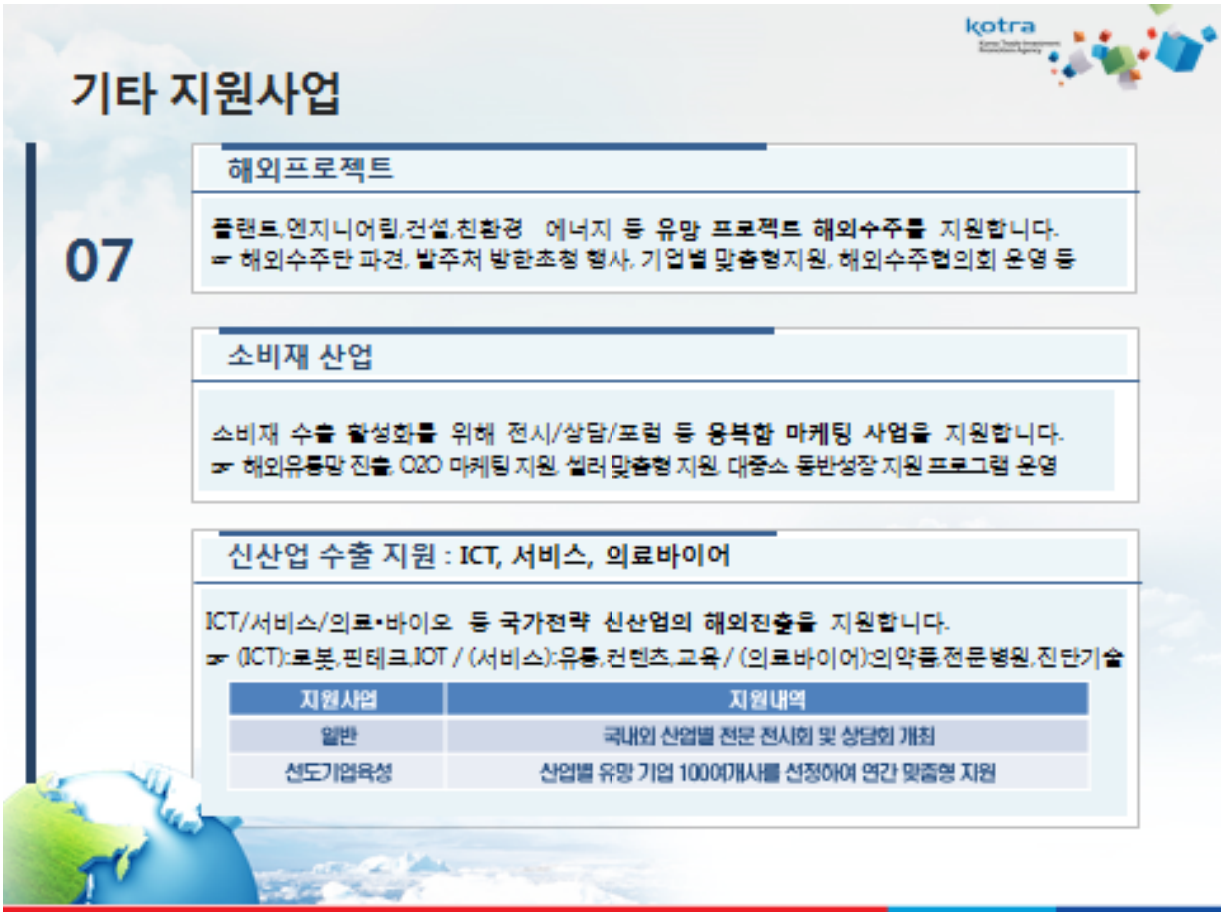


KOTRA 제주사무소 ☏ 064-747-7123

# 1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 1.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급여 기준 50% 정부지원

| 구분 | 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 |
|---|---|---|
| 기업지원 최초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50%지원 |
| 추가연장 3년*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40%지원 | 지원인력 표준급여 기준 60%지원 |

▪ 지원인력의 표준급여는 인력이 소속된 공공연구기관 관련 급여기준에 따름
▪ 지원인력이 현장근무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참여기업이 별도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해당인력에게 5%이내의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아래의 업무를 수행

| 구분 | 업무내용 |
|---|---|
| 기술개발 | 기술전략 및 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등) 등 |
| 기술기획 |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
| 기술관리 | 특허출원, 품질관리·인증, 기술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9. 12. 31.까지 상시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선정기업 통보

- 우대사항(총 5점)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계속고용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채용한 인력이 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 중인 기업

◦ 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http://partner.nst.re.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문의처 :** (044)287-7382, 7388, 7386 / E-mail : partner@nst.re.kr

## 2. 신진 석 · 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이공계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3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여부 평가)

| 구분 | 석사 | 박사 |
|---|---|---|
| 기준연봉 | 4,000만원 | 5,000만원 |
| 정부지원액/연 | 2,000만원 (기준연봉대비 50%) | 2,500만원 (기준연봉대비 50%) |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기업은 지원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금액을 지급

◦ 지원조건

- 신청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지원인력은 사업지원 기간내 역량강화 교육 의무 이수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3회차 수시공공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각 차수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 및 선정절차

온라인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서면평가 ⇨ 선정 통보 ⇨ (채용예정자) 고용보험 가입 ⇨ 협약체결

- 우대사항 : 기업 총 5점*, 인력 총 5점**, 우선지원 인력***

  * 지방기업(3점), 계속고용기업(2점)

  ** 여성(3점),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2점)

  ***연구인력 양성·채용 패키지 지원을 위한 사업간 연계제도를 도입하여「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석·박사 인력※이 중소기업 취업 후 신청시 우선 선정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18년부터 졸업하는 석·박사 연구인력

◦ 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partner.nst.re.kr) 확인 → 회원가입 → 관련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공고 차수별 증빙서류는 오프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문의처 :** (044)287-7365, 7373, 7383, 7380 / E-mail : partner@nst.re.kr